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0248-14

농업법인 업무안내서

농업법인 경영컨설팅 우수사례집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농업법인 업무안내서

1. 이 농업법인 안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업에 종사할 계획을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 제작한 것입니다.
2. 2017년 기준, 변경되거나 신규 제정된 법적 제도적 요건들을 반영해 농업법인을 보다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한 참고사항을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3. 귀농인 또는 신규 농업종사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적 용어를 가능한 순화시켜 기술했으나, 이에 따른 세부적이고 현실적인 적용은 반드시 관련 기관의 문의를 통해 추진하시기를 권장합니다.
4. 안내서 1부는 농업법인에 관한 기초 단계 중심으로, 2부는 농업법인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실무 정보 중심으로, 3부는 농업법인 컨설팅 우수사례를 현장 중심으로 수록하였습니다.
5. 정보의 안내와 함께 현장 경영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질문사례들을 모아 Q&A로 구성하였습니다.

농업법인 안내서 이용에 대하여

본 안내서는 농업법인 업무의 편의제공과 이해를 돕기 위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평소 잦은 질의 내용과 주요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개략적인 사항을 정리하였으나,
동 법인 제도와 주요 세제지원 등을 실제 적용할 시에는 반드시 유권해석 기관 등
관계기관의 재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농업법인의 효율적 경영을 통해 대한민국 농업농촌식품 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지
길 기원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044-201-1537, 044-201-1534



제1장_ 농업법인 이해하기

1) 법인의 의의	8
2) 농업법인의 의의	10
3)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장·단점	13
4) 농업회사법인의 특징과 종류	15

제2장_ 농업법인 지원정책 살펴보기

1) 재정사업지원	24
2) 세제지원	31
3) 농업법인 실태조사	42



제1장_ 농업법인 설립과 등록

1. 농업법인 설립절차 안내	48
1) 영농조합법인 설립 절차	49
2) 농업회사법인 설립 절차	50
2. 농업법인 설립과 등록 자세히 보기	51
1) 법인의 형태와 상호 결정	51
2) 정관 작성과 서명·공증	52
3) 설립신고를 위한 사전 준비	54
4) 자본금 출자	56
5) 설립 등기신청	57
6) 지자체 통보 및 사업자등록 신청	58
3.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	60
1) 농업경영체 등록 이해하기	60
2) 농업경영체 등록 절차	61

제2장_ 농업법인의 분야별 운영

1. 회계 분야	74
1) 농업경영기록의 목적과 필요성	74
2) 농업경영기록 방법	76

2. 인사·노무 분야	90
1) 근로계약서 작성	90
2) 외국인 근로자 고용	91
3) 임금·최저임금	98
4) 퇴직급여제도	99
5) 근로시간 휴게·휴일	100
6) 4대 보험	103
3. 법무 분야	112
1) 법인 경영자가 꼭 알아야 할 법무 정보	112
2) 농업법인의 조직 변경·합병·분할	116

제3장_ 농업법인의 해산과 청산

1. 영농조합법인	122
2. 농업회사법인	124
3. 폐업 신고	127



1. 백석올미영농조합법인	138
2. 영농조합법인금계식품	142
3. (주)네이처농업회사법인	146
4. 농업회사법인 합천유통(주)	150
5. 황토랑영농조합법인	154

별첨 | 농업법인 설립과 운영을 위해 알아야 할 기타 주요 정보

1.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정관(예)	160
2. 농업법인 설립등기 신청 서식 및 작성요령 안내	210
3. 농업법인 설립·변경사실 지자체 통보 서식 안내	249
4.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서식 안내	255
5.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267
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단 비교표	271
7. 기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및 사이트	314



제1부

농업법인이란 무엇인가

1

농업법인 이해하기

2

농업법인 지원정책 살펴보기

농업법인 이해하기

1) 법인의 의의

가. 법인이란

법인이란 권리능력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자연인 이외의 인격체로서 법률에 의하여 법인격이 인정된 사람 또는 재산의 단체를 의미합니다. 즉 일정한 목적과 조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단체(사단 또는 조합)를 만들고 어떤 목적을 위하여 조성된 재산(재단)도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재산상 법률관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나 ‘재산의 결합체’에 대하여 법률로 권리능력을 부여하고 이를 법인이라 부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노동조합이나 학교의 대부분은 모두 법인입니다. 법인의 종류는 공법인과 사법인,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외국법인과 내국법인 등이 있습니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설립됩니다.

나. 법인 설립의 필요성과 장·단점

기업은 사업자등록의 간단한 절차를 거쳐 설립할 수 있는 개인기업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기업은 업무확장이나 발전에 따라 인력의 보충, 자본조달 등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법인기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계속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를 ‘법인전환’이라고 합니다.

① 법인경영의 장점

ㄱ) 경영위험의 분산 및 차단

법인으로 운영할 경우 법인의 목적 범위 내에서, 거래 행위로 인한 책임은 법인

이 지며 경영인(대표이사, 임원 등)은 민사상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주주는 출자범위 내에서 유한 책임을 지며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이 분산, 차단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판례는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경우, 법인격을 부인한 경우가 있어(2001.1.19. 97다21604) 개인적 불법이나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개인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나) 기업의 영속성 유지

법인은 경영과 소유가 분리되어 구성원(주주, 투자자, 경영인 등)의 변동이 있더라도 기업은 영속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집하거나 공동경영(동업)을 하면서 분쟁을 예방하며 법적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다) 세제상 혜택

법인은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감면 규정에 따라 법인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지요. 이 외에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의 감면, 부가가치세 면제, 지방세특별제한법에 의한 감면, 면제, 농·임·어업용 면세 등 다양한 감면혜택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라) 신뢰성 확보

일반적으로 물건을 유통하는 거래처에 대한 신뢰가 개인보다 법인을 신뢰하고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을 경영하게 되면 효율적인 시장 대응과 대형 유통업체와의 협상 등이 가능하게 됩니다.

② 법인경영의 단점

가) 설립절차의 복잡함

법인 설립의 경우 기본 자본금 마련이 필요하며, 설립에 필요한 준비 서류 등이 다양한 등 설립절차가 다소 복잡합니다.

나) 독점적 이윤 불가

출자지분에 따라 배당되므로 대표자의 독점적 이윤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㉔) 경영에 대한 각종 의무이행

법인의 경영은 정관 등의 규정 및 절차에 기준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원이나 주주 등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의사결정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각종 법과 관련한 의무와 평가 등이 개인기업에 비하여 많습니다.

2) 농업법인의 의의

농업법인은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과 농산물의 유통·가공·수출·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가능하며, 설립요건, 운영방식 등에 따라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 구분됩니다.

※ 농업법인 제도의 근거 법률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09년 제정)이며 설립목적, 조합원 자격, 사업범위,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가.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 유통, 가공, 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생산자단체가 농업인(농업생산자단체)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할 수 있습니다.

나.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기업적으로 하거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기 위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단체가 총 출자금의 10%이상 출자하여 설립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농업, 농업인이란?

● **농업** :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 다음 각 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 ①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 ②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 ③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 **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①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됩니다).
 - ② 농업경영으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 ③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④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⑤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 농업인의 확인 방법, 세부 기준 등은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하, 그렇군요!

생산자단체란?

- **생산자단체** :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단체로 다음 각 호의 단체를 의미합니다.
 -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 ②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 ③ 「연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연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 ④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생산자단체의 범위는?

- ①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인 중 자본금 1억 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 ②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 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인 농업회사법인
- ③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법」 제8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 ④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자조금단체
- 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조활동자금을 조성·운영하는 축산단체
- ⑥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5호에 따른 조직으로서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인 조합
- ⑦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제6호에 해당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고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인 연합회

3)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장·단점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비교]

구분	영농조합법인 (Farming association corporation)	농업회사법인(주식, 유한, 합명, 합자) (Agricultural corporation company)
관련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설립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농업인 (농업생산자단체) 5인이상을 조합원으로 설립 - 결원 시, 1년 이내에 총원(미충원 시 해산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설립
비농업인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농업인은 의결권 없는 준조합원으로 참여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총출자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총 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을 제외한 금액 한도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농업관련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 농작업의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 그 밖의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 사업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농기계 기타장비의 임대·수리·보관 소규모관개시설의 수탁·관리 - 법 제19조 시행령 제19조
농지 소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유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유 가능(단,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1/3 이상이 농업인일 것) - 농지법 제2조 제3호
농지 소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법인 수 : 12,768개 법인당 평균 매출(판매)액 : 895백만원 매출액 10억이상 법인 수 : 1,881개 법인당 평균 출자액 : 219백만원 - 출처: 2016년 기준 농업법인조사 보고서('18.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법인 수 : 6,645개 법인당 평균 매출(판매)액 : 2,414백만원 매출액 10억이상 법인 수 : 2,152개 법인당 평균 출자액 : 399백만원 - 출처: 2016년 기준 농업법인조사 보고서('18.1월)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면제 및 감면 - 법인세의 경우 농업소득은 전액면제, 대통령령이 정한 소득은 조합원 1인당 연 1,200만원(영농조합법인), 4년간 50%(농업회사법인) 감면 (지방세) 부동산 취득등록세, 법인등록면허세, 재산세 면제 및 감면 (조합원) 양도소득세 면제 및 이월과세, 배당소득세 면제 	

가. 영농조합법인의 장점

- ① 공동출자로 인하여 개인보다 규모가 큰 영농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② 공동구입, 공동판매시설이용 등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③ 거래처에 대한 이익단체로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
- ④ 조합원 및 준조합원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집니다.

나. 영농조합법인의 단점

- ① 사업이 약간이라도 불투명하게 되면 조합원들이 연이어 탈퇴할 수 있습니다.
- ② 조합원 사이에 반목이 생길 경우 경영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③ 탈퇴, 해산시 잔여재산의 공정타당한 평가가 어려워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 ④ 준조합원에게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아 준조합원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어렵습니다.

다. 주식회사형 농업회사법인의 장점

- ① 도시 자본이 농촌으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② 투자자인 주주는 주식투자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면서 투자합니다.
- ③ 비농업인도 투자지분에 비례한 결의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 ④ 주식을 발행하여 거대자본을 모아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 ⑤ 투자와 경영이 분리되어 전문경영인이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습니다.
- ⑥ 거대한 자본금으로 대내외적인 신용도가 상승됩니다.
- ⑦ 자유로운 주식양도로 주주의 투자자금 회수가 용이합니다.
- ⑧ 주주가 경영에 신경 쓰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 ⑨ 각종 법령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주식회사형 농업회사법인의 단점

- ① 농업경영 경험이 없는 전문경영인이 경영 판단을 그르칠 염려가 있습니다.
- ② 회사 경영 및 영농에 대한 애착이 적어 우수상품을 재배하기 곤란할 수 있습니다.
- ③ 기술력을 습득한 직원들이 이직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4) 농업회사법인의 특징과 종류

가. 회사란

법인은 ‘법이 인정한 사람’이란 의미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의미합니다.

영업은 각 개인의 힘으로도 경영할 수 있으나 그 능력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필요한 노력을 보충하고 자본을 늘리고 또 손실위험을 분산시켜서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조직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을 공동기업형태라고 하는데요. 현대의 주요한 영업은 거의 전부가 회사형태로서 경영되고 있습니다.

나. 농업회사법인의 4가지 종류

농업회사법인의 종류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가 있습니다. 회사 구분의 기준은 사원이 회사가 파산했을 때 회사와 거래한 제3자에 대해 책임을 지느냐, 아니면 출자금만 손실을 보고 추가 책임을 지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회사 거래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사원은 유한책임사원, 회사 거래처가 입은 모든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원은 무한책임사원이라고 합니다.

구 분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사원의 책임	무한	무한·유한	유한	유한
사원의 수	2인 이상	무한·유한 각 1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특 징	인적회사	인적회사	물적회사	물적회사

인적회사로 불리기도 하는 합명·합자회사는 주로 친밀한 이들이 연대해 공동체적 방식으로 운영하는 데 유리합니다. 반면,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회사의 자본과 재산 등 물적요소들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법적 규제가 엄격하고 사원의 책임은 유한책임이고,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됩니다. 회사의 형태별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 보겠습니다.

① 합명회사

합명회사는 모든 사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서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무한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외적으로 인적 신용이 중요하고, 사원의 책임강도는 내부적으로 사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필요로 하지요. 동시에 사원의 기업경영에 대한 참가를 강화함으로써 공동경영과 같은 인상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그 지위를 타인에게 자유로이 이전할 수 없습니다. 입사 및 사원의 지위의 양도(지분의 양도)는 다른 사원의 승낙을 필요로 합니다. 반면에 퇴사의 자유가 인정되고 제명 제도가 있습니다.

합명회사는 설립절차가 간단합니다. 정관을 작성하여 설립등기를 하면 되고 출자에 있어서는 재산출자에 제한되지 않으며 노무출자와 신용출자도 인정됩니다. 청산에 있어서는 법정청산 외에 임의청산도 할 수 있습니다. 자본적 결합의 색채보다도 가족적·인적 결합의 색채가 짙은 전형적인 인적회사로 신뢰관계가 있는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되는 소규모 공동기업에 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② 합자회사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존재하는 이원적(二元的) 조직의 회사입니다. 무한책임사원이 있는 점은 합명회사와 같지만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 유한의 책임을 지는 사원이 있다는 점에서 합명회사와 차이가 있습니다. 무한책임사원은 기업경영을 담당하며, 유한책임사원은 자본을 제공하여 사업에서 생기는 이익의 분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합자회사는 사원간의 개인적 신뢰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조합적 성격을 띠며 인적(人的) 회사에 속합니다. 유한책임사원의 책임의 유한성에서 생기는 결과를 제외하면 합명회사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법도 별단의 규정이 있는 외에는 합명회사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합자회사의 입사와 퇴사는 대체로 합명회사의 경우와 비슷하지만 유한책임사원에 대한 특별규정이 있습니다. 즉 사망의 경우에도 상속자가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있으며 성년후견개시 등 제한능력자(구 금치산자)가 되더라도 퇴사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합자회사의 해산·계속·조직변경은 유한책임사원이 존재한다는 데에 합명회사의 경우와 약간 다르지만 청산 절차는 합명회사와 거의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경영능력이 있으나 자본이 없고, 자본이 있으나 경영능력이 없는 소수인이 결합하여 소규모의 공동기업을 경영하는데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③ 주식회사

사원인 주주의 출자로 이루어지며 주식으로 나뉜 일정한 자본금을 갖게 됩니다. 모든 주주는 그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 채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근본적 특색은 자본금과 주식과 주주의 유한책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며 자본금 중심의 물적회사입니다. 상법은 회사의 성립 시는 물론 존속 중에도 항상 자본금에 상당하는 현실적인 재산을 회사가 보유하도록 노력합니다. 이것은 자본금 확정·자본금 유지·자본금 감소의 제한이라는 자본금의 3가지 원칙에 나타납니다.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모두 주식으로 분할해야 합니다. 각 주주는 자신이 가진 주식금액의 자본액에 대한 비율로 회사사업에 참여하고 회사재산에 대한 몫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주식을 단위로 정해집니다. 또한 각 주식의 금액은 균일해야 하며 이에 따라 각 주식은 평등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 주주는 회사에 대해 인수한 주식의 가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이외의 어떤 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또 출자의 목적물은 금전 외의 재산이고, 신용 또는 노무의 출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에는 참가하지만 업무집행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의 양도는 자유로우며 일반적으로 사원수가 많아서 대자본금을 흡수할 수 있으므로 큰 기업의 경영에 알맞은 회사제도입니다.
- 주식회사의 설립에 있어서 정관에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을 기재하고 주식인수인의 확정과 이사·감사의 선임 등 회사의 실체를 구성하는 절차가 정관작성과 설립등기 외에 필요합니다.
- 설립방법은 실체를 구성하는 절차에 따라서 발기인만이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를 인수하는 발기설립, 발기인이 주식총수의 일부만을 인수하고 나머지의 주식은 발기인 이외에 주주를 모집하는 모집설립의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 주식회사는 법률상 반드시 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 업무집행과 대표기관인 이사회, 대표이사과 감독기관인 감사(監事)의 세 기관을 가져야 합니다.

- 주식회사가 해산할 때는 법적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합병과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청산 절차를 밟게 될 경우에는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존속하게 됩니다. 이 경우 영업수행을 위한 기관인 이사회에 갈음하여 청산인회가 집행기관이 됩니다. 주식회사의 청산에는 합병회사에서와 같은 임의청산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법정청산의 엄격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④ 유한회사

주식회사의 주주와 같이 출자액을 한도로 하는 간접의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사원만으로 성립하는 회사입니다. 최소한 2인 이상의 사원이 그들의 출자액에 한하여 책임을 지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이 회사는 소규모의 주식회사라고 할 수 있으며 합병회사와 주식회사의 장점을 절충한 모습의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원의 책임이 유한하고 간접적이라는 점에서는 주식회사와 유사하고, 폐쇄적이고 비공개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점에서는 합병회사와 유사합니다.

유한회사의 기관으로는 이사·감사·사원총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원은 1명 또는 그 이상의 이사를 임명할 수 있는데 보통 사원 자신이 이사가 됩니다. 이사의 권리와 의무는 주식회사의 중역 의무와 유사하고 감사는 임의기관이기 때문에 절대성을 갖지 못합니다. 또 사원총회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와 같은 것이고 결의권의 행사는 인원수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지분에 따릅니다.

 아하, 그렇군요!

책임사원의 구분

- **무한책임사원**: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개인의 재산까지 동원하여 책임을 지는 사원입니다.
- **유한책임사원**: 출자가액을 한도로 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출자가액과 관계없이 회사의 모든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과 다릅니다. 보통 합자회사(무한책임사원과 이원적 운영), 주식회사의 주주와 유한회사의 사원도 유한책임사원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비록 이들이 모두 유한책임사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책임의 성질과 내용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개인사업자 또는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으로 농업에 종사하지만, 법인을 설립하여 전문적인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이 많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농업법인화 또는 영농조합법인의 농업회사 전환은 2011년 상법 개정으로 훨씬 용이해졌습니다.

- **자본금**: 과거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5,000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했지만 11년 상법개정 이후 별도의 자본금의 제한은 없습니다.
- **출자자**: 상법의 회사 규정에 따라 합명·합자회사는 2인 이상,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는 1인 회사로 설립·운영이 가능합니다.
- **사업 영역**: 개인사업자는 영위할 수 있는 사업에 제한이 없으며 일반법인의 경우에도 그러나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상 규정된 범위 내의 사업을 영위하여야 합니다.

법인 전환 후에는 신고 및 의무 등의 각종 절차가 따르며, 또한 자금관리 등 경영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므로 여러 요건을 잘 고려한 후 법인 전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Q & A



Q

영농조합법인을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 제18조에 근거하여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농업회사법인 합명/합자/유한/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총회의 의결로 조직변경의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 내에 조합채권자에게 조직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을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상 공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동 기간 내에 조직변경의 결의에 대한 이의 제기가 없다면 조직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보나, 만일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영농조합법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조직변경의 결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 변경을 한 경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영농조합법인의 해산등기와 농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법원에 설립등기를 한 영농조합법인은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Q 영농조합법인 설립 시 5인이상의 농업인(생산자단체) 조합원이 요건으로 되어 있는데, 5인에 미달할 경우 비농업인을 조합원으로 포함시켜서 설립할 수도 있나요? 또한 설립 시에는 조합원이 5인 이상이었으나 이후 탈퇴 등의 사유로 조합원이 5인 미만이어도 되나요?

A 농어업경영체법 상 조합원의 자격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비농업인은 준조합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5명 이상의 농업인 조합원 요건은 설립 시 뿐 아니라 영농조합법인을 운영 중에도 지속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입니다. 만약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2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상법상 일반 주식회사로 설립한 법인을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전환할 수 있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상법상 일반 주식회사가 농업회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요건(명칭변경, 설립목적, 사업범위, 비농업인 출자한도 등)을 갖추어 정관변경, 총회의 결 등의 절차를 거쳐 변경된 사항을 변경등기하시면 됩니다.

Q & A



Q 농업법인의 대표는 반드시 농업인이어야 하나요?

A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이어야 하고, 농업회사법인은 비농업인도 가능합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도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비농업인의 출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농업인의 대표자 역할도 가능합니다. 다만, 비농업인의 출자한도(총 출자액의 90% 이내)를 넘지 않아야 하며,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업무집행자(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구) 3분의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Q 농업법인의 명칭을 “농업회사법인○○”으로 등기해도 되는지, “농업법인○○” 또는 “○○주식회사”로 해도 되는지요?

A 법인 명칭이 특수법인인 점과 설립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해야 하는 만큼 명칭(상호)은 “농업회사법인000주식회사”로 등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국세청 및 통계청 등 유관기관에서도 세제지원 시 농업법인인지 여부를 명칭으로 확인하고 있으니 명칭에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현재 영농조합법인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혹시 다른 영농조합 법인에 또 조합원으로 가입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중 정관이 정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래 소속된 영농조합법인과 새로 가입하고자 하는 영농조합법인의 정관에 문제가 없고,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출자를 하여 법인경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도라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의 규모는 얼마가 되어야 합니까? 또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받기 위한 자본금 조건이 있는지요? 조건이 있다면, 어떻게 확인하고 증빙하나요?

A 법인 설립 시의 자본금의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농림사업 지원을 받으려면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할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건에 대한 증빙은 당해 법인의 사업신청 시점에서 법인의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확인(현금 및 현물 등)하는 것으로 합니다.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 91조를 확인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26~27p, 56~57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법인 지원정책 살펴보기

1) 재정사업 지원

국가와 지자체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경영규모의 확대 또는 전문인력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및 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기본적인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가. 지원을 받기 위한 준비

①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농촌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법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합니다. 또한 등록된 정보 중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등록하여야 합니다.

※ 관련문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1544-8788)

* 각 지역사무소 안내는 64p 참고

②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준수

- 농업법인 설립요건 충족

※ 영농조합법인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조합원 5인 이상

※ 농업회사법인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 이상

(다만, 총 출자금액이 80억 초과할 경우 비농업인은 8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까지 출자 가능)

- 총 출자금 1억 원 이상

- 운영 실적 1년 이상(개별사업시행 지침에서 정한 경우 그에 따름)

- 사업 자부담금 이상의 자본금 확보

③ 개별사업 지침에서 정하는 선정 요건의 충족

- 지원사업의 내용 등에 따라 선정에 필요로 하는 추가적인 요건들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 담당부서에서 안내받으십시오.

※ 사업대상, 지원요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go.kr) 또는 e나라 도움(www.gosims.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우선지원요건과 후순위 대상

● **우선지원요건** : 근거법령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32조

▲ 동 기본규정 제64조에 의한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를 성실하게 기록한 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청장이 개별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교육을

이수한 자 ▲ 산림청·통계청에서 시행하는 농림통계조사의 표본농림어가로서

경영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한 자 ▲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및 2년 이상의

장기 농림축산식품교육 (농업마이스터대학 등)을 수료한 자 ▲ 농림축산관련

자조금 성실 납부자 ▲친환경 농업·축산 또는 GAP인증농가 ▲ 재해보험가입자

▲생산자단체가입자

● **후순위 대상**

▲ 가축방역의무 미이행자 ▲인증제도 위반농가 ▲미허용 농약사용·과다사용 등

법령이 정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영체

나. 지원을 받은 이후

① 보조금 사후관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사업시행기관은 민간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때 농업경영체 등록·실태조사 결과, 중복편중 지원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지원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② 사후관리 기준

-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시·군 공무원이 담당합니다.

-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정산해야 합니다.
-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 경영에 대한 지도·관리는 품목담당과에서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해 운용합니다. 일반적인 운영상의 지도·감독(설립·출자 등)은 총괄 담당과에서 담당합니다.
- 부도 등으로 인한 잉여시설물의 제3자 인계를 원활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정부지원 보조금의 제3자 인계는 보조금 교부결정자인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승인합니다(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
- 정부지원 시설물이 농림축산식품사업 목적대로 사용되고 내용연수와 같은 기간 동안 관리되는지, 시·군의 품목담당과에서 적극 관여합니다.
-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하, 그렇군요!

- 모든 보조사업은 2017년 1월 개통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집행·정산하는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됩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거래증빙을 확인하므로 허위 또는 중복사용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 모든 증빙서류는 전자세금계산서, 보조사업카드 영수증, 계좌이체 및 관련 서류로 제한됩니다. 즉, 간이·수기 영수증은 증빙이 불가합니다.
- 법인 설립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법적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자본금이 굳이 1억 이상일 필요는 없지만, 정부 지원사업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본금 1억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법인 성장단계별 주요 지원사업]

○ 창업단계

분야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사업주요내용
컨설팅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농업경영컨설팅	농업경영체의 역량진단 등을 통한 민간전문가의 맞춤형 농업 경영컨설팅 지원
컨설팅	중소식품기업경쟁력강화	식품컨설팅	식품·외식업체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교육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현장실습 및 전문기술 교육	현장실습교육(WPL), 첨단기술공동실습장, 농업경영인능력향상교육, 농업인 국외훈련 및 방문연수, 첨단품목특화전문교육, 마이스터활용 교육 등
교육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축산관련종사자 교육비 및 교육기관 운영비 지원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의무교육의 비용 일부 지원 및 교육기관 운영비 지원
교육	농식품유통교육훈련	농식품유통교육운영	장·단기 교육과정 및 교육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교육	식품소비및산업인프라강화	식품외식산업 인력양성 교육 운영	교육인프라 구축·지원, 식품산업분야 기본·전문교육 및 신직업 양성 교육 운영
교육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체험마을리더 교육 지원	농촌관광정책, 회계실무, 전산관리, 고객관리 및 홍보,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관련 교육 실시
기타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후계농교육 지원	예비·후계농 및 우수후계농의 역량강화를 위한 경영교육비 지원
기타	농산업창업지원(시범사업)	농식품 벤처창업활성화지원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 운영, 기술가치평가, 농산업체 판로지원, 농촌현장 창업보육,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운영

○ 운영 성장단계

분야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사업주요내용
과수 원예	원예시설현대화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	스마트팜 온실신축 및 시설보급
과수 원예	과수생산유통지원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지원	고품질생산(우량품종갱신, 지주시설·비가림시설등), 생산비, 에너지절감시설, 재해예방시설 등 지원
식량	발작물산업육성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역량 강화, 생산비 절감, 품질 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시설, 장비 등 맞춤형 육성 지원
식량	들녘경영체육성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	법인의 조직관리·경영 컨설팅, 이모작 및 타작물 재배를 위한 생산기반정비, 가공·판매·체험·관광 등의 연계를 위한 시설·장비 등 지원
축산	가축분뇨처리지원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퇴비·액비·정화 등 시설·기계·장비 지원
축산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조사료생산 효율 증대를 위한 종자 지원
기기	농기계임대	농기계임대사업소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건축 및 임대농업기계 구입비 지원
기타	공동선별비지원	공동선별비(자치단체)	공동선별, 출하, 계산 물량에 대한 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식품기능성평가	식품기능성평가 지원	국내산 농축산물의 기능성 등록에 필요한 인체적용시험(동물시험 및 안전성평가) 및 인체적용시험(임상) 비용의 일부 지원

○ 성숙 확장단계

분야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사업주요내용
과수 원예	과수생산유통지원	과수우량모목생산 기반조성	무병품종 선발 및도입, 중앙모수포 증설 등
과수 원예	과수생산유통지원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집하선별장, 포장, 예냉저온저장, 냉장수송시설, 위생시설, 신선편의시설, 가공시설등 일괄지원
과수 원예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저온유통체계구축 (화훼류습식유통)	화훼류습식유통·습식대차, 습식물통, 화훼포장망, 수명연장제, 저온수송·냉동차량 지원
과수 원예	원예시설현대화	시설원예현대화 지원	원예전문단지 등 시설현대화
식량	고품질쌀유통활성화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	설계 및 감리, 기계 및 장비, 건축 및 토목 등 가공(도정) 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식량	농업기반정비	농업기반정비	발기반정비, 대구회경지정리, 논밭작물재배기반지원 등 사업 추진
식량	들녘경영체육성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생산지 절감을 위한 공동경영 심화 경영체 선정하여 시설 등 지원
축산	가축분뇨처리지원	공동자원화 에너지화 시설장비 지원	공동자원화 에너지화 시설·기계·장비 지원
축산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조사료공급활성화 유통비 지원	유통비 지원을 통한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자금 조사료 증산 도모
축산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구입 지원	기계장비 구매 보조사업으로 조사료 생산 능력 및 효율 증대
기기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일괄 팻릿타이징을 위한 물류기기 임차비 지원
기타	농업재해보험	농업재해보험료 지원	보험대상 농작물(축산물)을 경작(양축)하는 농가의 보험료 중 일부를 국고로 지원

연구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육성(자치단체)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서비스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	6차산업 판촉 및 마케팅 지원	우수제품 국내외 온오프라인 유통플랫폼 및 제품판촉 지원, 우수제품 기획지원(지원업체 선정,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선), 온라인 상세페이지 제작지원 등
수출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해외농업개발 인프라 조성을 위한 민간환경조사, 인력양성, 정보제공 등 지원 시스템 구축
수출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농식품수출 생산기반 구축	농가 조직화교육, Global GAP 등 수입국이 요구하는 각종 인증교육, 안전성검사, 검역관 초청 등
수출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수출업체 맞춤지원	물류비, 보험, 통관, 해외인증, 마케팅 등 지원

※ 세부사업 내역 및 추가 지원사업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참고하시고 지자체나 정부 관련부서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 세제지원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 감면·공제 등 다양한 세제 감면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지원내용과 요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세제 감면 혜택을 받으세요.

단, 세제감면 신청 시 농업경영체등록에 대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오니 사전에 미리 농업법인의 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 혜택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하세요!

가. 설립 및 출자 시

- ① 설립등기 등록면허세 면제(2020. 12. 31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
- ② 농지·초지 출자 시 양도소득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 제68조 제2항)
 - 내용 : 농업인*이 2018. 12. 31. 이전에 농지**·초지를 농업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현물출자하는 농지·초지 또는 부동산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

**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로·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이때는 실질적으로 농지를 사용하였다는 사실 관계를 현물출자자가 증명하여야 함

- **추징** : 현물 출자 전 자경하였던 기간과 현물출자 후 출자지분 양도시까지의 기간을 합한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추징
- **한도** : 면제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은 과세기간별 최대 1억원, 5개년 동안 3억원까지
- ※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합니다

③ 그 외 부동산 출자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7항, 제68조 제3항)

- **내용** : 농업인*이 2018. 12. 31. 이전에 농업법인에 농작물재배업·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4항에 따른 농지·초지 제외)을 현물 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

- **추징** : 현물출자하기 전에 직접 사용하였던 기간과 현물출자 후 처분일까지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중 50% 이상을 3년 이내 처분시 추징
- **한도** : 이월과세가 가능한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은 과세기간별 1억원까지, 5개년 동안 3억원까지 한도
-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합니다.

나. 운영 시

① 법인세 면제 및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1항, 68조제1항)

※ 법인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합니다.

[영농조합법인]

감면사항	대상	감면한도
식량작물재배업소득	곡물, 쌀, 보리, 콩, 옥수수, 감자 등	전액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 소득	원예, 화훼, 특용, 과수 등	조합원 당 수입금액 6억 이하의 소득분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 소득	조합원 당 1,200만원까지 소득공제

※ 법령으로 정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소득은 법인세가 감면되지 않으며, 이에 따른 배당소득도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농업회사법인]

감면사항	대상	감면한도
식량작물재배업소득	곡물, 쌀, 보리, 콩, 옥수수, 감자 등	전액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 소득	원예, 화훼, 특용, 과수 등	연간 수입금액 50억 이하의 소득분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농산물유통·가공 판매 및 농작업대행,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제19조의 부대사업에 따른 사업소득	감면율 50% (단, 최초로 소득발생연도와 그 다음 4년간)

② 취득세 면제 및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77조의2항)

- 면제 대상 :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 감면 대상 :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50% 감면

- **추징 대상** :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법원의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③ 해당 용도 직접 사용 부동산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 **추징 대상** :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법원의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④ 부가가치세 면제 및 감면

- **면제 대상** :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감면 대상** :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 **환급 대상** :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⑤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3조)

⑥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조)

다. 배당 시

① 배당소득세 면제 및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 66조, 제68조, 2018년 12월 31일까지)

- **요건** : 법인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제출
 - **면제 대상** :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면제
 - **감면 대상**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 작물재배업 외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감면
 ▲ **영농조합법인** : 조합원당 1,200만 원까지 면제,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5% 저율분리과세(종합소득세 비합산)
 ▲ **농업회사법인** :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아하, 그렇군요!**

- 상기 법령으로 정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소득은 법인세가 감면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른 배당소득도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며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 기타소득은 농업법인의 유형자산처분이익 등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법인세 감면 대상이 되지 않으며 납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및 제68조 제2항에 따라 현물 출자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는 전·답입니다.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로·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단,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각호의 농지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구분	내용
면제 (조특법 제106조1항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항용역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 농작업의 대항, 선별, 포장용역은 면제되지만 운반, 저온저장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사후환급 (조특법 105조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이 농업에 사용하는 농·축산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는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은 농업법인이 직접 작물을 재배하거나 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동구매, 도·소매업의 경우 농업인이 직접 환급받아야 합니다.
영세율 적용 (조특법 105조1항5호, 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기계 33종(콤바인, 파종기, 육모상자 등), 축산용 기자재 39종(사료통, 사료배합기, 축산분뇨제거기 등), 임업용기자재 15종(산불진화용 펌프, 톱밥제조기 등), 비료, 농약, 사료, 친환경 농자재 50종(키토산, 목초액, 천적 등)이 있습니다. ※ 위의 사항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업용 기자재(제7조제1호 관련)

1. 농업·임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덮자리용, 작물피복용, 과수 또는 수실류(樹實類) 재배용에 한정한다)과 그 부속자재(비닐 고정용 패드 및 클립, 파이프조리개, 고정구 및 연결핀, 파이프꽃이에 한정한다)
2. 농업·임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 또는 수실류 재배용에 한정한다)
3. 농업·임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산물·임산물·축산물 포장용에 한정한다)
4. 농업·임업용 폴리프로필렌 포대(곡물 포장용에 한정한다)
5. 과일 봉지(과일의 병충해 방지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열매에 씌우는 봉지에 한정한다)
6. 인삼재배용 지주목·광망·차광지 및 은박지
7. 차광망(연초·표고버섯 건조용 또는 과수·화훼·채소·야생화·산채 재배용에 한정한다)
8. 농업·임업용 부직포(작물·수실류 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정한다)
9. 농업·임업용 배지(양액·버섯 재배용에 한정한다) 및 양송이 재배용 복토
10. 축산업용 톱밥(「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사용기준을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
11. 이앙기용 멀칭종이(논농사 피복용에 한정한다)
12. 농업·임업용 방조망(防鳥網) 및 방풍망(과수·수실류·작물 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정한다)
13. 농업·임업용 양수기
14. 볍씨발아기
15. 동력배토기
16. 동력예취기
17. 가축급여(家畜給與) 조사료(粗飼料) 생산용 필름
18. 화훼·야생화용 종자류
19. 채소봉지(애호박·오이용에 한정한다)
20. 버섯재배용기
21. 축산업용 차량방역기
22. 폐사축처리기
23. 축사세척기
24. 카우브러쉬


아하, 그렇군요!

25. 축산 약취제거기
26.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27. 작물 지주대
28. 농업·임업용 무인헬리콥터
29. 농업·임업용 로더(2톤 미만)
30. 농업·임업용 굴삭기(1톤 미만)
31. 동력제초기
32. 농업·임업용 고압세척기
33. 농산물 및 임산물 저온저장고(바닥면적이 17㎡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34. 농업·임업·축산용 환풍기(컨트롤러를 포함하며,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에 한정한다)
35.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기
36.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용기
37. 축산용 정액 희석제
38. 축산용 인큐베이터
39. 축산용 출하돈 선별기
40. 축사용 보온등 컨트롤러
41. 축사용 쿨링 패드
42. 축사용 워터컵
43. 축사용 바닥재[철재(鐵材) 바닥재에 한정한다]
44. 농산물·임산물 수확용 상자(플라스틱 재질에 한정한다)
45. 화훼·야생화 재배용 배지
46. 화훼·야생화 재배용 화분(폴리에틸렌, 플라스틱 및 고무 재질에 한정한다)
47. 유해동물(해충을 포함한다) 포획기
48. 농업용 양파망·마늘망
49. 축산 착유용 라이너
50. 축산용 분만실 깔판
51. 축산용 대인소독기
52. 축산용 방역복
53. 조사료 생산용 네트
54. 팽연왕겨
55. 탈봉기
56. 소문망
57. 조사료 생산용 종자류
58. 점적(點滴)호스(점적테이프 및 분수호스를 포함한다)
59. 농업용수 처리기

아하, 그렇군요!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기자재 품목

농업기계

1. 동력경운기 및 부속작업기
2. 농용트랙터 및 부속작업기
3. 관리기 및 부속작업기
4. 동력이앙기 및 부속작업기
5. 목책기(농작물 보호용만 해당합니다.)
6. 스피드스프레이
7. 콤바인
8. 곡물건조기
9. 동력중경제초기
10. 동력수확기
11. 농산물 건조기
12. 동력상토조제기
13. 동력이식기
14. 농업용 난방기
15. 앞담배건조레이크이송기
16.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17. 동력탈곡기
18. 동력휴립기
19. 동력시비기
20.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21. 농산물 결속기
22.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23. 농산물 세척기
24. 동력심경기
25. 동력구굴기

26.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27.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28. 동력비닐피복기 및 동력피 복개폐기
29. 육묘상자
30. 파종기
31. 농업용 스프링쿨러
32. 버섯재배소독기
33. 농산물 선별기 및 정선기

축산업용 기자재

1. 육추기
2. 양계용케이지
3. 축산급이기
4. 자동급수기
5. 니플
6. 부리절단기
7. 포유기
8. 양돈케이지
9. 이표기
10. 임신진단기
11. 음수투약기
12. 목책기
13. 집란기
14. 계란선별기
15. 집란벨트

16. 부화기
17. 착유기
18. 원유냉각기
19. 사료배합기
20. TMR배합기
21. 사료절단기
22. 싸이로
23. 사료저장탱크
24. 축산분뇨제거기
25. 축산용 정화조
26. 축산분뇨용 교반기
27. 축산용 분뇨펌프
28. 축산분뇨고액분리기
29. 축산분뇨발효건조기
30. 축산분뇨살포기
31. 축산분뇨저장탱크
32. 축산분뇨포장기
33. 산란상
34. 난좌
35. 바닥재(플라스틱, 콘스라 트재에 한합니다.)
36. 사료통
37. 벌통
38. 채밀기(採蜜器)
39. 소초세트(소초광, 사양기 및 격리판으로 구성된 것을 말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기자재 품목

임업용 기자재

1. 임업용 동력천공기
2. 임업용 약제주입기
3. 산불진화용 펌프(등짐펌프를 포함합니다.)
4. 임업용 동력기계톱(동력가 지절단기를 포함합니다.)
5. 임업용 원치
6. 임업용 물받이형 미끄럼틀
7. 트랙터부착형 집재기
8. 굴삭기부착형 집재기
9. 타워야더(Tower yarder)
10. 포워드(Forwarder)
11. 목재파쇄기
12. 톱밥제조기
13. 동력임내차
14. 밤수집기
15. 자동지타기

친환경 농업용 기자재

1. 키토산
2. 목초액
3. 천적
4. 약초 등 천연식물에서 추출한 제재(담배는 제외합니다.)
5. 허브식물 및 기피식물
6. 님(Neem) 추출물
7. 데리스(Derris) 추출물

8. 제충국 추출물
9. 담배잎차(순수니코틴은 제외합니다.)
10. 해조류, 해조류 추출물 및 해조류 퇴적물
11. 버섯 추출액
12. 클로렐라(담수녹조) 및 그 추출물
13. 규산염 및 벤토나이트(Bentonite)
14. 규산나트륨
15. 규조토
16. 이탄(泥炭, Peat), 토탄(土炭, Peat moss) 및 토탄 추출물
17. 사리염(황산마그네슘) 및 천연석(황산칼슘)
18. 석회석 등 자연에서 유래한 탄산칼슘
19. 생석회(산화칼슘) 및 소석회(수산화칼슘)
20. 점토광물(벤토나이트·펄라이트 및 제올라이트·일라이트 등)
21. 붕소·철·망간·구리·몰리브덴 및 아연 등 미량원소
22. 맥반석 등 광물질 가루
23. 자연암석분말·분쇄석 또는 그 용액
24. 석회질 마그네슘 암석
25. 마그네슘 암석
26. 황산칼륨, 랑베나이트(해수의 증발로 생성된 암염) 또는 광물염
27. 칼륨암석 및 채굴된 칼륨염
28. 천연 인광석 및 인산알루미늄칼슘
29. 미생물 및 미생물추출물
30. 혈분·육분·골분·깃털분 등 도축장과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나온 동물부산물
31. 구아노(바닷새, 박쥐 등의 배설물)

 아하, 그렇군요!

- | | |
|--|--------------------|
| 32. 동·식물성 오일 | 41. 밀납 및 프로폴리스 |
| 33. 파란핀 오일 | 42. 중탄산나트륨 및 중탄산칼륨 |
| 34. 식품 및 섬유공장의 유기적 부산물 | 43. 과망간산칼륨 |
| 35. 제당산업의 부산물(당밀, 비나스,
식품등급의 설탕 및 포도당 포함) | 44. 식초 등 천연산 |
| 36. 유기농장 부산물로 만든 비료 | 45. 나무 숯 및 나뭇재 |
| 37. 유기농업에서 유래한 재료를
가공하는 산업의 부산물 | 46. 에틸알콜 |
| 38. 황 | 47. 인산철 |
| 39. 구리염 | 48. 성 유인물질(페로몬) |
| 40. 산염화동 | 49. 인지질(Lecithin) |
| | 50. 카세인(유단백질) |



3) 농업법인 실태조사

가. 실태조사 의미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는 3년을 주기로 소재지 관할 농업법인에 대한 설립요건, 사업범위 위반 등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나. 실태조사 항목

- 조합원(준조합원)의 인적사항, 주소 및 출자 현황
- 사업범위와 관련한 사항
- 소유한 농지의 규모 및 경작유무 등 현황

다. 실태조사 후속조치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설립요건 미비, 사업범위 위반, 유사명칭 사용 등의 법률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근거법률(제20조의 2, 3)에 따라 후속조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아하, 그렇군요!

실태조사와 통계조사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농업법인 실태조사) 농업법인의 설립요건, 사업범위 등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건전한 농업법인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3년 주기로 실시하는 행정조사입니다.
 - (농업법인 통계조사) 정책기초자료 마련 등을 목적으로 매년 농업법인의 매출액, 종사자 수 등 농업법인의 경영 현황을 분석하여 경영실태 결과를 작성·공표하는 통계조사입니다.
- 실태조사와 통계조사는 목적 및 조사항목 등이 다르므로 조사자들이 귀하의 농업법인을 방문 시 번거로우시더라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실태조사 후속조치 내용]

구분	해당사항	근거법령
시정명령 (지자체→법인)	(영농조합) 조합원 5명 미만	경영체법 20조2⑤
	(농업회사) 비농업인 출자제한 위반	
해산명령청구 (지자체→법원)	(영농조합) 조합원 5명 미만이 된 지 1년 경과	경영체법 20조②
	(농업회사) 비농업인 출자제한 위반 후 1년 경과	
	사업범위 위반	
	시정명령 3회 이상 불응	
	1년 이상의 장기 휴면	상법 176① 경영체법 20조③
과태료 (지자체→법원)	시정명령 2회 이상 불응(최대 300만)	경영체법 33조②
	실태조사 불응(최대 300만) - 농지 소유 여부 거짓 응답 포함	
	설립통지, 변경통지 미이행(최대 50만) - 단, 2015년 7월 7일 이후 설립 변경등기한 법인에 한함	경영체법 33조①
	농업법인 유사명칭 사용(최대 100만)	경영체법 30, 33조①
농지처분명령 (지자체→법원)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업무집행권자 1/3이상인 농업인) 위반 후 3개월 경과 - 미이행시 토지가액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농지법 10조①, 11조①, 62조①

Q & A



Q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사업의 상세한 정보, 예컨대 지원 자격이나 절차 등을 알고 싶을 때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지원사업에 대해 참고할 자료는 있나요?

A 농업 관련 보조지원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 등)를 중심으로 매우 다양하게 진행됩니다. 우선 시·군 농정과 또는 농업 기술 센터를 방문하거나 상담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지침서에는 지원 관련 사업실시규정 및 자금관리규정과 분야별(식량, 원예·식품, 축산 등) 지원사업의 성격별로 세부사업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 자격, 신청 시기, 절차 등이 상세히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바탕으로 시·군 담당 부서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 영농조합법인에서 농식품부의 지원사업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란 조건이 있어 질문합니다. 1년 이상의 의미는 사업자등록일 기준인지, 법인 설립일부터인지, 등기일부터인지요? 아니면 실제 사업을 시작해 물품을 첫 거래한 시점부터인가요? 구체적으로 알려 주십시오.

A 농림축산식품부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어조의 내용입니다. 「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을 별표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농업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계획서 검토 및 실행 준비기간, 실제 운영 능력이나 경험 축적, 발전 가능성, 구성원들의 사업의지, 사업 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요건입니다. 즉, 해당 시군에서 종합적 판단을 통해 최종 결정할 사항입니다.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이라 함은 법인 등기(설립)일로부터 상기 사업계획서 준비 기간 등을 포함한 생산·유통·판매행위 등 실제 운영과정까지를 말합니다. 참고로, 설립 전의 작목반 실적은 법인의 실적과 무관합니다.

Q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는 농어업경영체법에 규정된 범위 내로 제한돼 있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사업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법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해산명령) 규정). 다만, 해당 사업범위 위반에 따른 해산 명령은 매우 신중하게 적용됩니다. 해산명령은 법인의 인격을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거나 농업 경영 외의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등 위반 사안을 엄격하게 확인합니다.



제2부

농업법인 업무안내

1

농업법인 설립과 등록

2

농업법인의 분야별 운영

3

농업법인의 해산과 청산

제1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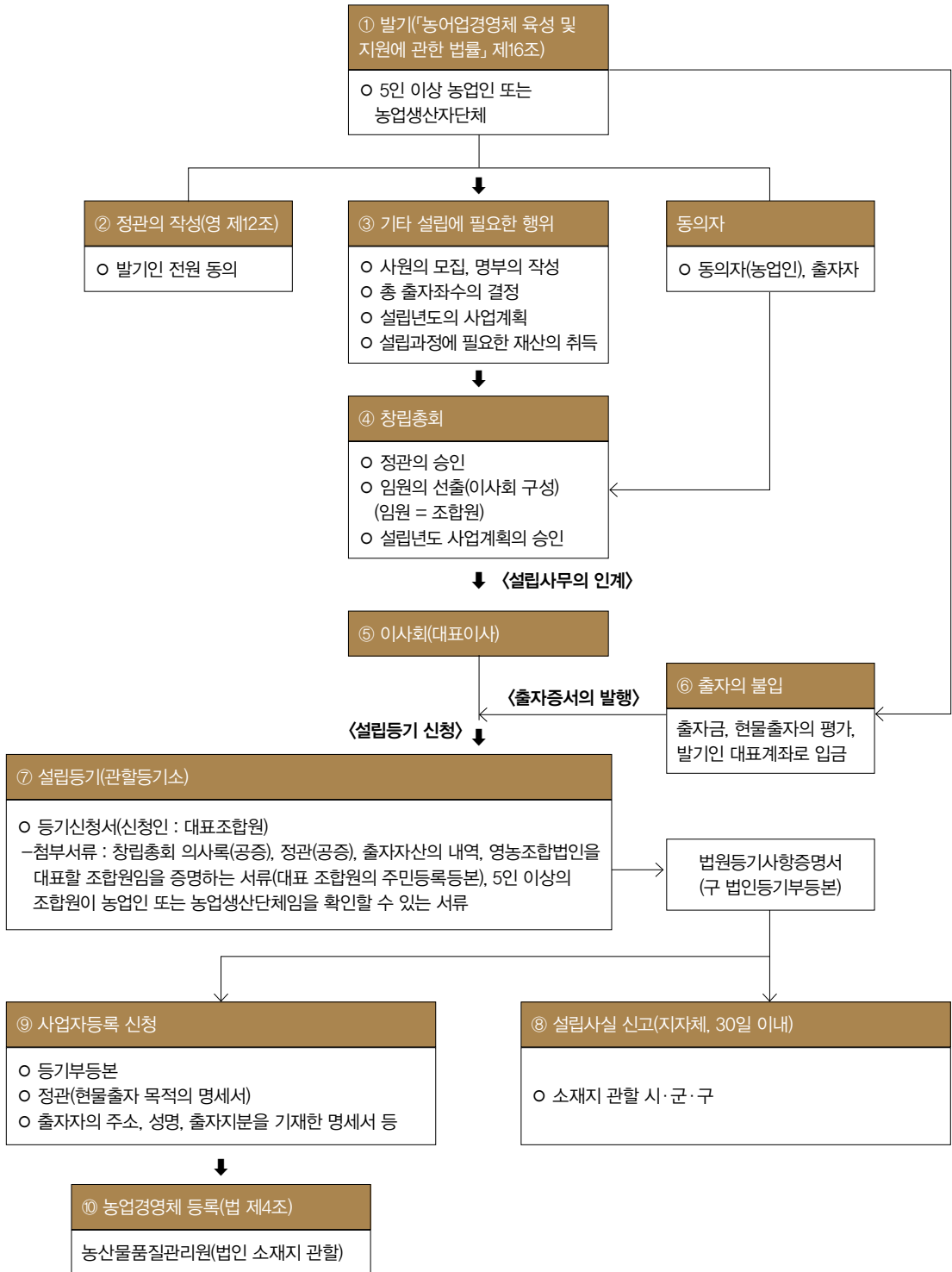
농업법인 설립과 등록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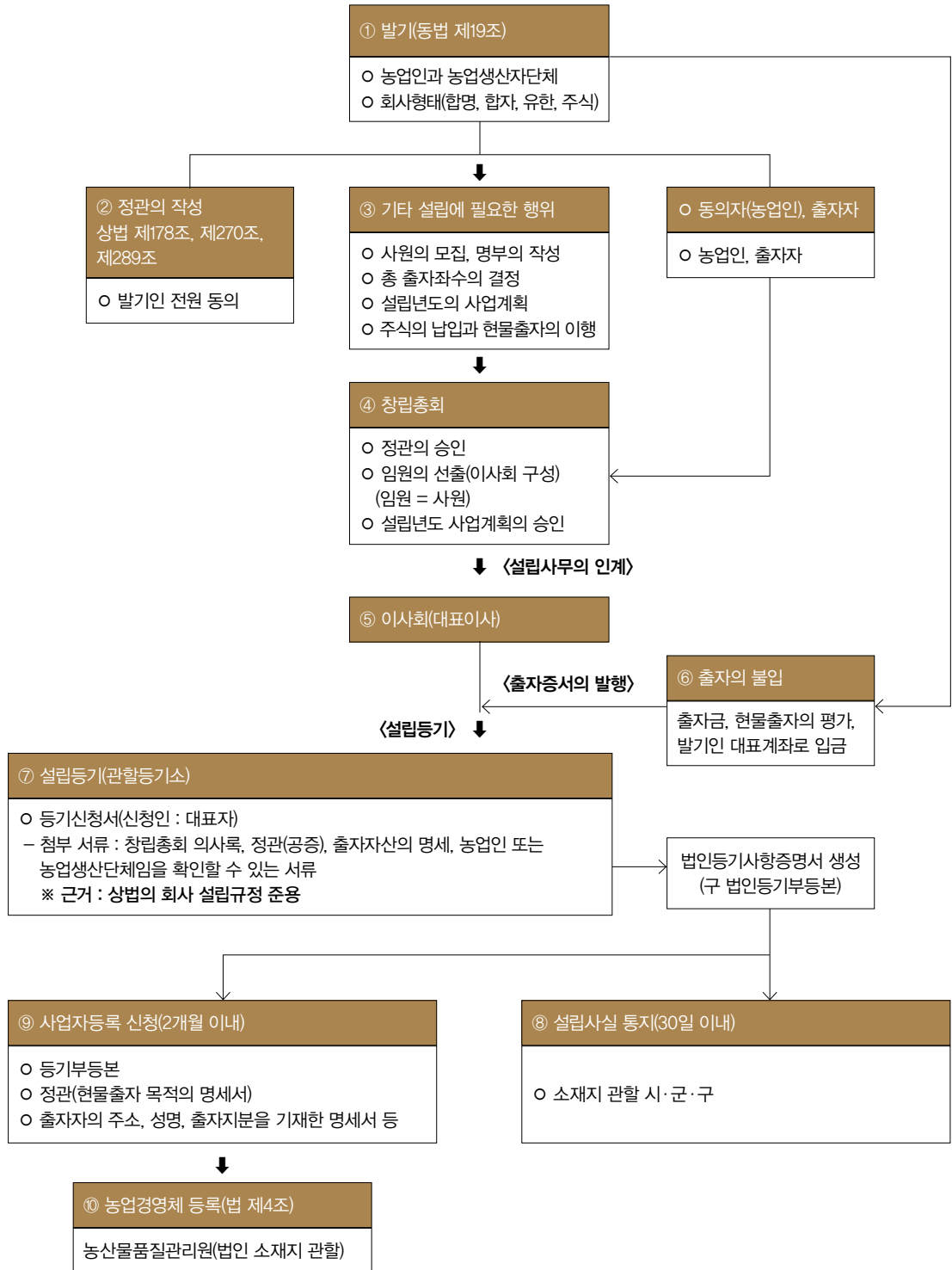
농업법인 설립절차 안내



1) 영농조합법인 설립 절차



2) 농업회사법인 설립 절차



2

농업법인 설립과 등록 자세히 보기

1) 법인의 형태와 상호 결정

가. 형태 결정

- ①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중 어떠한 형태의 농업경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 ② 법인 설립에 앞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위한 필요 정보와 지식을 충분히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다양한 유통경로의 확보와 판매를 위한 영업, 마케팅에 대한 계획을 꼼꼼히 세우고 시장조사를 충분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 ③ 법인 운영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성원 간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한 결정은 구성원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나. 상호결정

- ① 농업 법인의 이름을 '상호'라고 합니다.
- ② 상호에는 회사의 형태를 의미하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나타나야 하며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유한, 주식, 합명, 합자'라는 회사의 종류를 명확하게 포함해야 합니다. (예 :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 ③ 상호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

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登記한 상호를 사용하게 되면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23조 제1항, 제4항). 또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등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도 하면 안 됩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④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내에서는 동종의营业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登記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登記할 수 없습니다(상업登記법 제29조).

⑤ 새로 설립한 농업법인의 상호가 이미登記되어 있는지 알아보려면 대법원 홈페이지의 인터넷 등기소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 인터넷등기소 → 법인등기부 → 열람 → 상호검색

다. 자본금의 범위

자본금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정관 작성과 서명·공증

※ 아래 내용은 주식회사 위주로 작성된 것입니다.

가. 정관의 정의

정관은 농업법인의 조직, 사업, 관리 등 법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자치규범으로서 법인 설립 시에 발기인이 공동으로 작성(전원 합의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절대적 기재 내용

정관은 법인 운영의 기준이 되므로 개별법인의 사업, 규모, 운영방식에 따라 적절히 규정하되, 다음 사항은 반드시 정관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 ① 명칭
- ② 목적
- ③ 사업

- ④ 사무소의 소재지
- ⑤ 조합원(준조합원 포함) 등의 자격에 관한 사항
- ⑥ 조합원 등의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 ⑦ 조합원 등의 탈퇴 및 제명 시 지분의 계산에 관한 사항
- ⑧ 출자액의 납입방법·산정방법과 조합원 등의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 ⑨ 이익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 ⑩ 적립금의 비율과 그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 ⑪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 ⑫ 총회 기타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⑬ 해산 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

다. 상대적 기재사항과 변태설립사항

① 상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② 변태설립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중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상법 제290조(변태설립사항)에는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 ㄱ)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특별이익)
- ㄴ)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현물출자)
- ㄷ) 회사설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재산인수)
- ㄹ)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설립비용, 보수)

③ 변태설립사항은 법원이 선임한 감사인의 조사를 받고, 주식청약서에도 이를 기재해야 하는 등 더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라. 정관의 서명과 공증

발기인은 정관의 내용을 확인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공증을 받아야만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주식회사의 경우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정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3) 설립신고를 위한 사전 준비

가.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

정관을 작성한 후에는 다음과 같이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를 합니다.

① 사원모집

정관과 설립취지에 찬성하며 법인의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및 비농업인을 대상으로 준조합원 등을 모집합니다.

② 조합원의 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③ 출자 1좌당 금액과 총 출자 좌수를 결정해야 합니다.

④ 설립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⑤ 설립에 필요한 자산을 취득해야 합니다.

나. 정관 승인과 창립총회

① 창립총회의 구성

발기인 및 창립 당시의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② 창립총회에서 의결할 사항

ㄱ) 정관의 승인

ㄴ) 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선임 (이사회의 구성)

※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임함

ㄷ) 출자 납입에 관한 사항

ㄹ) 설립 당해 연도 사업계획의 승인 등

③ 창립총회 의사록 작성

ㄱ) 창립총회의 의결은 법인 설립의 기본이 되는 중요사항이므로 회의경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창립총회의사록」을 반드시 작성하고 참석자들이 기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나) 창립총회의사록은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의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설립등기 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영농조합법인(민법) : 설립, 변경 시 의사록을 공증함으로 효력이 발생

－ 농업회사법인(상법) :

· 자본금 10억 미만(설립 시) : 서명 날인 효력이 발생(공증 안함)

※ 모집설립을 하거나 10억원 이상의 발기설립일 경우에는 정관, 의사록을 모두 공증받아야 합니다.

유한회사로 설립시에도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정관은 공증을 안 해도 되지만 사원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은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 자본금 10억 미만(변경 시) : 공증함으로 효력이 발생

· 자본금 10억 이상(설립·변경 시) : 공증함으로 효력이 발생

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구성

① 대표이사의 선임

ㄱ) 대표이사는 설립등기 시 등기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대표이사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합니다.

ㄴ) 대표이사 선임 방법이나 절차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특별히 정관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로 결의하여 뽑습니다.

ㄷ) 다만, 자본의 액면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로서 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므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ㄹ) 출자 납입에 관한 사항

ㅁ) 설립 당해 연도 사업계획의 승인 등

② 이사와 감사의 선임

ㄱ) 주식회사의 주요 업무를 처리하고 주식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이사가 될 자격을 지니는 사람을 '이사'라고 하며, 이사의 업무처리를 감시하는 사람을 '감사'라고 합니다.

ㄴ) 발기인이 이사 또는 감사를 선택하거나 회사의 주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

리를 ‘의결권’이라고 부르며,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의 수만큼 의결권의 수가 정해 집니다(상법 제296조 제2항).

- ㉔) 주금납입과 현물출자가 완료된 후 발기인은 지체 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상법 제296조 제1항).
- ㉕) 주식회사의 이사는 반드시 3인 이상으로 선임하여야 하지만, 주식회사의 자본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1인 또는 2인으로도 가능합니다(상법 제383조 제1항). 또한,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㉖) 발기인도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될 수 있으므로, 4인의 발기인 중 3인이 이사가 되고 나머지 1인이 감사가 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 ㉗) 발기인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상법 제297조).

아하, 그렇군요!

정관이란?

- **정관(定款)** : 회사 또는 법인의 자주적 법규. 실질적으로는 단체 또는 법인의 조직·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을 뜻하고, 형식적으로는 그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의미합니다. 정관은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회사 또는 법인의 구성원 내지 기관을 구속합니다.
- **정관의 제반 근거** :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등 적용,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의 회사 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정관 작성 시 관련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자본금 출자

가. 출자의 유형 및 범위

- ① 출자의 이행 방법에는 주금납입과 현물출자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 ② 주금납입이란 발기인이 주식 인수를 한 후 인수할 주식금액을 은행에 입금하는 방법을 말합니다(은행에 입금한 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습

니다. 다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③ 현물출자란 돈이 아닌 사무실, 공장부지, 업무용차량 등을 제공하는 방법을 말합니다(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 ④ 법인에의 출자는 농지·현금·기타현물로 출자할 수 있으며, 농업회사법인은 비농업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90/10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총출자액이 80억 초과시 8억을 제외한 금액까지 출자 가능)

나. 출자의 불입 및 출자증서의 발행

- ① 조합원은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이나 이전에 필요한 경우,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 ② 출자를 불입한 조합원 등에게 대표이사 명의로 출자증서를 발급하고 출자 증서에 출자 좌수, 출자액, 출자재산의 표시(토지의 경우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등을 기재합니다.
- ③ 현물출자의 경우 출자액 산정방법, 출자최고한도, 출자액의 납입방법 등을 정관으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5) 설립 등기 신청

농업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농업법인 설립 시 법인설립신청서와 함께 추가로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영농조합법인
 - ㄱ) 창립총회의사록
 - ㄴ) 정관
 - ㄷ)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 ㄹ)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 ㅁ)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농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
- ② 농업회사법인

- ㄱ)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
- ㄴ) 농업인의 출자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 각 주식인수인의 성명, 주소, 인수한 주식의 수 및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해당 여부를 표시한 서류와 해당 주식인수인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식회사 외의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인 사원의 명단 및 해당 사원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지자체 통보 및 사업자등록 신청

가. 지자체 통보

- ① 설립·변경 등기 후 30일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설립·변경 등기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농업법인 설립등기통지서와 함께 정관, 조합원(준조합원 포함) 명부, 창립총회의사록,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③ 설립·변경 등기를 통지 받은 시군구청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를 확인하며, 명부에 이를 기재합니다.

나. 사업자 등록

- ① 농업법인 설립 이후 2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②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절차 안내와 서식제공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 국세정보 → 사업자등록안내 → 제출 서류 및 교부 → 사업자등록신청 제출서류



3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

1) 농업경영체 등록 이해하기

가. 목적

농업정책 등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농업인·농업법인의 경영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요합니다.

- 수집 정보는 농업경영체 지원에 관한 정책 수립 및 현안 대응, 정책효과 검증, 신규사업 발굴 및 재정사업 투명성 제고 등에 널리 활용됩니다.

나. 법적근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09. 10. 2 시행)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 농업·농촌 관련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영체는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사항 중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도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 등록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모두 해당됩니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

라. 등록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전산등록 → 등록확인서 발급의 순으로 등록합니다.

- 처리기관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

등록절차	등록 방법
신청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서식에 따라 정보기재 * 신청서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나 농관원 지원·사무소를 방문하여 수령
신청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제출
접수 및 전산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내용 확인 후 농업경영체 고유등록번호 부여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 * 제출서류 확인 및 필요시 신청사항에 관한 현지조사 등 병행
등록확인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농업인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및 확인서 발급 * 직불금·경영체 통합 신청 시 90일 이내에 발급

※ 관련문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콜센터(1644-8778)

2) 농업경영체 등록 절차

가. 신규등록

- ① 신청대상 : 농업·농촌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신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대상입니다.
- ② 신청자격
 - ㄱ) 농업인 : 경영 또는 경작농지가 1,000㎡이상 또는 농지·축사 등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생산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경우는 경영주 외 농업인 등록 자격에 해당)

나)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 등록정보 : 농지·축사·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등 56개 정보

※ 생산수단 등 농지는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로 불법 점유 또는 불법 개간이 아님
등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및 각종 자격증빙 서류

㉠ 자경농지 : (기본) 경작사실확인서, (선택1) 농자재 구매영수증, 농산물
판매영수증, 그 외 실경작 증빙자료 등

㉡ 임차농지 : (기본) 임대차계약서, (선택1) 농자재 구매영수증, 농산물
판매영수증, 그 외 실경작 증빙자료 등

 **아하, 그렇군요!**

농업법인 필수 제출서류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확인 증빙서류**

- 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구매영수증(농산물판매영수증), 이사회(총회)회의록,
사업자등록증명서,
- ② 조합원 및 출자자 농업인 확인 : 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확인서 중 택 1

나. 변경등록

① 변경대상

ㄱ) 등록된 경영체 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ㄴ) 등록기관(농관원)의 확인결과 등록내용이 사실과 달라 변경 등록요청을 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② 변경신청기간 : 등록된 내용이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③ 변경등록 대상 중요정보

ㄱ) 일반현황

- 농업인 : 농업인(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 성명 및 주소
- 농업법인 : 법인명·소재지, 대표자 인적사항, 구성원 및 출자규모

나) 농지정보

- 농지 소재지와 지목(공부·실제), 농지면적(공부·실제관리 및 휴·폐경), 시설현황(시설종류 및 면적), 경영형태(자경·공유·임차)

다) 가축·곤충정보

- 가축·곤충 사육시설의 소재지·지목 및 면적, 경영형태(자영·수탁)

리) 생산정보

- 농지소재지별로 등록된 농작물 품목이 바뀌거나 등록된 품목의 재배면적이 10%를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 단, 1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다음의 규모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는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 노지에서 재배되는 품목의 재배면적 : 660㎡
- 시설에서 재배되는 품목의 재배면적 : 330㎡

※ 품목별 변경된 재배면적이 100㎡ 이하로 변경된 경우에는 제외

- 가축 및 곤충의 종별 상시 사육규모가 10%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 단, 가축 또는 곤충의 출하로 인해 일시적인 변경이 발생하거나 상시 사육규모의 변경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닭 : 1,000마리 이내 · 오리 : 500마리 이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주소록

(농업경영체 등록 관할시군)

경기지원					
사무소명	일반전화	FAX	주소	우편번호	관할시군
품질관리과	031) 445-5515	031) 443-4090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14 (안양6동 532-9)	14035	과천·의왕·안양· 군포·광명·시흥시
서울사무소	02) 2242-6060	02) 2244-0223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2길 12 (장지동 840-1)	05816	서울특별시
인천사무소	032) 821-6060	032) 819-7257	인천광역시 연수구 남말로47번길 30 (선학동 390-6)	21909	인천광역시 (강화군 제외)
수원사무소	031) 295-8070	031) 295-589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동로14번길 84 (서둔동 27-59)	16619	수원시·안산시
화성·오산사무소	031) 898-6194	031) 898-6198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1014 병점플라자 503호 (병점동 379-10)	18411	화성시·오산시
의정부·동두천· 양주사무소	031) 874-6061	031) 874-4130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로 56 (금오동 140-1)	11676	의정부시· 동두천시·양주시
평택사무소	031) 657-6060	031) 657-6906	경기도 평택시 평택1로 42 (비전동 633-24)	17895	평택시
안성사무소	031) 671-6061	031) 671-6066	경기도 안성시 석정길 14 (석정동 265-2)	17578	안성시
구리·남양주사무소	031) 565-6060	031) 557-6594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28 (교문동 737-8)	11935	구리시·남양주시
가평사무소	031) 581-6060	031) 582-7553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200-21 (읍내리 616-7)	12413	가평군
성남·하남· 광주사무소	031) 766-6060	031) 765-9337	경기도 광주시 경충대로 1422번길 11-11 (쌍령동 337-5)	12791	성남시·하남시· 광주시
이천·용인사무소	031) 638-6060	031) 638-5792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중부대로 1724 (신원리 647-18)	17318	이천시·용인시
파주·고양사무소	031) 953-6061	031) 954-6094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개포래로 66 (문산리 10-102)	10823	파주시·고양시
포천·연천사무소	031) 534-6060	031) 535-6063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청군로 3384 (구읍리 571-6)	11153	포천시·연천군
여주사무소	031) 886-6060	031) 883-1320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중부대로 2799-24 (왕대리 947-17)	12642	여주시

양평사무소	031) 771-6140	031) 771-6139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한빛길 38 (양근리 221-6)	12562	양평군
강화사무소	032) 933-6060	032) 934-2707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송악길 8 (관청리 889-2)	23032	인천광역시 강화군
김포사무소	031) 986-6060	031) 986-2425	경기도 김포시 북변중로35-1 (북변동 409-7)	10106	김포시·부천시

강원지원					
사무소명	일반전화	FAX	주소	우편번호	관할시군
품질관리과	033) 244-7797 033) 251-0048	033) 251-0205	강원도 춘천시 충열로 125 (우두동 429-5)	24226	춘천시
원주사무소	033) 744-6060	033) 743-6491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50 (나라키움원주청사)	26424	원주시
횡성사무소	033) 344-5224	033) 344-5229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앞들동2로 38 (읍상리 195-4)	25230	횡성군
강릉사무소	033) 651-0250	033) 651-9764	강원도 강릉시 하평2길 31 (포남2동 1295-3)	25566	강릉시
삼척·동해사무소	033) 574-6060	033) 573-7831	강원도 삼척시 원당로 3 (원당동 7-3)	25918	삼척시·동해시
속초·양양사무소	033) 631-6060	033) 637-4151	강원도 속초시 온천로 136 (노학동 365)	24864	속초시·양양군
고성사무소	033) 681-6070	033) 681-6079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북로 103 (동호리 760-3)	24731	고성군
홍천사무소	033) 435-6060	033) 435-4334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669 (결운리 467-1)	25126	홍천군
영월사무소	033) 374-6060	033) 373-7020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중앙로 229 (덕포리 614-1)	26227	영월군
평창사무소	033) 333-6060	033) 333-0628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종부로 52 (종부리 508-8)	25377	평창군
정선·태백사무소	033) 563-6067	033) 563-6069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녹송로 55-13 (봉양리 65-5)	26127	정선군·태백시
철원·화천사무소	033) 452-2504	033) 452-1243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명성로 139번안길 15 (지포리 90-2)	24037	철원군·화천군
(화천분소)	033) 441-6061	033) 441-6062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상승로2길 25-10 (하리 97-1)	24117	화천군
인제·양구사무소	033) 461-6060	033) 461-9786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65 (상동리 310-7)	24625	인제군·양구군

충북지원

사무소명	일반전화	FAX	주소	우편번호	관할시군
품질관리과	043) 279-4158	043) 266-605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 220번길 46 (봉명동 2451)	28462	청주시
충주사무소	043) 843-6061	043) 842-6935	충북 충주시 대흥4길 7 (교현동 1093)	27370	충주시
제천·단양사무소	043) 646-6061	043) 646-2734	충북 제천시 동명로 61 (명동 175-2)	27171	제천시·단양군
옥천사무소	043) 731-5363	043) 731-0255	충북 옥천군 옥천읍 옥천동이로 234-8 (매화리 33-1)	29043	옥천군
영동사무소	043) 744-7564	043) 744-4614	충북 영동군 영동읍 회동로 132 (회동리 54-3)	29141	영동군
괴산·증평사무소	043) 834-3778	043) 832-2001	충북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4길 39 (서부리 277-2)	28035	괴산군·증평군
보은사무소	043) 544-6060	043) 543-2046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로 49 (삼산리 99-17)	28951	보은군
음성사무소	043) 873-6061	043) 873-6044	충북 음성군 음성읍 설성로57번길 15 (읍내리 469-1)	27704	음성군
진천사무소	043) 537-9951	043) 537-9954	충북 진천군 진천읍 덕금로 65 (성석리 326-2)	27844	진천군

충남지원

사무소명	일반전화	FAX	주소	우편번호	관할시군
품질관리과	042) 256-8901	042) 252-6778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327 (선화동 188-5)	34851	대전광역시
천안사무소	041) 551-6060	041) 555-819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273-7 (신부동 873)	31117	천안시
아산사무소	041) 547-6080	041) 547-6084	충남 아산시 염치읍 염성길 70-26 (염성리 194-3)	31445	아산시
공주·세종사무소	041) 853-6060	041) 856-4487	충남 공주시 전막1길 6-11 (신관동 591-6)	32573	세종시, 공주시
서산·태안사무소	041) 663-6060	041) 663-5191	충남 서산시 수석산업로 25 (수석동 1-76)	32010	서산시·태안군
논산사무소	041) 736-6060	041) 736-9030	충남 논산시 체육로 78 (취암동 51-8)	32993	논산시·계룡시

금산사무소	041) 752-6060	041) 754-4977	충남 금산군 금산을 용머리길 28 (아인리 81-4)	32742	금산군
부여 사무소	041) 835-3301	041) 836-3301	충남 부여군 규암면 흥수로 551 (합송리 1120)	33120	부여군
보령사무소	041) 932-6060	041) 934-0756	충남 보령시 체육관길 16 (죽정동 418-10)	33441	보령시
서천사무소	041) 952-1521	041) 952-152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126 (화금리 624)	33633	서천군
홍성·청양사무소	041) 631-7290	041) 631-7294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00 (고암리 548-5)	32232	홍성군
(청양분소)	041) 942-9600	041) 942-9688	충남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4길 25-7 (읍내리 331-3)	33332	청양군
예산사무소	041) 335-6060	041) 331-2540	충남 예산군 예산읍 총령사로 36 (향천리 295-55)	32433	예산군
당진사무소	041) 354-6060	041) 356-4669	충남 당진시 당진중앙로 167 (읍내동 270-7)	31770	당진시

전북지원					
사무소명	일반전화	FAX	주소	우편번호	관할시군
품질관리과	063) 230-3143~7	063) 214-2164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운암로 31 (팔복동2가 834-2)	54853	전주시·완주군
익산사무소	063) 841-6060	063) 841-3094	전북 익산시 무왕로 1646 (덕기동 381-2)	54570	익산시
군산사무소	063) 452-6399	063) 452-5071	전북 군산시 조촌5길 59 (조촌동 856-9)	54076	군산시
남원사무소	063) 635-6060	063) 635-6064	전북 남원시 충정로 252 (월락동 497)	55736	남원시
순창사무소	063) 653-4272	063) 653-4276	전북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304 (순화리 464-4)	56038	순창군
임실사무소	063) 643-6061	063) 644-6066	전북 임실군 임실읍 호국로 1556-10 (오정리 133-2)	55930	임실군
정읍사무소	063) 533-6060	063) 533-1662	전라북도 정읍시 연지1길 31 (연지동 305-33)	56158	정읍시
김제사무소	063) 547-6767	063) 548-8766	전북 김제시 벽골제로 819 (입석동 408-1)	54416	김제시
부안사무소	063) 582-6060	063) 581-3448	전북 부안군 부안읍 오리정로 21-6 (서외리 455-43)	56311	부안군

진안·장수사무소	063) 432-6060	063) 433-0607	전북 진안군 진안읍 대광길 11 (군하리 295-1)	55426	진안군·장수군
(장수분소)	063) 351-6061	063) 351-3390	전북 장수군 장수읍 외동길 55 장수군농업기술센터 3층	55640	
무주사무소	063) 322-6060	063) 322-6071	전북 무주군 무주읍 향학로 90 (읍내리 401-1)	55520	무주군
고창사무소	063) 563-6060	063) 561-0437	전북 고창군 고창읍 녹두로 1264 (덕산리 866)	56443	고창군

전남지원

사무소명	일반전화	FAX	주소	우편번호	관할시군
품질관리과	062) 970-6281 062) 970-6282	062) 970-6293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800 (월계동 868-5)	62276	광주광역시
목포·신안사무소	061) 240-0440	061) 242-9423	전남 목포시 호남로64번길 19 (대안동 5)	58723	목포시·신안군
무안사무소	061) 450-8409	061) 453-8273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474 (성남리 189-1)	58531	무안군
여수사무소	061) 651-6060	061) 651-5148	전남 여수시 문수로 129 (문수동 111)	59700	여수시
순천·광양사무소	061) 743-6060	061) 742-4706	전남 순천시 지현길 100 (덕월동 412-2)	57997	순천시·광양시
나주사무소	061) 330-5550	061) 333-2137	전남 나주시 송월4길 1 (송월동 1355)	58261	나주시
화순사무소	061) 373-6161	061) 373-6665	전남 화순군 화순읍 서양로 374-2 (일심리 533)	58105	화순군
담양·장성사무소	061) 380-2321	061) 383-7791	전남 담양군 담양읍 천변5길 49 (천변리 391-7)	57348	담양군·장성군
(장성분소)	061) 399-0920 06) -399-0921	061) 392-3661	전남 장성군 장성읍 청운2길 16 (영천리 1048-13)	57220	장성군
곡성·구례사무소	061) 360-5810	061) 363-9326	전남 곡성군 곡성읍 읍내1길 6 (읍내리 778)	57537	곡성군·구례군
고흥사무소	061) 832-1670 061) 834-1670	061) 834-3931	전남 고흥군 고흥읍 봉황길 11 (옥하리 213-1)	59538	고흥군
보성사무소	061) 850-2641 061) 850-2642	061) 853-6050	전남 보성군 보성읍 현충로 81 (보성리 897-3)	59457	보성군
장흥사무소	061) 863-6060	061) 864-6065	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7 (건산리 715-1)	59328	장흥군

강진·완도사무소	061) 434-6069	061) 434-4411	전남 강진군 강진읍 목리길 17 (동성리 66-8)	59240	강진군·완도군
해남·진도사무소	061) 530-0614	061) 536-9639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교육청길 35 (해리 221-1)	59038	해남군·진도군
(진도분소)	061) 543-6060		전남 진도군 진도읍 교동5길 5 (교동리 481-2)	58914	
영암사무소	061) 470-3071	061) 473-5495	전남 영암군 영암읍 남주로 195 (역리 168-2)	58414	영암군
영광사무소	061) 350-0541	061) 353-3739	전남 영광군 영광읍 천년로 1430 (녹사리 65-18)	57049	영광군
함평사무소	061) 320-4060	061) 324-5424	전남 함평군 함평읍 신기산길 16 (기각리 912-1)	57147	함평군

경북지역					
사무소명	일반전화	FAX	주소	우편번호	관할시군
품질관리과	053) 320-5356	053) 327-0733	대구광역시 북구 동암로 76 (동천동 892-1)	41423	대구광역시
포항·울릉사무소	054) 253-6060	054) 254-6062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로 13 (두호동 616-1)	37709	포항시·울릉군
경주사무소	054) 743-6060	054) 774-6861	경북 경주시 현곡면 용담로 490 (하구리 1004-4)	38048	경주시
김천사무소	054) 437-6060	054) 433-0189	경북 김천시 혁신로 316-11 (울곡동 6-1440)	39660	김천시
안동사무소	054) 856-6060	054) 841-4887	경북 안동시 제비원로 367 (안기동 285-3)	36626	안동시
영천사무소	054) 332-6060	054) 334-2041	경북 영천시 어봉길 78 (대전동 348-1)	38821	영천시
경산·청도사무소	053) 816-6060	053) 815-0347	경북 경산시 자인면 한장군로 242 (북사2리 520-4)	38549	경산시·청도군
(청도분소)	054) 371-6060	054) 370-6879	경북 청도군 화양읍 청화3길 10 (범곡리 147)	38329	
구미·칠곡사무소	054) 457-6060	054) 453-3100	경북 구미시 송원동로 14-5 (송정동 68)	39280	구미시·칠곡군
(칠곡분소)	054) 977-6061	054)977-6065	경북 칠곡군 왜관을 중양로 184 (2층,왜관리 227-8)	39890	
상주사무소	054) 536-6060	054) 534-2170	경북 상주시 중앙로 233 (성하동 13-1)	37190	상주시

의성·군위사무소	054) 832-6060	054) 834-6649	경북 의성군 봉양면 경북대로 5223 (분토리 922-3)	37360	의성군·군위군
(군위분소)	054) 383-6060	054) 383-1189	경북 군위군 군위를 동서길 29 (서부리 386)	39015	
영덕사무소	054) 732-6060	054) 734-0940	경북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129 (남석리 230-1)	36433	영덕군
청송·영양사무소	054) 874-6060	054) 872-7792	경북 청송군 진보면 진보로 215 (각산리 503-37)	37405	청송군·영양군
성주사무소	054) 931-6060	054) 933-2022	경북 성주군 선남면 성주로 3757-11 (관화리 1091-3)	40045	성주군
고령사무소	054) 954-6060	054) 955-9236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장기공단 1길 11 (고아리 112-1)	40141	고령군
문경사무소	054) 553-6060	054) 553-3063	경북 문경시 남부4길 26 (모전동 63-3)	36950	문경시
예천사무소	054) 655-6060	054) 655-6061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204 (서본리 224-1)	36826	예천군
영주·봉화사무소	054) 634-6060	054) 635-5248	경북 영주시 영주로 86번길 30 (가흥동 1516)	36134	영주시·봉화군
(봉화분소)	054) 672-6060	054) 672-1186	경북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079 (해저리 101-2)	36236	
울진사무소	054) 782-6060	054) 782-2436	경북 울진군 울진읍 대흥신림로 1404 (읍내리 230-2)	36326	울진군

경남지원

사무소명	일반전화	FAX	주소	우편번호	관할시군
품질관리과	055) 275-2822	055) 275-282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9번길 16 (용호동 8-5)	51430	창원시
부산사무소	051) 868-6060	051) 864-7376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93 (강동동 20)	46705	부산시
울산사무소	052) 265-6060	052) 260-3931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언양로 436 (반송리 425-1)	44936	울산시
진주사무소	055) 759-6060	055) 759-6031	경남 진주시 술밭로 80번길 16 (상평동 221-5)	52805	진주시
사천사무소	055) 855-2812	055) 855-2815	경남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900 (신복리 500-6)	52538	사천시
통영·거제사무소	055) 648-6060	055) 649-1215	경남 통영시 광도면 향교옆길 86 (죽림리 379-5)	53021	통영시·거제시

고성사무소	055) 674-6060	055) 673-6046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24-61 (교사리 119-1)	52932	고성군
밀양사무소	055) 354-2024	055) 356-3909	경남 밀양시 중앙로 128 (가곡동 656-3)	50444	밀양시
김해·양산사무소	055) 321-6060	055) 336-3044	경남 김해시 전하로 63번길 8-9 (흥동 42-8)	50965	김해시·양산시
함안·의령사무소	055) 582-6060	055) 583-2603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3길 29 (말산리 186)	52046	함안군·의령군
창녕사무소	055) 533-6060	055) 532-7895	경남 창녕군 창녕읍 여초길 104 (여초리 213)	50334	창녕군
하동사무소	055) 884-6060	055) 883-1990	경남 하동군 하동을 경서대로 75 (광평리 427)	52328	하동군
남해사무소	055) 864-6060	055) 864-7883	경남 남해군 고현면 탑동로 37 (대사리 684)	52404	남해군
함양·산청사무소	055) 962-6060	055) 964-0301	경남 함양군 함양읍 영림서길 32 (백연리 67-1)	50044	함양군·산청군
(산청분소)	055) 972-6060	055) 972-2123	경남 산청군 산청읍 중앙로 26 (산청리 239)	52222	산청군
합천사무소	055) 931-6060	055) 932-0818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핫들1로 50 (합천리 1636)	50231	합천군
거창사무소	055) 942-6060	055) 944-0630	경남 거창군 거창읍 수남로 2159 (김천리 169-22)	50147	거창군

제주지원					
사무소명	일반전화	FAX	주소	우편번호	관할시군
품질관리과	064) 728-5261	064) 728-5214	제주시 청사로 59 제주지방합동청사 5층 540호 (도남동 662)	63219	제주시
서귀포사무소	064) 735-4911	064) 735-4902	제주도 서귀포시 신효중앙로 17 (신효동 633-2)	63606	서귀포시

Q & A



Q 비농업인의 농업회사법인 출자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자연인만 출자할 수 있는 건가요? 법인의 경우에도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출자는 자연인 뿐 아니라 법인격을 가진 주체도 가능합니다. 다만,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의 출자는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의 9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Q 농업인의 명의를 빌려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적법한지요? 또 법인 임원과 조합원의 수에는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적법하지 않습니다. 발기인들이 실제 농업인이 아니면서 다른 농업인의 명의를 빌렸다면,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적법하게 설립된 법인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영농조합법인의 임원 수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사항은 없으며 법인의 상황에 따라 운영하면 됩니다. 다만 조합원의 수는 5명 이상으로 두어야 합니다. 또한 의결권을 갖는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로 한정하며, 비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법인은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Q 상법상의 일반법인이 농업 및 부대사업 실적 없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농어업경영체법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법인의 설립요건(명칭변경, 비농업인의 출자한도, 사업목적 등)을 갖추어 정관변경, 총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어 변경등기하셔야 합니다.

Q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생산 및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활동에 고용되어 1년 이상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농업인으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다음의 경우는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①농업회사법인의 업무 집행권자(상법상 등기이사_상근)로 1년간 농업회사법인에 근무한 경우 ②농업회사법인의 업무 집행권자(상법상 등기이사_비상근)로 1년간 농업회사법인에 근무한 경우 ③농업회사법인의 집행 임원(상근)으로 1년간 농업회사법인에 근무한 경우 ④농업회사법인의 집행 임원(비상근)으로 1년간 농업회사 법인에 근무한 경우 등등에 대한 농업인 자격 유무를 알려주십시오.

A 위 네 가지 모두 현재로서는 농업인으로 인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비농업인 중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하고 동 법인의 업무집행권자 내지 임원(상근 또는 비상근)이 된 경우에는 출자자(주주)로서의 경영이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행위이므로, 농업인의 자격과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농업인의 기준 중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은 농업인으로서 인정을 하고 있으나 법인의 대표와 등기이사는 해당 요건으로는 농업인 확인이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법인의 분야별 경영

1

회계 분야

1) 농업경영기록의 목적과 필요성

가. 농업경영기록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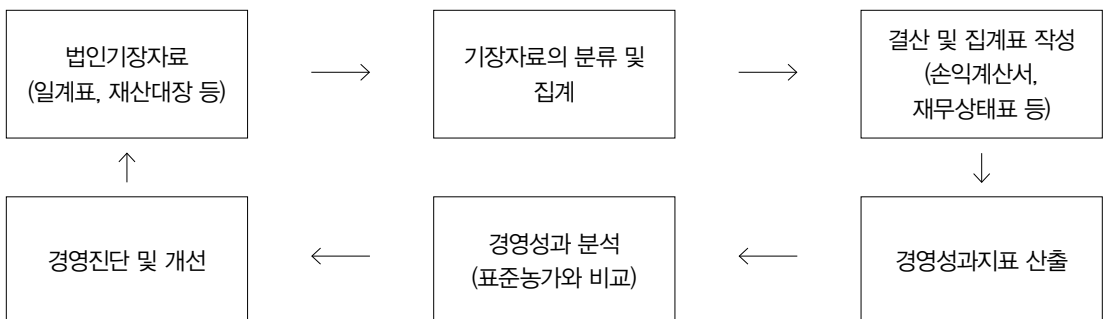
- ① 농업 법인체를 설립하게 되면 수지가 얼마인지, 왜 손해를 보았는지에 관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경영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농업경영자가 농업을 영위하여 수지를 맞추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경영성과 분석, 경영진단과 설계, 경영개선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기본이 되는 것이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 기록을 위한 장부작성입니다.
- ② 농업경영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농업회계의 정보이용자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보이용자란 구체적으로 경영주(농업인 자신), 투자자, 종업원, 금융기관, 정부, 세무서 등 법인 경영체를 둘러싼 모든 경제주체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나. 농업경영기록의 필요성

- ① 농업법인의 경영기록이 필요한 이유는, 잘못된 점을 고쳐서 좋게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경영의 결함을 발견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법인 경영의 실태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 ② 농업법인의 경영주는 자신의 경영체에 대한 경영 실태를 어느 정도까지 파악하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경영주는 농경지가 몇 평이고, 쌀을 몇 가마나 생산하였고, 질소비료는 몇 포를 사용하였고, 모내기에는 얼마만큼의 노동이 투입되었다고 하는 개개의 기술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기억도 정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 ③ 그러나 경영주가 자신의 재산총액, 농업투자자본액, 직원노동의 연간 이용일수, 작목별 노동 투자일수, 연간의 농업소득, 작목별 연간 농업소득, 주요작물의 단위당 생산비 등의 경제적인 사실이나 이를 취합 정리하는 사항에는 자신이 없고, 어림짐작에 의존하곤 합니다.
- ④ 법인경영은 여러 종류의 농업자산을 이용하여 농산물을 생산, 가공, 유통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법인경영의 실태는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에 기억이나 간단한 메모에 의하여 파악하기 어렵고, 특히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려고 하면 그 내용이 부정확할 때가 많습니다.
- ⑤ 따라서 법인경영의 실태를 분명한 약속과 매일의 기록을 통하여 정확히 정리해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농업부기의 작성이 필요합니다. 농업부기를 작성하지 않는 농가는 종종 나침반이 없는 배나, 바늘이 없는 시계에 비유할 만큼 선택적 사항이 아니라 필요 불가결한 것입니다.
- ⑥ 경영기록 및 진단 과정은 다음 여섯 단계에 걸쳐 진행됩니다.

[경영기록 및 진단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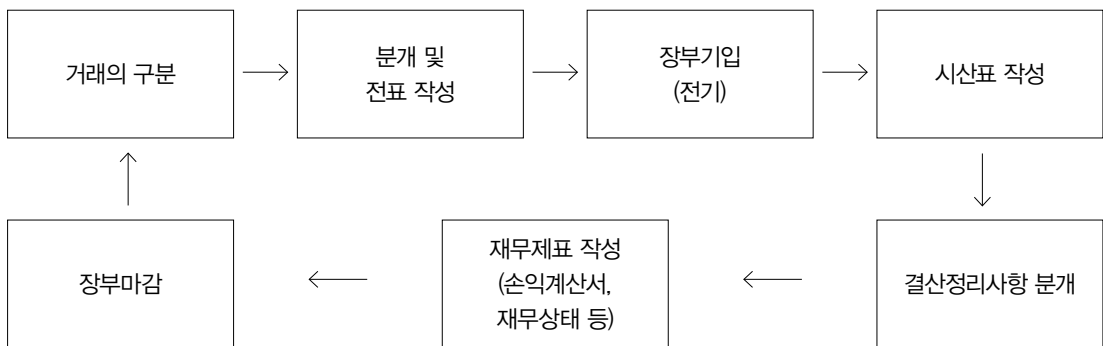


2) 농업경영기록 방법

가. 경영기록과정

경영기록과정은 반드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진행할 필요는 없으나, 대체로 다음의 7 단계로 나누어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경영기록과정]



나. 재무상태표(구,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이해

① 재무상태와 손익계산서는 농업경영체가 영농활동을 하여 얻은 성과를 영농이 끝나는 시점에 작성하는 성적표를 의미합니다.

② 재무상태표는 농업경영체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회계기간이 끝나는 회계연도 말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한 표입니다. 손익계산서는 농업경영체가 일정기간(회계기간) 동안의 영농활동에서 얻은 총이익과 소비한 총비용을 계산하여 회계기간 동안 벌어들인 순이익 혹은 1년 동안 지출한 순비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한 표를 말합니다.

ㄱ) 재무상태표

①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이라는 3개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② 자산항목 유통자산인 현금, 외상매출금과 비유통자산인 대동물, 대농기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채 및 자본의 항목에는 부채인 차입금과 자본인 자본금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기순이익은 앞의 설명처럼 자본금에 포함되어 자본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산(차변)		부채 및 자본(대변)	
현 금	840,000	차 입 금	500,000
외상매출금	600,000	자 본 금	1,640,000
대 동 물	550,000	(당기순이익)	(40,000)
대농기구	150,000		
합 계	2,140,000	합 계	2,140,000

- ㉠ 재무상태표는 농업경영체의 재산 상태를 일정시점(회계연도 말)에서 정리하여 회계기간 동안에 변화한 재산의 증감상태를 간결하게 표시한 일람표입니다.
- ㉡ 재무상태표는 이름과 같이 차변(재무상태 표의 왼쪽)과 대변(재무상태 표의 오른쪽)으로 구분하여 비교하는 표이며, 재무상태 표의 차변에는 농업경영체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을 기록합니다. 대변에는 자산을 구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원을 부채(타인자본)와 자본(자기자본)의 순서로 기록합니다.
- ㉢ 재무상태표의 차변, 즉 자산의 합계와 대변(부채와 자본의 합계)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나) 손익계산서

- ㉠ 손익계산서는 비용항목과 수익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용항목의 내용을 보면(표 참조) 총비용은 사료비, 인건비, 잡비로 구성됩니다.
- ㉡ 손익계산서는 회계기간을 단위로 회계기간 이내에 발생한 총이익과 총비용을 계산하여 어느 정도의 순이익 혹은 순손실이 발생하였는가에 대한 이유와 원인을 밝히는 계산서입니다. 총비용 항목에는 당기순이익이 포함됩니다. 농업경영에서 발생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면 나머지가 순수익입니다.
- ㉢ 재무상태 표와 같이 손익계산서에서도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일치해야 합니다. 즉 차변(총비용)과 대변(총수익)을 일치시키면 그 차액이 순수익이 되며 이때 순수익을 그 당시의 회계기간에 발생한 순수익이라 하여 당기순이익이라고 합니다.

- ㉔ 국내 축산농가의 손익계산서 작성 사례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축산농가가 대동물을 사육하기 위하여 사료비, 인건비, 잡비 등 1,600,000원의 비용을 투입하고, 대동물을 판매하여 대동물수익을 2,000,000원 얻었다면, 이때 축산농가의 당기 순이익은 400,000원이 됩니다.

비 용		수 익	
사 료 비	1,000,000	대 동 물 수 익	2,000,000
인 건 비	500,000		
잡 비	100,000		
당기순이익	400,000		
합 계	2,140,000	합 계	2,140,000

㉕) 거래의 의미

- ㉕) 거래란 물건을 구입하고, 혹은 판매하면서, 그 대금을 주고받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농업부기 혹은 농업회계에서도 일반 상거래의 의미가 그대로 사용됩니다.
- ㉕) 이러한 거래를 재무상태표를 구성하는 항목인 자산, 부채, 자본과 손익계산서의 구성항목인 수익, 비용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면, 자산, 부채, 자본과 수익, 비용의 증가 혹은 감소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원인을 표시합니다.
- ㉕) 예를 들면, 자산의 증가 혹은 감소란, 농업경영체가 영농을 위하여 논을 현금으로 구입하였다면 토지라는 비유동자산이 증가하고, 현금이라는 유동자산이 감소한 것을 말합니다. 또한 비유동자산인 대농기구를 현금으로 팔았다면, 대농기구자산이 감소하고 그 대신 유동자산인 현금이 증가한 것입니다.
- ㉕) 또한 자산과 자산 간에 증가와 감소의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며, 자산과 부채 간에 증가와 감소의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각각의 항목 간에 이러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를 거래의 8가지 요소간의 변화라 합니다.
- ㉕) 거래의 8가지 요소
거래란 자산, 부채, 자본 및 수익, 비용의 증가 혹은 감소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원인입니다. 재무상태표의 구성요소인 자산, 부채, 자본은 증가하거나 감

소하지만, 손익계산서의 구성요소인 수익, 비용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법인이 경운기를 구입하면, 대농기구 자산이 증가한 반면에 현금 자산이 감소합니다. 그러나 비료를 농장에 살포하는 경우에는 비료 구매비용이 발생하지만, 나중에 작물을 수확하는 경우에 농작물의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익과 비용은 동시에 발생할 수 없으므로 이를 표로써 나타내면 아래와 같이 차변, 대변에 각각 4개의 요소가 발생합니다. 이들 8개의 요소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산, 부채, 자본 및 수익, 비용 등의 증가 혹은 감소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차 변	대 변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감소	자본의 증가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

ㄹ) 거래의 이중성

- ㉠ 복식부기에서는 거래의 기입을 차변, 대변의 양변에 기록합니다. 차변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면, 반드시 대변에도 동일한 금액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하고 거래의 대립관계라고도 합니다.
- ㉡ 예를 들면 농업경영주가 경운기 1대를 현금 1,500,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이 거래는 경운기라는 대농기구 자산이 1,500,000원 증가하였으며, 반면에 현금 자산 1,500,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복식부기에서 차변, 대변으로 구분하여 기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 대농기구(경운기)	1,500,000원	(대변) 현금	1,500,000원
----------------	------------	---------	------------

- ㉢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변에 대농기구 자산 1,500,000원이 증가하면, 대변에도 동일한 금액의 현금이 감소함을 알 수 있습니다.

ㄴ) 분개의 법칙

분개는 거래의 8가지 요소의 대립관계를 이용하여 차변, 대변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거래의 8가지 요소를 이용하여 분개를 하면 모두 15가지 종류가 됩니다. 분개의 종류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내용만 숙지하면 일반적인 전산회계 프로그램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

○월 ○일, 관리기 1대를 3,000,000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 지급
(차변) 대농기구 3,000,000원 (대변) 현금 3,000,000원

◎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증가

오늘 트랙터 1대를 30,000,000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외상 지급
(차변) 대농기구 30,000,000원 (대변) 외상매입금 30,000,000원

◎ 자산의 증가와 자본의 증가

경영주가 현금 5,000,000원을 자본금으로 출자
(차변) 현금 5,000,000원 (대변) 자본금 5,000,000원

◎ 자산의 증가와 수익의 발생

배추를 100통 수확하여 현금 500,000원에 판매
(차변) 현금 500,000원 (대변) 배추판매수익 500,000원

◎ 부채의 감소와 자산의 감소

농협에서 빌린 차입금 2,000,000원을 현금으로 갚음
(차변) 차입금 2,000,000원 (대변) 현금 2,000,000원

◎ 부채의 감소와 부채의 증가

농약 외상매입금 500,000원을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
(차변) 외상매입금 500,000원 (대변) 지급어음 500,000원

- ◎ 부채의 감소와 자본의 증가
 자본금 2,000,000원을 증자하고 농협 차입금을 상환
 (차변) 차입금 2,000,000원 (대변) 자본금 2,000,000원
- ◎ 부채의 감소와 수익의 발생
 채권자로부터 채무 200,000원을 면제 받음
 (차변) 차입금 200,000원 (대변) 채무면제이익 200,000원
- ◎ 자본의 감소와 자산의 감소
 경영주가 현금 1,000,000원을 자녀학비로 인출함
 (차변) 자본금 1,000,000원 (대변) 현금 1,000,000원
- ◎ 자본의 감소와 부채의 증가
 경영주가 자신의 차입금 1,000,000원을 농업경영의 차입금으로 옮김
 (차변) 자본금 1,000,000원 (대변) 차입금 1,000,000원
- ◎ 자본의 감소와 자본의 증가
 홍길동의 출자금 500,000원을 박문수의 출자금으로 옮김
 (차변) 자본금 500,000원 (대변) 자본금 500,000원
- ◎ 자본의 감소와 수익의 발생
 홍길동 사망으로 그의 출자금을 인수할 사람이 없어 잡수익으로 처리함
 (차변) 자본금 500,000원 (대변) 잡수익 500,000원
- ◎ 비용의 발생과 자산의 감소
 지급이자 2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함
 (차변) 지급이자 20,000원 (대변) 현금 20,000원
- ◎ 비용의 발생과 부채의 증가
 농약 50,000원 상당을 외상으로 구입하여 살포함
 (차변) 농약비 50,000원 (대변) 외상매입금 50,000원

◎ 비용의 발생과 자본의 증가

홍길동에게 지급해야 할 노임 중 500,000원을 출자금으로 전환함

(차변) 노임 500,000원 (대변) 자본금 500,000원

나) 계정

㉠ 계정의 의의

◎ 최근 농업부문에도 컴퓨터의 보급과 이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농업인이 전산화계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겪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계정과목에 대한 이해부족입니다.

◎ 계정과목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농업부기를 간편하게 작성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하나의 계산단위이며 이름입니다. 예를 들면, 시설채소 농가에서 살충제 1병을 5,000원에 구입하였다면 이를 농약비라는 계정과목으로 설정하고, 농약구입과 관련한 모든 비용은 농약비 계정에 정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후일 결산 시에 본인이 투입한 총농약비의 규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일반적으로 계정과목은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산 시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부를 작성하는 초기에 항목을 다양하게 구분해 두면 후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계정의 분류

◎ 계정은 크게 재무상태표 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으로 구분합니다. 재무상태표 계정은 자산, 부채, 자본 계정으로 구분하고 손익계산서 계정은 수익, 비용계정으로 구분합니다.

◎ 재무상태표 계정인 자산 계정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합니다. 유동자산 계정은 일반적으로 1년 이내에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현금, 당좌예금, 대부금, 외상매출금 등이 있으며 농업의 경우 소식물, 소동물, 소농기구, 미판매현물, 구입현물, 중간생산물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비유동자산 계정은 현금화하는데 1년 이상이 필요한 자산들로 토

지, 건물, 구축물, 시설장치, 기계장치, 운송기기, 비품 등과 대식물, 대동물, 대농기구계정 등이 있습니다.

◎ 부채 계정은 1년 이내에 상환이 필요한 유동부채와 1년 이상 상황이 이루어 지는 장기부채인 비유동부채로 나뉩니다. 유동부채로는 차입금, 외상매입금, 미지급금계정 등이 있고 비유동부채로는 장비구입 할부금이나 후계농대 출자금 상환 등이 있습니다.

◎ 자본 계정은 자본금, 잉여금, 순이익계정 등으로 구분합니다.

◎ 손익계산서 계정인 수익계정은 농산물 판매수익계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계정과목으로 구분하면 채소판매수익, 오이판매수익, 축산물판매수익 계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비용 계정은 농산물 생산에 직접 소요된 재료인 재료비 계정과 인력 조달을 위해 지불된 노무비, 그리고 기타 농장 운영에 필요한 전기료나 유류대와 같이 간접적으로 필요한 재료인 경비, 마지막으로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소요된 각종 포장비와 운송, 홍보비 등의 계정인 판매관리비(판관비) 계정이 있습니다.

이상의 계정과목은 예시입니다. 계정과목은 법인의 경영실정에 따라, 농업경영체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정과목은 부기를 작성하는 초기 연도에 한번 설정하면 변화 없이 계속 사용해야 하므로 초기 연도에 세심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 원장

원장이란 계정과목을 한 곳에 모아 놓은 장부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시설채소 농가가 농약비 지출에 관련한 모든 내용을 한 곳에 모아 놓으면 농약비의 지출내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농약비 원장이라고 합니다. 농약비 뿐만 아니라 모든 계정과목에 대한 원장을 작성하면, 모든 지출내역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ㅇ) 결산

● 결산의 의미

모든 경영체는 일정 회계기간을 마치면 경영과 관련한 장부를 마감하고 정리하여 재무상태(재산의 변동상태)와 경영성과를 알아보는 절차를 밟는데 이를 결산이라 합니다. 최근에는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어 있어 손쉽게 법인의 경영결산을 할 수 있습니다.

● 결산의 절차

결산의 절차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크게 예비절차와 본절차로 구분합니다. 예비절차는 시산표를 작성하는 업무로서 합계시산표와 잔액시산표가 있고, 이 둘을 합친 합계잔액시산표까지 마치는 일입니다.

결산의 본절차는 먼저 원장 및 각 계정의 오류를 수정하여 원장을 마감하는 일입니다. 먼저 손익계산서 계정을 마감하고, 다음으로 재무상태표 계정, 분개장, 각종 보조장부 순으로 마감합니다.

● 결산보고서 작성(재무제표)

결산이 완료되면 결산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일반적으로 결산보고서는 법인경영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손익계산서와 경영의 재산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재무상태표로 구분합니다. 결산보고서는 법인의 경영분석 혹은 경영진단을 위한 주요 기초자료이면서 향후 경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아하, 그렇군요!

손익계산서-재무상태표-합계시산표

- 손익계산서는 경영분석 혹은 경영진단에서 판매분석, 비용분석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비용분석에서 얻은 자료는 경영비 절감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재무상태표는 자산의 변동상태를 일목요연하게 표시하고 있으므로 재무상태표를 연도별로 비교하면 자산의 변동상태를 비교분석할 수 있으며 경영체의 안정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합계시산표는 원장 계정의 차변과 대변의 금액을 합계해서 작성하는 표이고, 잔액시산표는 각각 계정의 차변에 차변 잔액을, 대변에 대변 잔액을 모아서 작성한 표입니다. 이 둘을 하나의 표에 모아서 작성한 것이 합계잔액시산표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계정과목의 합계와 잔액을 나타낸 표이기 때문에 모든 계정과목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자료입니다.



Q & A

Q 영농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증빙을 못 갖추면 회계적으로 비용처리를 못하게 되나요?

A 법인세법상 접대비 외의 지출증빙은 3만원까지, 접대비의 경우 1만원까지 간이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적격증빙이란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을 말합니다.

간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또는 송금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실질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은 되나 조세협력의무를 다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소정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접대비의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쓰지 않은 경우 비용처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Q

현재 영농조합법인의 경영상태가 좋지 못합니다. 은행대출금 상환이 연체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못하여 법인대표 개인소유의 농지 및 법인소유 건물을 매각할 예정입니다. 그런 뒤에도 채무가 남을 경우, 법인이사들에게도 불이익이 돌아가나요? 이사들 외의 조합원은 없습니다.

A

이사들도 채무이행 책임이 있습니다. 일단, 법인대표 개인 재산을 경매 처분하였을 경우입니다. 법인대표가 조합을 위하여 개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그 재산이 경매 처분되어 소유권을 잃어버리면 법인대표는 조합원의 지위에서 자신이 부담하는 채무비율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을 다른 조합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받아야 합니다.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도 채무가 남을 경우, 조합원은 각자 자신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손실을 부담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단, 채무가 '15.7.7.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무한책임을 지므로 법인이사들의 개인재산으로 나머지 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Q & A

Q 영농조합법인을 탈퇴하고 지분에 대한 정산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일단 해당 영농조합법인의 정관을 자세히 살펴보고 조합원의 탈퇴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영농조합원 지위를 탈퇴하려면 정관에 정한 바에 따른 방법으로 탈퇴하게 되며, 탈퇴한 후 조합원의 지위에서 가지고 있던 지분에 대하여 정산하는 방법 또한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하게 됩니다.

만일 정관에 조합원의 탈퇴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716조의 임의탈퇴 규정 및 제719조의 지분의 계산 규정 등이 적용될 것입니다. 이 규정들에 의하면 조합원 지위를 임의로 탈퇴할 수는 있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할 수 없는 제한이 있습니다(민법 제716조). 그리고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정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의하여 하도록 하며, 조합원의 출자의 종류에 관계없이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고, 만일 탈퇴 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 후에 계산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민법 제719조).



Q

영농조합법인의 부동산 매각 시의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각할 법인 자산 부동산은 대략 자부담 1억 원, 지원금 3억 원으로 저온창고를 지어 12년 정도 사용한 건물입니다. 매각금액은 대략 2억2000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수는 대략 21명입니다.

A

영농조합법인은 세법상 영리법인으로 분류되고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식량작물재배업관련 소득은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며, 식량작물외의 작물재배업소득, 농산물 판매소득 등*은 일정부분 감면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상기 법령으로 정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소득은 법인세가 감면되지 않으며, 이에 따른 배당소득도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기타소득이라 함은 농업법인의 유형자산처분이익 등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법인세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매각은 유형자산처분으로 일반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여타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 세무사의 검토를 받으시고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2

인사-노무 분야

1) 근로계약서 작성

- ①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둡니다.
- ②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및 근로시간, 휴일, 휴가, 취업의 장소 및 종사하여야 할 업무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 ※ 18세 미만인 자와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 ③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해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④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은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조건은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미달할 수 없습니다. 노사 합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최저기준에 미달된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 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위약 예정의 금지, 전차금 상계의 금지, 강제 저금의

금지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ㄱ) 위약 예정의 금지 :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체결은 금지됩니다.
- ㄴ) 전차금 상계의 금지 : 취업 후 임금에서 변제할 것을 예정하여 금전을 대부하는 계약체결은 금지됩니다.
- ㄷ) 강제 저금의 금지 : 근로계약의 체결 또는 존속조건으로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체결은 금지됩니다.

2)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 일반 고용허가제와 일반 외국인 근로자 고용

① 내국인 구인노력

- ㄱ) 내국인의 고용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우선 고용지원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하여 구인노력(통상 2주일)을 해야 합니다.
- ㄴ)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경우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외국인 고용허용업종 및 고용 가능한 사업, 사업장이어야 함). 이때 고용지원센터는 사업주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알선하고, 사업주는 알선받은 외국인근로자 중 적격자를 선택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습니다.
- ㄷ) 근로계약 체결은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 서면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에는 임금·근로시간·휴일·주요 업무내용 등 근로조건 및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ㄹ)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사용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해당근로자에 대한 사증발급신청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 ※ 제출서류 : 사증발급신청신청서, 고용허가서 사본, 표준근로계약서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장관련 입증서류 사본, 신원보증서 등
- ㅁ) 외국인근로자는 재외공관에서 취업사증(E-9)을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한 뒤 취업교육(2박 3일)을 이수해야 사업장에서 근로할 수 있습니다.

나. 특례 고용허가제(외국국적 동포)

① 내국인 구인노력

외국 국적의 동포를 채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도 일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때와 같이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구인노력(3~7일)을 해야 합니다.

②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신청 및 발급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경우 동포를 채용하고자 하는 사용주는 고용지원센터에 특례 고용가능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주는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범위 내에서 외국국적 동포(노동부에 구직등록한 자)의 고용이 가능합니다.

③ 근로계약 체결

ㄱ) 사업주와 외국국적 동포는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받거나 자율 구직(구인)이 가능합니다.

※ 단, 민간 알선기관의 유료 직업소개는 금지되며, 사업주는 노동부에서 발급한 구직등록 필증을 받은 동포 중에서만 고용하여야 합니다.

ㄴ) 사업주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서면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임금·근로시간·휴일·주요 업무내용 등 근로조건 및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③ 근로개시 신고 및 취업신고

사업주는 동포가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근로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동포는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에 취업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

_____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_____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2. 근무장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__시__분부터 __시__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__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__요일
6. 임금
 - 월(일, 시간)급 : _____원
 - 상여금 : 있음 () _____원, 없음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없음 ()
 - _____원, _____원
 - _____원, _____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_____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9.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표준근로계약서

_____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_____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 개시일”만 기재
2. 근무장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__시__분부터 __시__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__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__요일
6. 임금
 - 월(일, 시간)급 : _____ 원
 - 상여금 : 있음 () _____ 원, 없음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없음 ()
 . _____ 원, _____ 원
 . _____ 원, _____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_____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가족관계증명서 및 동의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출 여부: _____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구비 여부 : _____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제67조 이행)
10. 기타
 -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취직인허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 친권자(후견인) 인적사항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연소근로자와의 관계 :

○ 연소근로자 인적사항

성 명 : (만 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 사업장 개요

회 사 명 :
회사주소 :
대 표 자 :
회사전화 :

본인은 위 연소근로자 _____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친권자(후견인) (인)

첨 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표준근로계약서 Standard Labor Contract

(앞쪽)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The following parties to the contract agree to fully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stated hereinafter :

사업주 Employer	업체명 Name of the enterprise	전화번호 Phone number
	소재지 Location of the enterprise	
	성명 Name of the employer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Identification number
근로자 Worker	성명 Name of the worker	생년월일 Birthdate
	본국주소 Address(Home Country)	
1. 근로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수습기간: [] 활용(입국일부터 [] 1개월 [] 2개월 [] 3개월) [] 미활용 ※ 최초 입국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기산일은 입국일로 변경됨	
1. Term of Labor contract	from (YY/MM/DD) to (YY/MM/DD) - Probation period: [] Included (For [] 1 month [] 2 months [] 3 months from entry date) [] Not included ※ The labor contract enters into effect on the date of entry.	
2. 취업 장소		
2. Place of employment		
3. 업무내용	- 업종: - 사업내용: - 직무내용:	
3. Description of work	- Industry: - Business description: - Job description:	
4. 근무시간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시 분 ~ 시 분 - 1일 평균 시간의 근로시간: 시간(사업장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교대제([] 2조2교대, [] 3조3교대, [] 4조3교대, [] 기타) <농업, 축산업, 어업> - 월 ()시간	※ 가사사용인, 개인간병인, 농업, 축산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 ※ An employer of workers in domestic help, nursing, agriculture and livestock, and fishery can omit the working hours.
4. Working hours	<Manufacturing, construction and service sectors> from () to () - average daily over time: hours (changeable depending on the condition of a company) - shift system ([] 2groups 2shifts, [] 3groups 3shifts, [] 4groups 3shifts, [] etc.) <Agriculture & livestock and fishery sectors> - () hours per month	※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농업, 축산, 양잠, 수산 사업의 경우 같은 법에 따른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받지 않음.

(뒤쪽)

5. 휴게시간	1일 분	* In pursuant to the Article 63 of the Labor Standards Act, working hours, recess hours, off-days are not applied to agriculture, forestry, live-stock breeding, silk-raising farming and marine product businesses.
5. Recess hours	()minutes per day	
6. 휴일	[]일요일 []공휴일 []매주 토요일 []기타()	
6. Holidays	[]Sunday []legal holiday []every Saturday []every other Saturday []etc.()	
7. 임금	1) 월 통상임금 ()원 - 기본급[월(시간, 일, 주)급] ()원 - 고정적 수당: ()수당: ()원, ()수당: ()원 * 수습기간 중 임금 ()원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7. Payment	1) Monthly Normal wages - Monthly (hourly, daily, or weekly) wage ()won - Fixed Allowances: ()allowances: ()won, ()allowances: ()won * Probation period - Monthly wage ()won 2) Additional pay rate applied to overtime, night shift or holiday work.	
8. 임금지급일	매월/매주 ()일/요일. 다만,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한다.	
8. Payment date	() of every month/every week. If the payment date falls on a holiday, payment will be made on the day before the holiday.	
9. 지급방법	임금 및 수당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하거나 "근로자"의 명의로 된 예금통장에 입금한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명의로 된 예금통장, 도장을 관리해서는 안 된다.	
9. Payment methods	Wages and benefits will be paid to the worker or deposited to the bank account of the worker. The employer will not retain the bank book and the seal of the worker.	
10. 숙식제공	1) 숙박시설 - 숙박시설 제공 여부: []제공 []미제공 - 숙박비용 근로자 부담 여부: []부담 []미부담 2) 식사 제공 - 식사 제공 여부: 제공([]조식, []중식, []석식) []미제공 - 식사비용 근로자 부담 여부: []부담 []미부담 * 숙식 제공의 범위와 근로자 부담 비용의 수준은 입국 후 사업주와 근로자 간 협의에 따라 별도로 결정	
10. Room and Board	1) Room - Provided by the employer: []Yes, []No - Cost will be shared by the worker: []Yes, []No 2) Board - Provided by the employer: Yes([]breakfast, []lunch, []dinner), []No - Cost will be shared by the worker: []Yes, []No * The scope of the room and board and the amount of the cost to be borne by the worker will be decided by mutual consultation between the employer and the worker after worker's arrival.	
11.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사서비스업 및 개인간병인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휴일·휴가, 그 밖에 모든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와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농림, 축산, 양잠, 수산 사업의 경우 같은 법에 따른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11. Other matters not regulated in this contract will follow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 Act. *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abor contract for workers in domestic help and nursing can be freely decided through the agreement between an employer and a worker. * In pursuant to the Article 63 of the Labor Standards Act, working hours, recess hours, off-days are not applied to agriculture, forestry, live-stock breeding, silk-raising farming and marine product businesses.		
년 월 일		
(YY/MM/DD)		
사업주: Employer:		(서명 또는 인) (signature)
근로자: Worker:		(서명 또는 인) (signature)

3) 임금·최저임금

가. 임금 지급의 방법

-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 ② 임금 전부가 통화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ㄱ)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 ㄴ)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및 근로소득세 등은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 ㄷ) 임금을 근로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해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 ③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수당 등은 예외로 합니다.

나. 최저임금의 준수

- ①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ㄱ)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 감액을 적용해야 합니다(단,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불가).
 - ㄴ) 최저임금액은 매년 달라지므로 해당 연도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② 근로계약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계약한 경우 임금액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봅니다.
 - ※ 최저임금에는 기본급 및 고정수당이 포함되고, 연장근로가산수당 및 상여금, 숙박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 퇴직급여제도

가. 퇴직급여 제도

① 사업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하기 전이라도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했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②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 적용이 제외됩니다.

나. 퇴직연금 제도

①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개인퇴직계좌(IRA)가 있습니다.

ㄱ)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사외에 적립된 퇴직금을 사업주가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운용하는 대신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사외에 적립된 퇴직금을 근로자가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운용하므로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연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기존의 퇴직금제도보다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유리합니다.

ㄱ)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 부담금 납입액이 손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절감효과가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유리합니다.

ㄴ) 직장을 옮겨도 계속 적립이 가능하고 기업이 도산해도 적립된 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 ③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려는 사업주는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를 선정 후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 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5) 근로시간·휴게·휴일

가. 전체 근로자에 대한 적용 기준

- ① 근로시간: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그러나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했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ㄱ) 휴게: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ㄴ) 휴일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 ②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주일에 40시간,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농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 ③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도중에 일정한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4시간 근로하는 경우에는 30분, 8시간 근로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 단, 농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휴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 ④ 사업주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ㄱ)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동의해야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휴일에 대해

서 명확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 나) 유급휴일이 반드시 주말일 필요는 없으며, 유급휴일을 평일에 주더라도 근로 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 ※ 단, 농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⑤ 사업주는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 임금의 50%를 가산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가)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및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 나)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 다) 휴일근로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주어진 유급휴일에 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 ※ 단, 농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리) 야간근로(22:00~06:00)에 대해서는 다른 업종의 근로자와 같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미) 근로자에게 기본임금만 받고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장 및 휴일근로를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해야 합니다.

⑥ 근로시간이란 근로를 시작한 시업시각부터 근로를 끝낸 종업시각까지의 총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시간으로 식사시간이나 낮잠을 자는 시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록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11시간을 일한다고 하더라도 일하는 도중에 참 먹는 시간(오전 30분, 오후 30분)과 점심 먹는 시간(1시간), 낮잠 자는 시간(1시간)이 있다면, 동 시간들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8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농업분야의 경우 휴게시간이 적용되지 않아 휴게를 부여치 않을 수도 있으나 사실상 휴게시간(점심시간, 참시간 등)이 부여되는 것이 통상인 바, 해당 시간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 연장근로가산수당 기준

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참고하여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해 명확히 정하시기 바랍니다. 농림 사업이 아닌 보통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대부분 연장근로에 대한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하지만, 농림 사업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특례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특례규정이 연장근로가산수당의 지급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 계약시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주기로 결정했다면 근로기준법의 특례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연장근로에 대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적으로 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 주요 내용 비교]

구분	농업	다른 업종
근로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한 없음 	전액
휴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일 8시간, 1주 40시간만 근로 가능 1주에 12시간까지만 근로시간 연장 가능
휴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근로시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휴게시간 부여
연소자의 근로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세 미만자는 야간에 근로할 수 없음(노동부장관 인가 받으면 근로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회 이상의 유급휴일 부여
여성의 근로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세 이상의 여성을 야간에 근로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세 이상 18세 미만자는 1일 7시간, 1주 40시간만 근로 가능 18세 미만 자는 야간 및 휴일에 근로할 수 없음(노동부장관 인가 받으면 근로가능)
임산부의 근로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산부는 야간에 근로할 수 없음(노동부장관 인가 받으면 근로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산부는 야간 및 휴일에 근로할 수 없음(노동부장관 인가 받으면 근로가능)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시간외 근로는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지 못함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시간·휴게·휴일 외의 노동 관계 법령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 	

6) 4대 보험

가. 산재보험

- ① 농림사업을 하는 법인사업주 및 5명 이상 사업장의 개인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②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 ㄱ)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도 가입대상입니다.
 - ㄴ) 농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가입대상이 아니더라도 신청에 의해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 ㄷ)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사업주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③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산재보험료를 곱한 금액을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 ㄱ) 사업주는 산재보험료를 근로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됩니다.
 - ※ 농업 산재보험료율 : 2.6%(매년 고시에 따라 변동가능)
 - ㄴ) 산재보험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전년도 1월 1일부터의 산재보험료를 징수하며, 미지급된 보험료에 대해 매달 12/1000를 가산금으로 부과합니다.
- ④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근로자 스스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위해 사업주에게 산재보상처리를 부탁할 필요는 없습니다.
 - ※ '최초요양신청서'에는 사업주의 날인이 필요하지만,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재해 근로자(또는 유족)가 단독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⑤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사업장의 근로자라 할지라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해당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보험급여의 1/2을 징수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 보험(연금) 미가입시 불이익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및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가입대상이었던 기간 동안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료 및 가산금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과태료 및 벌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최대 300만원
건강보험 : 최대 100만원
국민연금 :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연체료 및 가산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연체된 보험료의 12/1000을 매월 부과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 연체된 보험료의 3~9%를 연체료로 부과
- 근로자와 사업자는 각각 표준소득월액의 4.5%를 국민연금에 납부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미가입 사업장은 국민연금법 제 4조 제 3항에 의해 직권가입조치 되거나 같은 법 제29조 제1호에 의해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 연체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매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연체기간이 증가됨에 따라 최대 9%의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나. 고용보험

- ① 농림사업을 하는 법인사업주 및 4인 초과 사업장의 개인사업주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1호)
- ②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 ㄱ) 외국인 근로자도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ㄴ) 농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ㄷ) 단,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는 가입대상이 아니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 개발 사업은 적용됩니다.
- ③ 근로자와 사업자는 각각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를 곱한 금액을 고용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④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급여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보험급여는 사업주가 신청하고,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등의 보험급여는 근로자가 신청합니다.
- ⑤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가산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등을 지급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 체납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매월 12/1000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다. 건강보험

- ①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포함)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 ②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도 가입대상이며, 근로자가 건강보험 가입을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③ 근로자와 사업자는 각각 보수월액의 6.12%(각 3.06%)를 건강보험료로, 건강보험료의 6.55%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단, 매년 변동가능).
- ④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미납입한 건강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연체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매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연체기간이 증가됨에 따라 최대 9%의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라. 국민연금

- ①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포함)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8조).

- ②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과 마찬가지로 체류자격, 국적에 따라 적용여부가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을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Q & A (인사/노무분야)

Q 농업분야의 근로계약 체결 시 다른 분야와 달리 유의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A 농업분야 종사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그 외 최저임금, 연차유급휴가, 야간근로가산임금, 퇴직금 등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점을 유의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Q 조합법인의 조합원인 경우 영농조합법인의 경영상태가 좋지 못하여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책임성이 궁금합니다. 상법상 회사와 달리, 출자금 이외에도 영농조합의 전체 부채에 대하여 조합원들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무한책임이 맞나요?

A 과거에는 무한책임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15.1.6개정, 15.7.7시행)」으로 현재는 조합원이 출자액 한도의 유한책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상기의 개정 규정은 채권자 보호를 위해 법 시행일 이후인 2015년 7월 7일 이후 발생한 채무부터 적용됩니다.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무한책임을 지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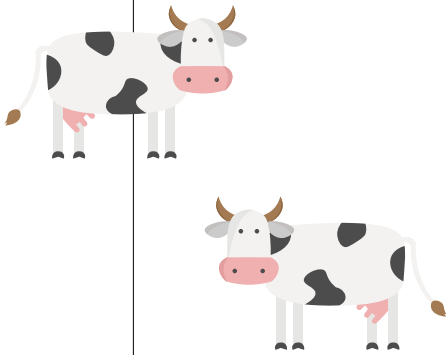
Q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알고 보니 불법체류자인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경우「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문의하여 불법체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불법체류 근로자’라 함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 없이 국내에서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말합니다. 비록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면 관련 국내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Q & A (인사/노무분야)

Q 농번기에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30명을 한꺼번에 고용했습니다. 정부에서 인정한 직업소개소라고 해서 믿고 이용했는데, 막상 근로자들과 분쟁이 일어나니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근로자들과 생긴 분쟁에 대해 직업소개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A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근로자를 소개받았다 하더라도 각각의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근로자를 채용하기로 했다면 서면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 나중에 생길지도 모르는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임금의 지급도 직업소개소를 통하지 말고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근로자를 고용한다고 하더라도 근로 기준법상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

농업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 아버지 밑으로 신고 들어가서 4대 보험이 필요없습니다. 여기서 4대 보험 들면 안 내도 되는 보험료를 내는 것 같은데, 4대 보험을 안 들면 안 될까요?

A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상의 가입대상으로 인정되면 당연히 보험(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법에 의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연금) 미가입시 불이익〉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및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가입대상이었던 기간 동안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료 및 가산금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과태료 및 벌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최대 300만원

건강보험 : 최대 100만원

국민연금 :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연체료 및 가산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연체된 보험료의 12/1000를 매월 부과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 연체된 보험료의 3~9%를 연체료로 부과

3

법무 분야

1) 법인 경영자가 꼭 알아야 할 법무 정보

1. 영농조합법인

가. 영농조합법인의 재산관리

- ①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민법의 조합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 ② 조합이 상호출자와 공동사업이란 목적으로 구성되는 단체임을 감안할 때 상호 출자한 재산은 공동사업을 위한 목적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704조에는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즉, 조합의 재산은 공동소유관계이기 때문에 조합원 전원의 동의 없이는 일정한 지분이라도 처분할 수 없습니다.
- ③ 예를 들어 공유 재산의 경우에는 공유자간 지분 관계가 표시되고 지분 소유자가 자신의 지분만큼 처분할 수 있지만 합유 재산은 지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나. 영농조합법인의 출자

- ①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는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비농업인은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②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현금 및 그 밖의 현물로 출자할 수 있으며, 출자한도는 조합원이나 준조합원도 제한이 없습니다. 농지가 아닌 토지를 현물출자할 수 있으며, 등기원인을 현물출자로 하여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도 가능합니다.
- ③ 한편 영농조합법인이 농업생산자단체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농업생산자단체는 농업협동조합·산림조합 및 협연초생산협동조합입니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4항〕

다.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채무

- ① 과거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채권·채무에 대한 책임은 무한책임이었으나, '15년 7월 7일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시행으로 현재는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 한도 내에서 유한책임을 지게됩니다.
- ② 다만, 채권자 보호를 위해 '15년 7월 7일 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무한책임을 집니다. 또한 이익과 손실 등의 책임성에 대해 별도의 약정서가 존재할 경우에는 정관과 해당 약정에 따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하, 그렇군요!

재산의 소유 형태는?

- 합유 : 법률규정이나 계약에 의해서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공유와 총유의 중간 개념으로 공동소유관계(민법 제271조 1항)를 의미합니다.
- 민법에서는 공동소유의 유형을 공유, 합유, 총유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공유는 다수인이 공통의 목적 없이 2인 이상이 소유하는 것, 합유는 여러 사람이 공통된 사업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것, 총유는 법인 사단이 물건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구분	공유	합유	총유
의미	지분에 의해 다수가 공동으로 소유	다수의 조합체로 소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 소유
성질	소유권의 양적 분할	민법상 전형계약 중 조합	법인 아닌 사단
지분	공유지분	합유	지분 없음
지분의 처분	자유	전원의 동의	없음
분할의 청구	자유이나 금지특약 가능	조합 존속기간 중 불가	불가
보존등기	각자 단독	각자 단독	사원총회 결의
처분, 변경	전원의 동의	전원의 동의	사원총회 결의
사용, 수익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 전부	지분 비율 조합계약으로 합유물 전부	정관 기타 규약에 따라
종료	물건의 양도, 분할	조합의 해산, 물건의 양도	총유물 양도, 사원의 지위 상실

2. 농업회사법인

가. 농업회사법인의 경영관리

- ①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써 농업의 부가 가치를 높이며, 노동력의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리를 꾀하기 위해 설립하는 법인입니다.
- ②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경영체의 특성을 갖고 있는 영리법인으로서 농업경영체법 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상법상 회사의 관련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농지 및 초지를 현물 출자함에 따른 소득이 생기더라도 양도세 면제 혜택이 있지만 출자지분을 3년 내 양도하게 되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나. 농업회사법인의 출자

- ①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임원은 이사와 감사 각 1인 이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자본금이 10억 원 이하일 경우 감사는 선택사항입니다. 법인 설립 신청 시 총 출자액이 80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8억 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비농업인의 출자지분 한도로 정하고 있지만, 이 외에는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90%를 넘길 수 없습니다.
- ② 사업 범위는 농작물 생산 및 유통·가공·판매 등입니다.

다. 농업회사법인의 채권·채무

농업회사법인은 4종(주식회사·유한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 회사의 유형에 따라 채권·채무에 대한 책임 규정이 다릅니다. 다만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농업법인의 조직 변경·합병·분할

1. 영농조합법인의 조직변경

영농조합법인은 총 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농업회사법인 중 합병, 합자, 유한, 주식회사의 어느 형태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총회소집공고 안내 (7일 전)	총회의 일치결의에 의하여야 함으로 전조합원 사전확인 필요
임시총회	조직변경 결의(전원일치)
	농업회사법인 정관의 승인 ① 합자회사로 조직 변경 : 조합원의 일부를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야 함 ② 유한회사로 조직 변경 : 조합원 전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여야 함 ③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 : 주식 발행가액의 총액은 조합법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순재산액이 자본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에 따른 결의 당시의 조합원이 연대하여 그 부족액을 지급하여야 함 ※ 규정에 따라 유한책임사원 또는 주주가 된 자는 법제18조제8항에 따라, 본점 등기 전에 발생한 영농조합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등기 후 2년까지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으로서 책임을 지야함
	임원의 선임
채권자 보호절차	신문 공고(1개월 이상),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별도 통지
조직변경 법원등기	본점 2주 이내, 지점 3주 이내
	영농조합법인의 해산등기 농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
사업자등록신청	법인등기부 등본 발급 이후
	사업자등록
	부동산 상호변경등기
영농조합법인폐업신청	농업회사법인 사업자등록 발급 이후 시

※ 법률에 의한 조직변경으로 사업연도는 영농조합사업연도가 계속되며, 청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영농조합법인의 합병

영농조합법인은 총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후 총 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합병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총회소집공고 안내 (7일 전)	총회의 일치결의에 의하여야 함으로 전조합원 사전확인 필요
총회	합병계약서 작성 및 합병계약서 승인(총회결의)
	합병의 조건 및 신설조합의 정관승인
	임원의 선임
채권자 보호절차	신문공고(1개월 이상),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별도 통지
합병총회(신설합병 창립총회)	흡수합병의 합병총회에서 합병보고, 신설합병 창립총회개최
합병등기	본점 2주 이내, 지점 3주 이내
	흡수합병: 변경등기
	피합병 조합: 해산등기
	신설합병: 설립등기

3. 영농조합법인의 분할

영농조합법인은 총 분할계약서를 작성 후 총 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분할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총회소집공고 안내(7일 전)	총회의 일치결의에 의하여야 함으로 전조합원 사전확인 필요
총회	분할결의
	분할조합의 정관승인
채권자 보호절차	신문공고(1개월 이상),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별도 통지
분할등기	본점 소재지 2주 이내, 지점 소재지 3주 이내
	분할법인 사업자등록신청(등기 이후)
	등기등록을 요하는 자산의 분할 법인으로 등기이전

※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의 상환 및 담보제공 등의 절차를 이행

4. 농업회사법인의 조직변경 및 분할, 합병

농업회사법인의 조직변경과 분할, 합병에 관한 사항은 상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는 영농조합법인의 조직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제18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직변경)
 - ①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형태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3. 유한회사
 4. 주식회사
 - ② 제1항 제2호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일부를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야 한다.
 - ③ 제1항 제3호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전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제4호에 따라 조직을 변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금액의 총액은 조합법인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순재산액이 자본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결의 당시의 조합원이 연대하여 그 부족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⑤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제1항에 따라 조직변경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 내에, 조합 채권자에 대하여 조직변경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상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공고 내용을 알려야 한다.
 - ⑥ 채권자가 제5항에 따른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조직변경의 결의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아하, 그렇군요!

- ⑦ 채권자가 제5항의 기간 내에 조직변경의 결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직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⑧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제1항의 조직변경을 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해산등기를,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은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⑨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한책임사원 또는 주주가 된 자는 제8항에 따른 본점 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등기 후 2년이 될 때까지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서 책임을 진다.

Q & A (법무분야)

Q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다가 조합원 5명 중 2명이 탈퇴선언을 하고 출자금을 전액 반환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탈퇴조합원들에게 그들이 출자한 금액 전부를 반환하여야 하는지요? 지금 조합에는 재산이 전혀 없고 오히려 부채가 있는 상태입니다.

A 출자금 반환 요구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영농조합은 민법상 조합의 형태를 가지는 단체로서 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조합원과 남은 조합원들 사이의 정산은 출자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 상태를 평가하여 지분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탈퇴 당시에 영농조합에 적극재산이 전혀 없이 소극재산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탈퇴 조합원은 민법 제711조 규정에 의하여 소극재산을 부담하면서 탈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 민법조항은 조합의 손익분배의 비율을 규정하면서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하고,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Q

저희 영농조합은 18명의 조합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합장편 조합원들과 다른 조합원들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자 조합장편 조합원 15명이 결의하여 일방적으로 다른 조합원들 3명을 제명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이에 대항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영농조합은 정관에 의하여 운영되는데, 정관에 조합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그에 따르며 그것이 없으면 민법의 조합규정에 의하게 됩니다.

민법의 조합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제명관계를 살펴보면 민법 제718조에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단순한 감정의 골에 의하여 제명한 경우라면 당연히 그 제명은 무효일 것입니다. 한편, 조합원에 대한 제명은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결정한다고 하는 점으로 미루어 18명의 조합원들 중 1명을 제명할 경우 다른 17명의 일치가 있어야 합니다.

한 번에 3명의 조합원을 제명하는 경우는 제명결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의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합에 대하여 제명 무효를 통보하고 이에 불응 시 법원에 조합원제명결의 무효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농업법인의 해산과 청산

1

영농조합법인

농업법인은 조합원과의 갈등, 영업적자 지속, 경영의 부실이 장기화 될 경우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해산을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통해 설립요건을 위배하였거나,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행정청은 법원에 해당 법인의 해산명령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을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농업법인의 해산 및 청산 절차를 거치어 법인의 권리·의무를 최종적으로 소멸시켜야 합니다.

1) 농업법인의 해산절차

영농조합법인의 해산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는 게 일반적입니다.

① 해산 결의

조합원 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합니다.

② 청산인 선임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은 대표이사가 합니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③ 청산인의 직무

- 청산인은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

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청산인은 취임 후 3주간 이내 해산 등기와 청산인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④ 청산재산의 처리

조합의 재산은 채무를 완제하고 잔여가 있는 경우 조합원과 준조합원에게 분배합니다.

2) 청산의 법적 요건

- ① 청산이란, 해산한 법인이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 청산법인은 해산된 법인의 재산정리를 위한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을 갖습니다(민법 제81조).
- ② 법인이 해산하게 되면 이사가 청산인이 됩니다(제82조). 대부분 법인의 대표이사가 청산인이 됩니다. 이사 가운데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제83조).
- ③ 청산인은 청산법인의 집행기관으로서 계속 중인 사무를 끝내게 하고, 채권을 회수하고 채무를 변제하며 그 결과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정관에 지정된 사람에게 주며, 정관에 지정된 자가 없거나 이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그 법인의 목적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처분해야 합니다. 그것도 없거나 이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국고에 귀속시킵니다(제80조). 이 청산의 완료에 의하여 법인은 소멸하게 됩니다(제81조).
- ④ 만일 법인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합니다(제93조 1항). 영농조합법인을 해산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업무가 종료되면 청산등기를 해야 합니다.

2

농업회사법인

사업의 중단 등의 사유로 법인을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농업회사법인의 해산 및 청산 절차를 거치어 법인의 권리·의무를 최종적으로 소멸시켜야 합니다.

1) 해산 요건

농업회사법인 해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존립기간의 만료
- ② 합병
- ③ 파산
- ④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 ⑤ 주주총회의 결의

2) 해산 및 청산 절차

- ① 농업회사법인의 해산 결의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그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으로 결정합니다.
- ②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대표이사는 주주에게 통지하고,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③ 해산 및 청산을 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해산결의서를 공증받아 이를 해산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등기소에 해산등기를 신청합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주총회특별결의로 해산 결의 및 청산인 선임 → 해산 및 청산인 선임등기 채권자보호절차(공고할 신문 공고) → 주주총회결의(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 승인) → 법원 제출 → 신문 공고(채권자보호절차) 2개월 후 청산종결 등기

3) 구비 서류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등기가 필요합니다.

- ① 법인등기부등본 1부
- ② 법인인감증명서 1부
- ③ 법인인감 도장
- ④ 주주 주식수 과반수 이상 주주의 개인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도장
- ⑤ 이사, 감사 막도장
- ⑥ 주주명부 1부
- ⑦ 청산으로 인하여 사임하는 이사
 - 사임서 각1부(개인인감 날인)
 - 인감증명서 각1부
- ⑧ 청산인으로 선임된 청산인
 - 취임승낙서 1부(개인인감 날인)
 - 인감신고서 1부(개인인감 날인)
 - 인감증명서 각1부
 - 주민등록등본 각1부
- ⑨ 청산인이 다수인 경우
 - 청산인 과반수 이상 청산인의 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도장

아하, 그렇군요!

주식회사 청산 절차 참고

● 주의할 점

주식회사에서는 대주주의 횡포를 막기 위해 법정청산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산을 위해서는 청산회사가 설립되는데 이 회사는 오로지 청산 관련 업무만 맡게 됩니다. 기업이 해산한 후 재산관계에 따른 민감한 사안이 많기 때문에 완전한 소멸까지 엄격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청산인이 선임되면 그 취임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① 해산의 사유와 그 연월일 ② 청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신고해야 합니다.
- 청산인은 취임한 후 지체없이 회사의 재산상황을 조사하여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작성하고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채권자에게 채권을 신고할 것과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으로 3회 이상 신문에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각 채권의 신고를 최고하여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회사에 채권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여도 반드시 공고해야 합니다.

3

폐업 신고

1) 폐업 시의 세무종결 절차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하는 등 각종 신고를 하였듯이 사업을 그만 두는 경우에도 그 종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간과할 경우 세금 폭탄을 맞는거나 그 밖의 커다란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폐업 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으십시오.

- ① 사업을 폐업하면서 지체 없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된 폐업신고서 1부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등과 함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폐업신고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 ②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동시에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법적 신고 기간은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는 폐업년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③ 폐업 사업장에 대한 소득세를 조속히 종결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소득세 수시 부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동일함).

2)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절차

- ① 폐업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1.1 또는 7.1)로부터 폐업일까지입니다.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이 기간의 영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절차를 이행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내면 됩니다.

② 세금을 제때 못낼 때는 가산금이 붙습니다. 정부로부터 세금고지서를 받고 납부기한 내 세금을 내지 못하면 5%의 가산금이 붙게 되며 그 후에도 계속 세금을 못 내면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60개월까지 계속 붙어 총 72%가 될 때까지 가산금이 붙어나게 됩니다. 최고금액은 가산금과 증가산금을 합쳐 체납세금의 77%가 됩니다(다만, 증가산금은 50만원 미만의 세금에는 붙지 않습니다).

③ 세무관서에서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 세금납부를 독촉하고 독촉장을 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한 재산을 공매 등에 의하여 처분하고 세금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3)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신청

세금을 내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유는 구체적인 첨부서류를 제출해 증빙해야 합니다.

① 납부기한 연장 가능 사유

- 천재지변의 경우
- 화재·재해·도난의 경우
- 납세자 또는 동거가적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한 경우
- 사업의 심각한 손해·사업상 중대위기의 경우
- 정상적으로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서류가 압수된 경우
- 경제적 사정 등으로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징수유예의 사유

-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손실을 받았을 때

- 사업이 중대한 위기 또는 현저한 손실을 입었을 때
-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장기치료를 요할 때

Q & A (해산청산)

Q 조합원과의 갈등으로 영농조합법인을 해산하고자 합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산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청산업무는 총 조합원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고 또는 그들이 선임한 대표자(청산인)가 청산 사무를 집행하게 됩니다. 청산인은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3주 내에 이를 등기하고, 관할 시·군·구청에 그 사실을 신고합니다. 또한 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배분합니다. 해산 및 청산을 함에 있어서, 각 조합원들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조합의 대표자가 해산결의서를 공증받도록 하고, 이를 해산 등기 신청서에 첨부하여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Q

농업법인을 설립한 지 5년이 지났는데 더 이상 운영이 힘든 상황입니다. 해산을 하려 하는데 부채가 현재 재산보다 많습니다. 파산 신청을 해야 할지, 일단 폐업신고를 한 뒤 채권자들을 설득하라는 조언도 있어 고민입니다.

A

법인의 소멸은 법인등기부상 청산종결이 이루어짐으로써 끝나게 됩니다. 법인의 부채가 재산보다 많아 변제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인 채권자의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부채를 남겨두고 소멸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 법인의 경우에는 파산 신청을 해야 하고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가 결정되어 나머지 부채가 사라진 뒤에야 청산등기가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파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위한 대리인 선임비용, 법원에납금 비용 등이 필요합니다. 파산 신청 법인으로는 다소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기업법인의 경우, 정상적인 파산 절차를 밟지 않고 폐업만을 하고 법인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폐업은 법인 소멸이 아니라 단순히 영업활동을 중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에게 큰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법률 전문가에게 반드시 자문을 받아 진행하길 권고 드립니다.

Q & A (해산청산)

Q 부친이 위탁영농법인을 설립하시고 2년 후 돌아가셨습니다. 본인이 법인을 승계받으면서 구성원을 5명(가족)으로 변경했습니다. 창고부지는 대지 150평에 창고 60평, 2층 주택 및 관리사가 30평 정도 되는데 명의를 변경하려고 보니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냥 나왔습니다. 그래도 좋은지 아니면 처분하는 것이 좋은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사업실적이 미미해 지난해 폐업신고를 하고 현재 법인등록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A 귀 영농조합은 폐업신고를 했지만, 조합의 해산-청산 절차를 거쳐 청산등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조합의 실체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조합의 재산을 계속 소유할지, 분배할지는 당해 조합원들이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조합원들이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고, 가족들 사이에 조합의 운영, 존속 등에 관하여 이견이 없는 한 굳이 비용을 들여 개인소유로 명의를 바꿀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합원 개개인들에 관한 채권채무 관계가 조합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조합원 개개인이 채무를 지고 있을 경우, 채권자가 조합원의 조합지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등록번호
③ 법인명	④ 전화번호
⑤ 대표자성명	⑥ 전자우편주소
⑦ 소재지	
⑧ 업태	⑨ 종목
⑩ 사업연도	⑪ 수시부과기간

⑬ 법인구분 1. 내국 2. 외국 3. 외투(비율 %)	⑭ 조정구분 1. 외부 2. 자기																																										
⑮ 종류별구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td> <td style="width: 10%;">중소기업</td>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일반기업</td> <td style="width: 10%;">당첨의과세</td> </tr> <tr> <td></td> <td></td> <td>중견기업</td> <td>신중출자제한기업</td> <td>그외기업</td> <td></td> </tr> <tr> <td>영업인</td> <td>상장법인</td> <td>11</td> <td>71</td> <td>81</td> <td>91</td> </tr> <tr> <td></td> <td>코스닥상장법인</td> <td>21</td> <td>72</td> <td>82</td> <td>92</td> </tr> <tr> <td></td> <td>기타법인</td> <td>30</td> <td>73</td> <td>83</td> <td>93</td> </tr> <tr> <td>비영업인</td> <td></td> <td>60</td> <td>74</td> <td>84</td> <td>94</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50</td> </tr> </table>		중소기업	일반기업			당첨의과세			중견기업	신중출자제한기업	그외기업		영업인	상장법인	11	71	81	91		코스닥상장법인	21	72	82	92		기타법인	30	73	83	93	비영업인		60	74	84	94						50	⑯ 외부감사대상 1. 여 2. 부
	중소기업	일반기업			당첨의과세																																						
		중견기업	신중출자제한기업	그외기업																																							
영업인	상장법인	11	71	81	91																																						
	코스닥상장법인	21	72	82	92																																						
	기타법인	30	73	83	93																																						
비영업인		60	74	84	94																																						
					50																																						
⑰ 신고구분 1. 정기신고 2. 수정신고(가.서면분서, 나.기타) 3. 기한후 신고 4. 중도폐업신고 5. 경정청구																																											
⑱ 법인유형별구분 코드	⑲ 결산확정일																																										
⑳ 신고일	㉑ 납부일																																										
㉒ 신고기한 연장승인 1. 신청일	2. 연장기한																																										

구분	여	부	구분	여	부
㉓ 주식변동	1	2	㉔ 장부전산화	1	2
㉕ 사업연도의제	1	2	㉖ 결손금소급공제 법인세환급신청	1	2
㉗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신고서 제출	1	2	㉘ 재고자산평가가방법신고서 제출	1	2
㉙ 기능통화 채택 재무제표 작성	1	2	㉚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		
㉛ 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	1	2	㉜ 국제회계기준(K-IFRS)적용	1	2
㉝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 신청	1	2	㉞ 감가상각방법변경승인 신청	1	2
㉟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㊱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1	2

구분	법인세			
	법인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
㉓ 수입금액액	()			
㉔ 과세표준액				
㉕ 산출세액				
㉖ 총부담세액				
㉗ 기납부세액				
㉘ 차감납부할세액				
㉙ 분납할세액				
㉚ 차감납부세액				

④ 조정반번호		④ 조정자	성명
④ 조정자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국세환급금 계좌 신고 (환급세액 2천만원 미만인 경우)	④④ 입처	은행 (본)지점
	④⑤ 금종류	
	④⑥ 계좌번호	예금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법인) (인)
신고인(대표자) (서명)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재무상태표 2. (포괄)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4. 현금흐름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세무조정계산서	수수료 없음
------	--	--------

210mm x 297mm [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국세청 법인세 신고안내

법인세법 개정

국세청 법인세 신고안내

공문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			처리기간	수수료
			3일	없음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소 또는 사업장	(우 -)	⑤전화번호	
	⑥상호		⑦업종	
신청내용				
납부할 국세의 내용			⑪납기연장을 받고자 하는 금액	
⑧세목	⑨납부기한	⑩금액		
	. . .			
	. . .			
	. . .			
⑫연장받고자 하는 사유				
⑬연장받고자 하는 기간	년 월 일부터	(일간)	
	년 월 일까지)		
분납금액 및 납부기한				
⑭횟수	⑮세목	⑯납부기한	⑰금액	
1회		. . .		
2회		. . .		
3회		. . .		
국세기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납부기한연장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5.2.23.>

징수유예 신청서
 체납처분유예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	----

납세자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청내용

납부할 국세 · 체납액의 내용						징수(체납처분)유예를 받으려는 국세		
연도	세목	발행번호	납부기한 (독촉기한)	국세	가산금	계	국세	가산금

징수(체납처분)유예를 받으려는 이유	
징수(체납처분)유예를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납부기한 및 분납금액

횟수	연도	세목	납부기한	분납금액	국세	가산금
1회						
2회						
3회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82조의2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를 받으려는 이유를 증명하는 자료	수수료
	2. 담보제공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3부

농업 경영 컨설팅 우수사례

1

백석올미영농조합법인

2

영농조합법인금계식품

3

(주)네이처농업회사법인

4

농업회사법인합천유통(주)

5

황토랑영농조합법인

경영컨설팅 우수사례 ①

백석올미영농조합법인

철저한 기록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백석올미영농조합법인은 경영·회계관리부터 사업역량 강화 등 중장기 사업계획을 재수립하기 위해 경영 컨설팅을 받았다. 다소 광범위한 목표였지만 세부 실천과제 8개항목이 나왔고 이를 잘 수행해 안정적 성장세를 이루게 되었다. 컨설팅 이후 매출은 1.8배, 방문객은 30% 이상 증가하는 추세로 제2의 도약이 진행 중이다.



■ 취급품목 : 한과

조청·강정 가공상품 판매, 쌀·대추 생산 및 한과 만들기 체험관광

■ 2014년 조수익(매출액) :

2014년(컨설팅 전) 3.8억원 →

2015년(컨설팅 후) 6.9억원 →

2017년 7.2억원

■ 방문객 변화 :

2014년(컨설팅 전) 3,000명 →

2015년(컨설팅 후) 4,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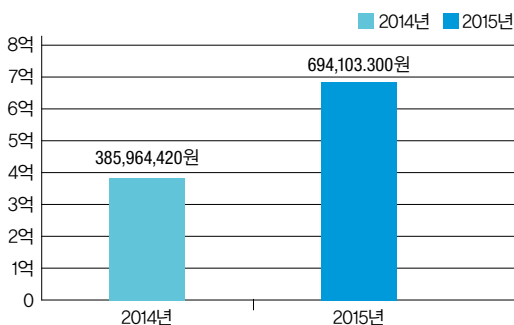
6차산업경진대회 대상 수상, 하지만 새로운 동력을 필요로 하다

충남 당진의 백석올미영농조합법인은 2014년 6차산업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경영체이다. 그로 인해 전국의 산지에서 6차산업을 배우기 위한 탐방객들이 급증하는 등 유명세를 치르게 되었다. 2014년 당시 백석올미영농조합의 연매출은 4억 원에 이르렀다. 비교적 수익 안정화는 이룬 셈이었다. 하지만 조직적인 운영 능력이나 경영 효율화 측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 김금순 대표는 당시를 이렇게 회고하고 있다.

“우리는 고령자가 많은 부녀회 중심으로 마을단위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형 경영에는 한계가 있었죠. 체험 프로그램 운영 능력이나 공장 운영의 기술력, 자금 운용 능력 등등 미흡한 점이 많았지요.”

6차산업경진대회 대상을 받은 후 마을에 활력이 넘치게 된 것은 고무적이었지만 반대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급격히 늘어났다. 성장기의 변화를 잘 활용해 미래를 대비해야 했고 그러려면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백석올미영농조합법인의 전년대비 매출성과]



1 한과 포장작업
2 실내교육장

일회성 코칭을 넘어 지속적인 경영 안정화를 목표로 삼다

김 대표는 경영 컨설팅을 통해 다방면의 숙제를 해결해 가기로 결심하고 조합원들과 협의했다. 조합원들의 의견은 다양했다. 한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제조기술에 집중하자는 의견,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방식에 집중하자는 의견, 홍보 마케팅과 판매처 개척을 위한 컨설팅을 받자는 등 여러 방면의 의견들이 표출됐다. 결국 ‘일회성이나 특정 분야에 국한된 코칭보다는, 경영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해 장기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하자’는 데 합의했다.

경영·회계관리부터 사업역량과 기술력 보완,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에 이르기까지, 다소 폭넓은 목표를 세운 것이다. 일차적으로 경영체 전반의 진단을 받고 중장기 목표를 협의했다. 이후 단기 과제와 장기과제로 나누어 실천과제를 정리했다. 단기적으로는 조직적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회계프로그램 도입이 시급했고, 차별화된 체험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했다. 이 과제들은 모두 직원

백석올미영농조합법인의 경영 컨설팅 8대 과제

- ① 경영 조직화 및 사업운영 능력 강화
- ② 체계적인 경영·회계 관리프로그램의 도입
- ③ 차별화된 체험프로그램 개발
- ④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 ⑤ 기술이전 교육(굳지 않는 떡, 구워 만드는 한과, 강정 상품화)
- ⑥ 상품·체험활동에 대한 원가계산
- ⑦ 백석올미영농조합법인의 농장 조정 및 경관 디자인
- ⑧ 백석올미영농조합법인 사례발표 PPT 제작



들의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실현할 수 있었다. 먼저 ERP 회계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직원들의 응용 방식 교육을 추진했다. 기본적으로 간편장부를 사용하며 전문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식을 배웠다. 어려워 보이는 회계 업무를 단순화하고 체계화했다.

체험 프로그램도 단순한 한과 제조 실습을 넘어 농촌문화 융복합형으로 진화시켰다. 조합원 대부분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인 점을 부각시키고 ‘농촌에서 일하는 노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변화시켰다. 기술 경험과 신기한 체험을 넘어 감동을 심어주고 추억을 남겨주는 과정을 통해 살아가는 지혜가 쌓이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할머니들은 발일을 하면서 한과 제조를 하는데 바쁠 때는 야간근무까지 한다. 농사를 지으면서 체험프로그램 운영의 보조교사 역할도 한다. 일이 늘어나다 보니 할아버지들이 농사와 집안일을 하고 할머니들을 출퇴근시켜 주기도 한다. 원래 농사만 하던 분들의 생활 패턴이 계속 바뀌

고 있는 셈인데, 이런 변화를 생생하게 체험 프로그램에 반영한 것이다.

이 법인의 경영방식을 배우기 위해 전국에서 견학을 온다. 아프리카 앙골라 같은 해외에서도 찾아올 만큼 유명해졌다.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 유치원 때 온 학생이 초등생이 되어 재방문해 오는 일을 경험했어요. 이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오게 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장기적으로 끌고 가려면 교육 프로그램을 매년 개발하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해요.”

2016년 백석올미영농조합법인을 찾아온 체험객은 6,000여명이었다. 2017년에는 1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렵지 않게 달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은 자전거 타기와 같다...

기업정신과 기록의 중요성 깨달아

김 대표는 2015년 농업경영 컨설팅을 받으면서 많은 점을 깨달았다고 한다. 우선 “사업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아서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않

[백석올미영농조합법인 경영 컨설팅 성과 지표]

구 분	항목	컨설팅 전 현황	컨설팅 후 성과
정량적 지표	가공기술	한과제조	굳지 않는 떡 기술 1식 추가
	경영회계관리프로그램	물품관리대장, 매출관리대장, 고객관리대장 관리 수준	경영·회계 관리에 대한 교육과 서식 제공
	체험프로그램 개발	단순체험 프로그램 (한과제조과정)	차별화 프로그램 1식 추가 (할머니의 중요성 강조하는 스토리 체험)
	상품, 체험활동 원가계산	상품, 체험활동 원가계산 0식	상품, 체험활동 원가계산 1식
정성적 지표	고객관리 역량강화	고객관리 미흡 (단순 매뉴얼 대응)	고객관리를 통한 만족도 향상 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능력 강화	체험프로그램 운영능력 양호	체험프로그램 다양화와 운영능력 강화

으면 넘어지게 된다”는 기업정신을 배웠다. 그래서 법인의 운영과정을 모두 문서화하고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그 기록을 바탕으로 미래 사업 계획을 세우고, 해마다 계획에 따른 업무를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농업경영 컨설팅을 통해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은 ‘경영은 곧 기록’이라는 점이었다. 경영규모가 확대되면서 고객이 다양화되고, 요구가 세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지난해, 지지난해 쌓아온 각종 자료가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세부단위 사업활동에 대한 원가계산을 명확하게 할 수 있게 된 것도 고무적이다.

농업경영 컨설팅을 수행한 (주)지역아카데미 박상식 책임컨설턴트는 “백석올미영농조합법인의 잠재적 가치가 계속 드러날 것”이라며 “나이든 분들이 많은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지식을 흡수하는 능력이 뛰어났다”고 회고했다.

김금순 백석올미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컨설팅의 효과로 돈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점”이라고 밝혔다. “추석이나 명절 등의 큰 행사를 앞두고 예산에 따른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비용을 조정하면서 대처 방안을 만들 수 있는 노하우가 로컬 기업들에게는 꼭 필요해요. 다른 법인들에게도 이런 컨설팅을 받도록 권유하고 싶습니다.”

백석올미영농조합법인의 주된 수익원인 한과 판매는 1일 평균 70~80박스 수준이다. 조합원들에 대한 배당은 출자금의 5% 정도로 많은 편은 아니다. 아직까지는 재투자 시기라 실질 수익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농외소득이 연간 2,000만원 정도 생겼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 마을은 활력이 넘치고 조합원들의 사기는 계속 높아져 가고 있다.

영농조합법인 금계식품

“뚜벅뚜벅 걸어갈 기업경영의 핵심을 파악했다”



금계식품은 비교적 단순한 목표를 세웠다. **직원들의 능력 배양과 6차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컨설팅이었다. 4개월 간의 농업경영 컨설팅을 받으면서 변화가 많이 일어났다.** 시스템을 바꾸고 조직 운영 매뉴얼을 갖추는 과정을 통해 직원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 매출과 순익도 상승했다.



■ **취급품목 : 감식초**

먹시감 생산 및 요리법 체험관광

■ **2014년 조수익(매출액) :**

(컨설팅 전) 11.5억원 →

(컨설팅 후) 13.7억원

■ **순소득 변화 :**

(컨설팅 전) 400만원 →

(컨설팅 후) 500만원(25% 증가)



기업의 미래는 사람이 결정...

구성원들의 교육 차원으로 컨설팅 접근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하고 교육을 받기 위해서도 컨설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에게도 늘 배우라고 강조합니다.”

임장옥 금계식품 대표의 말이다. 임 대표는 교육이 기업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믿고 있다. 본인부터 농식품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소기업청, 코트라 등에서 지원하는 교육을 가급적 빠지지 않고 받아 왔다. 해외 출장도 부지런히 다니며 경험을 쌓았다. 가공이나 유통의 방법도 배우러 다니고 제품개발 컨설팅도 꾸준히 받고 있다.

임 대표는 교육이나 컨설팅이 당장의 성과를 위해 받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사람의 경쟁력이 강해지면 기업은 장기적으로 튼튼해진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농업경영 컨설팅을 받은 후 거래처의 수가 10% 정도는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렇게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난 것은 고무적인 일이었지만 거래처 증가가 수익성 증대로 직결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제조업체가 요즘 많이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는 전에 비해 거래처가 늘어났으니 다행이지요. 물론 거래처가 늘었다고 해서 매출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그만큼 경기가 안 좋은 거예요. 고객은 늘었지만 반대로 주문 수량은 줄었죠.”

금계식품의 농업경영 컨설팅 과제는 단순했다. 경영 관리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 그리고 직원 교육이었다. 경영 관리 시스템 재편은 6차산업화 인프라 구축 차원이었다. 이 모든 컨설팅의 핵심을 직원 교육에 두었다. 잘 되고



1 먹시감
2 식초 생산라인 청결실

못 되는 것은 백지 한 장 차이인데, 그 한 장은 결국 사람의 역할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천재 한 사람의 능력보다 멍청한 사람 셋이 열심히 일하는 게 낫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우리는 생산부터 유통까지 직원들 모두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계식품의 주력상품은 감식초다. 먹시감을 발효시켜 식초를 만드는 것인데 상품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침전물 관리다. 가장 좋은 기법은 자연 침전. 이를 위해 기술특허와 상표 등록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그러다 보니

[금계식품의 개선 과제]

항목	세부내용
경영개선	효과적인 경영관리 시스템 수립을 위한 지도
	직원 업무관리 교육 필요
6차산업화	6차산업화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정보 및 지도 필요
	6차산업화 성공사례 제시 및 벤치마킹 지도

영농조합법인 금계식품

내부적인 회계 관리와 고객 관리 등의 능력은 미흡했던 게 사실이다.

회계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해 별도 관리해 왔고, 매입 매출을 프로그램에 따라 기재한 뒤 세무사 사무실로 보내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법인 운영에 관한 교육은 받았으나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신청하지도 못했다. 약 20년 동안 상품 개발과 시장 확대에 주력하며 바쁘게 보내다 보니 놓친 것들이 많았다. 2015년의 경영 컨설팅은 그런 점에서 금계식품 경영전략의 전환점이라 할 수 있었다.

100% 유기농 감식초 활성화를 위한 6차산업화를 추진하다

금계식품은 1994년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한 뒤 안정적으로 성장해온 게 사실이다. 감식초 상품은 국내에서 유일했고 품질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호의적이었다. 전북에서 출발했지만 10년도 안돼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국내산 100% 유기농 감식초 컨셉트와 효능이 빠르게 알려진 것이다. 감식초를 중심으로 초마늘·초콩·초콩

환, 초란 음료, 자연 발효 효소, 호박고구마 등의 제품 라인업을 차례로 갖춰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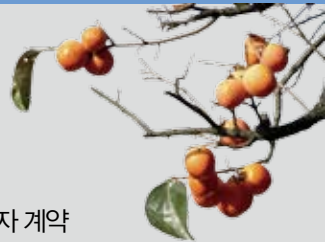
“말을 많이 안 해도 금계식품은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려고 시작한 것이 아니고 국민 건강을 위해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감식초 전도사가 된 마당에 기왕이면 기업운영도 보다 체계화시켜야 하는 거지요.”

2014년 이후 금계식품은 새로운 고민을 안게 되었다. 단순한 상품 판매를 넘어 생산-가공-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해 한 차원 높은 단계로 진화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을 6차산업 형태로 재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2015년 초, 임 대표는 정읍시에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 지원을 했고 5월부터 집중 컨설팅을 받았다. 이를 통해 인사·노무 등의 조직 운영 매뉴얼을 새롭게 구축하고, 6차산업화 준비를 위한 각종 교육을 받았다. 먹시감의 생산과 가공과정, 농산물 생산 체험과 식초 상품화 과정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고객 관리와 서비스 방식 등에 대한 체계적 컨설팅을 받았다. 이 과정에

금계식품 감식초 확산 과정

- 1995년 감식초 가공공장 설립(4월), 판매개시(10월)
- 1996년 LG화학 납품
- 1998년 농협 수탁판매 계약
- 1997년 (재)체성회 우편주문판매 계약
- 1999년 한국식품개발연구원 감식초 청정화 계약 체결, 농협중앙회 생활물자 계약
- 2001년 금란초 군납품 계약
- 2004년 중소기업청 수출화기업 선정



[금계식품의 경영 컨설팅 성과 지표]

항목	컨설팅 전(2014)	컨설팅 후(2015)
인사/노무/조직운영	미실시	매뉴얼 개발 운영 (규정관리, 교육훈련 확인 및 관리, 회계관리, 비상사태 관리 등)
경영시스템 관리	미실시	체계화 관리 지도 (업무분장 요령, 문서 일괄관리 및 서식 활용법, 기록관리 요령)
체험프로그램	미개발	고구마 심기, 고구마 캐기 및 감식초 활용한 요리법
총매출액	11억5100만원	13억700만원(12% 증가)
소득액	400만원	500만원(25% 증가)

서 직원들의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경영 관리 체질을 개선하면 장기적으로 기업의 안정화가 이루어지리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컨설팅 당해년도 매출이 1억5000여만 원 증가했다.

컨설팅에서 받은 영감을 경영에 반영, 제2의 도약 준비

금계식품은 농업경영 컨설팅을 통해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정읍시 농가들의 조직화와 규모화를 추진했다. 과거에는 농가들과 계약재배를 추진하거나 단순한 원료 구매에 그쳤지만 조직화를 통해 재배 관리를 체계화할 수 있었다.

감식초 외의 건강에 유용한 가공식품 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고구마 심기와 고구마 캐기, 식초 요리법 등 체험 프로그램도 새롭게 개발했다. 동시에 각종 이벤트를 만들어 전통식품의 유산 가치를 확산시킬 준비도 하고 있다. 감식초를 활용한 요리법을 만들어 고객들에게 전달하고 SNS를 통해 확산시키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과거에는 감식초의 약리적 효과와 건강기능적

가치를 전달하는 데 그쳤지만 상품의 응용방법을 보급하면서 고객 증가속도도 빨라지기 시작했다.

농업경영 컨설팅을 수행한 (주)에리트경영연구소는 “먹시감 식초는 마니아층을 중심으로 한 안정적 판로가 있는 게 강점”이라고 밝혔다. 이를 대중화시키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고 그 중 하나가 6차산업을 통한 홍보라고 조언했다.

먹시감 식초는 지난해 슬로푸드 생물 다양성재단에서 지정하는 ‘맛의 방주’에 2000번째로 등재되었다. 바야흐로 세계적인 건강상품으로 도약할 기회를 갖게 된 셈이다.

임 대표는 식품명인 41호(감식초 명인 1호)로 지정된 전북의 대표적 명인이다. 감식초 영농조합을 설립하기 전까지 29년간 농협에서 근무했다. 임 대표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사명감을 심어주고 있다.

경영컨설팅 우수사례 ③

(주)네이처농업회사법인

“미래사업 계획에 컨설팅이 큰 도움을 주었다”



(주)네이처는 꽃 축제를 주관하며 꽃 가공상품을 판매하는 농업회사법인이다. 대규모 농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영적자가 누적돼 체질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6차산업을 대안으로 삼고 농업경영 컨설팅을 받았다. 이후 매출 1억원, 방문객 4만명이 증가했다. 그 동안의 적자는 축제운영 시스템의 문제였음을 확인한 것이다.



■ 취급품목 : 화훼

꽃축제·빛축제 운영, 튤립·백합 화훼 가공상품 만들기 체험

■ 매출 변화 :

2014년(컨설팅 전) 17억원 →

2015년(컨설팅 후) 18억원

■ 방문객 변화 :

2014년(컨설팅 전) 34.5만명 →

2015년(컨설팅 후) 37만명 →

2016년 39.5만명





태안군 꽃 축제장



꽃 시장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했다

(주)네이처농업회사법인은 충남 태안군 남면에 자리 잡은 화훼 전문기업이다. 튜립과 백합 재배를 토대로 태안의 꽃 축제를 주도하며 생산과 가공을 연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화훼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6차산업으로 연계시키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던 중이었다.

2015년 공동마케팅 조직을 대상으로 한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을 접하게 되었고 태안군청에서도 적극 권유했다. 특히 2012년부터 주관해온 태안군 꽃 축제의 수지를 개선해 재정적 활로를 찾는 일은 태안군과 (주)네이처 공통의 과제였다.

태안은 충남 지역 화훼의 48%를 차지하고, 국화 재배량은 전국 1위의 주산지다. 2015년에는 '세계 5대 튜립축제' 지역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주)네이처는 꽃 축제를 주관하면서 태안의 관광객 확장에 크게 기여해 왔지만 법인의 수익 향상에는 큰 도움을 받지 못했다. 무엇이 문제인지 진단이 필요했고, 사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 구축이 필요했다.

(주)네이처는 2015년 7월부터 4개월 동안 농업경영 컨설팅을 받았다. 그 동안 쌓은 성과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이었다. 단기적 경영 개선과 중장기 로드맵 설정을 목표로 삼았다.

진단 결과 두 방향의 개선과제가 도출되었다.

단기적으로는 꽃 축제를 활용한 신규사업 발굴이다. 농장을 단순한 관광공간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체험공간으로 역할을 확장해야 한다는 과제였다.

중장기적으로는 화훼 생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품질 가공상품을 개발해 신규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는 과제였다. 당연한 미션으로 보이지만 단계를 밟아 가려면 심층 분석을 토대로 세부적인 실천 사항을 마련해야 했다.

화훼의 특수성과 꽃 가공상품의 시장 환경, 관광사업과 꽃 축제의 연계성, 지자체 협업과 정책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등 복합적 과제였다. 강항식 대표는 "단기간에 어려운 과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흥미로웠다"고 회고했다.

자가진단을 통해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알고 싶었다"

농업경영 컨설팅을 통해 얻은 중요한 성과는 사계절 플라워파크 아이디어이다. 컨설팅을 실시한 (주)한서아그리코의 하석건 박사는 '사계절 플라워파크 사업'을 제안했다. 6차산업화를 추진하면서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꽃 축제를 상시화해야 한다는 조언이었다. 사계절 꽃정원을 통해 관광객들의 재방문율을 향상시킬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역동적인 관광자원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계절 플라워파크에 가공, 화훼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원물과 산업별 시설 등의 연계를 통해 6차산업화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강항식 대표는 법인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들었다고 한다. 사계절 플라워파크에서 판매 안정성을 갖추게 되면 규모화된 화훼조직을 기반으로

(주)네이처
농업회사법인

출하시스템도 바꿀 수 있다. 사계절 플라워파크에 연중 방문하는 관광객과 체험객들을 대상으로 많은 사업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꽃 관련 체험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아이디얼한 꽃 가공상품들도 출현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태안군의 꽃 축제는 4~10월까지 계절별 다른 색깔로 진행된다. 축제별로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다르니 이들을 대상으로 연중 마케팅 전략을 펴나간다. 생화, 꽃 가공상품, 꽃 활용 체험 프로그램 등의 소비군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강 대표는 당장 실천 가능한 과제부터 사업에 즉각 반영했다. 이듬해 배재대학교에 의뢰해 꽃 축제 모니터링 조사를 시도, 사업 계획을 보다 섬세하게 보완했다.

“농업경영 컨설팅에서 큰 영향을 받았어요. 좋은 것이 아닌, 나쁜 것을 알고 싶었죠. 중장기 전략을 추진하려면 확신과 신념이 필요하니까요.” 농업경영 컨설팅 후, 경영성과는 구체적인 데이터로 나타났다. 전년도 17억원의 매출이 18억원으로 늘어났고 꽃 축제 방문객은 34만 명에서 37만 명으로 증가했다. 2006년 방문객 6만 명으로 시작된 태안 꽃 축제는 2012년부터 규모를 키워 약 30만 명 수준의 방문객을 유도했다. 2015년까지 누적 관광객은 255만명, 2017년 52



1 백합 생육장
2 직원들 해외연수

만 명 방문객을 예상하고 있다.

무엇보다 큰 성과는 사계절 플라워파크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28억 원의 지원금으로 사무실 기숙사, 식당, 화훼박물관, 유리온실 등을 조성해 태안에 오면 4계절 꽃을 관람할 수 있도록 작업 중이다.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꽃 공원이 없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사업이다. 사계절 플라워파크 조성 후 연중 방문객은 2025년 82만 명, 2030년 100만명 돌파를 예상하고 있다.

이제 시작에 불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까지 다할 것

(주)네이처의 백합재배는 전국 최대 규모다. 2개의 생산자 조직이 6ha를 재배하는데, 총 생산량이

[(주)네이처가 연중 주관하는 꽃 축제]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2년				튤립꽃축제		백합꽃축제					태안다알리아꽃축제	
2013년				튤립꽃축제		백합꽃축제	빛축제		태안다알리아꽃축제			
2014년				튤립꽃축제 그리고 백합								*태안 빛 축제 상시 운영

[(주)네이처 경영 컨설팅 성과 지표]

부문별		컨설팅 전	컨설팅 후	효과
정량적 지표	매출액	17.4억원	목표 : 18억원 달성 : 35억원	이익률 확대
	방문객	40만명	목표 : 43만명 달성 : 44만명	방문객 증대
정성적 지표	6차산업화	없음	생산가공연계, 전략 계획수립 수익창출형, 사업모델 개발	인증 완료, 사업 추진 시 반영
	중장기 전략수립	없음	중장기 전략수립	사업 추진 단계적으로 적용

15톤에 이른다. 판매 루트는 일본 수출, 가공식품 제조업체 납품, 자체 시장유통 등이다.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 원료를 이곳에서 공급하며 LG 생활건강, 한국야쿠르트 등 대기업들의 가공식품 원료 공급처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축제기간 중 태안을 방문하는 수십만 명의 고객들이 가장 중요하다. 단기간 동안 보통 구근상자로 수익 원이 팔려 나가는 것이다. (주)네이처는 농업경영 컨설팅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접목해 축제 중 꽃 가공품 판매를 극대화시켰다.

“예를 들면 관광객이 꽃구경만 하고 꽃을 구매하고 가는 것을 넘어서 꽃의 원료를 가지고 나만의

화장품을 만드는 체험을 기획하는 등 방문객들에게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즐거움을 주는 겁니다.” 물론 축제사업에 얽매이지 않고 사업 다각화를 이루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농업경영 컨설팅에서 제안 받은 대로 장기적으로는 바이오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주)네이처는 설립 초기 강항식 대표와 함께 했던 12명의 이사들 중 3명이 남아 있다. 전체 임직원은 28명. 부장들의 월급이 대표보다 많다. 직원들과 지분을 공유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까지 엄중하게 인식하는 법인으로 성장하는 게 다음 목표다.

[(주)네이처 화훼 6차산업화를 통한 경제효과]

구분	내용
관광객방문	● 매출 45억원 기준(3년 매출 기준) → 입장료 5,000원× 30만명×3년=약 45억원
가공기술향상	● 매출 30억원 기준(3년 매출 기준) → 30억원×7%생산기술향상(생산량 6%↑×보존성 8%↑)=약 2억원
지역생산·지역판매	● 지역생산 100억원 기준→유통물류비 절감 5억원(생산성 5%↑) ● 화훼 지역판매를 통한 집하·유통·물류 등 효율성 제고(5%↑)
출하구조개선	● 화훼 지역판매 매출액 5억원 기준→수익향상 1억원(20%↑)

농업회사법인합천유통(주)

위기의 유통법인을 신규 매뉴얼 도입으로 수익 극대화



합천유통(주)은 만성 적자에 시달리며 해산을 고민하는 법인이었다. **기업의 미래를 결정짓기 위한 진단 차원으로 농업경영 컨설팅을 받았다.** 하지만 **이윤 확보를 위한 대안이 나왔고, 이를 바탕으로 전년도 6억원 적자에서 이듬해 4억원 흑자라는 성과를 이루었다.** 직원들의 의욕과 농민들의 신뢰 회복도 큰 성과였다.



■ 취급품목 : 양파, 수박

밭작물 유통, 가공상품 판매

■ 조수익(매출액) :

2014년(컨설팅 전) 216.5억원, →

2015년(컨설팅 후) 350억원

■ 당기순이익

2014년(컨설팅 전) -6억원 →

2015년(컨설팅 후) 4억원



해산 위기를 탈출해 흑자 전환에 성공... 과감한 변신 주문한 농업경영 컨설팅

합천유통(주)은 지방행정(합천군 농업기술센터)과 농협, 농업인이 공동출자하여 만든 회사다. 합천군에서 나온 농산물을 총괄 관리하며 합천유통(주)을 통해 통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한 법인이다. 공적 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제고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농민들의 구매가를 낮추기도 힘들고 시장에서 비싸게 받을 수도 없어 수년간 적자가 누적돼 왔다. 이로 인해 지방의회에서 행정감사와 해산 권고 등 시련이 계속돼 왔다.

합천유통(주)의 경영 위기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2015년 1월 1일 장문철 씨가 대표로 취임한다. 장 대표는 “대표로 부임할 때는 사실 이 법인을 해산하는 게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회사 설립 당시 농협 직원 신분의 상임이사였다. 2012년 농협으로 복직했다가 2015

년 합천유통(주) 대표로 돌아왔으니 법인의 지난했던 과정을 알 만큼 알고 있었다. 장 대표는 합천군청과 협의해 통합마케팅 조직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정책 중 하나인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을 신청했다. 전문 컨설팅을 통해 법인의 회생 가능성을 탐색하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해산과정을 밟을 계획이었다. 합천유통(주)은 2015년 농업경영컨설팅 인증업체인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으로부터 집중 컨설팅을 받았다. 가장 중요한 재무진단을 통해 동종업계와 수익성·성장성·안정성·활동성을 비교했고, 유일한 회생방안으로써 “유통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대안을 찾기에 이른다.

산지유통실무협의회 정례회, 목표관리(MBO)시스템 도입

합천유통(주) 유통구조 개선의 핵심은 ‘농산물의 매취사업을 줄이고 수수료 중심의 수탁사업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김경환 지역농업네트워크 컨설턴트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한다.

“양파는 합천유통의 가장 중요한 수익원인데 가격 등락이 많은 품목을 집중적으로 사들여 재고를 처리하지 못하는 등 문제를 싸안고 있었어요. 그것부터 해결해야 했는데 간단치는 않았죠. 시스템 전반을 바꾸는 과정에서 농민들의 반발도 많았죠.”

하지만 합천유통(주)은 농업경영 컨설팅에서 제안한 각종 전략들을 최대한 반영해 갔다. 수탁형 공동계산액을 확대하고 매취사업 최소화를 추진했다. 반발을 막기 위해 산지유통실무협의회를 정례화해 품목별 조합원들과 함께 고민을 공유해

1 합천유통(주) 전경
2 양파 경매 현장



갔다. 모든 사업은 이 회의를 통해 추진하고 로컬푸드 직매장의 제품구성과 판매형태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며 농가들의 변화를 유도했다.

동시에 임직원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수렴했다. 조직만족도, 보상체계, 교육훈련 등에 대한 개인별 제안과 각종 아이디어를 수렴했다. 모두 농업경영 컨설팅 제안에 따른 시도였다.

“우리는 양파, 딸기, 수박 등의 생산물뿐 아니라 합천군민이 생산한 가공상품을 모두 모아서 팔아 주기도 합니다. 모바일 앱도 개발하고 홈페이지도 새롭게 개발해 인터넷을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도가 성공하려면 직원들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직원은 18명이다. 장 대표는 이들의 의욕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업무에 대한 규정과 매뉴얼을

숙지시키고 열정을 갖도록 독려했다. 농업경영 컨설팅에서 제안한 목표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성과에 대한 보상체계도 마련했다. 대표와 직원들이 함께 6차산업화 교육에 참여해 공판장 운영-가공사업-로컬푸드 직매에 관한 연계 전략을 수립하기도 했다.

**신규 로드맵에 따른 사업 다각화로
농산물 생산-공급의 선순환 구도 확보하다**
컨설팅 전까지만 해도 합천유통(주)은 인력변동이 잦았다. 이로 인해 사업의 연속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신사업(공판장, 가공사업, 로컬푸드 등) 추진에 진통이 이어졌다. 하지만 농업경영 컨설팅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

[합천유통(주)의 경영 컨설팅 과제]

부문별	세부 수행목표	→ 개선과제 도출
경영진단	- 사업운영 현황 및 재무분석 등을 통한 내부여건 분석 - 산지유통정책 및 유통환경 변화 등에 대한 외부 환경분석	- 수탁형 공동계산액 확대, 매취사업 최소화 추진 등 리스크 최소화 - 전략품목(양파, 수박, 딸기 등) 중심으로 신규 육성품목 확대 필요
조직/시설관리	- 내부 제규정에 대한 개정, 인력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시설관리에 대한 운영매뉴얼 마련으로 품질관리 체계화	- 임직원의 조직에 대한 만족도극대화 위한 소통과 보상 보완 - 통합마케팅에 대한 시각 차이 좁혀, 참여조직 대응력 강화
신사업 추진 및 협력시스템 구축	- 다양한 신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진단 및 향후 발전방향 제시 - 산지유통주체간 협력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감대 형성방안	- 로컬푸드 직매장을 마을기업 등과 연계, 가공제품 위주 판매 - 공판장 개설 운영 중, 마늘 외 품목확대 추진
비전 및 전략수립	- 합천유통(주) 중장기 비전 및 목표, 세부과제 설정 - 사업추진을 위한 단계별 추진방안 및 연계사업 발굴	- 통합조직으로서 내부역량 강화 및 지역 내 협력시스템 구축 -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공선출하회 육성 프로그램 개발

[합천유통(주)의 경영 매뉴얼 구현 핵심]

항목별	세부 해결방안	현장 실행내용
경영진단	- 수탁형 공동계산제 확대를 위해 신규 품목에 대한 공선회 육성 - 불필요한 이해관계 조정, 민원 대응 최소화, 마케팅 집중 강화	- 산지유통실무협의회 정례화 추진, 목표관리(MBO)시스템 도입 - 참여조직별 1품목 1공선회 육성으로 조직화, 취급액 확대
조직/시설관리	- 임직원에게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참여 - 통합마케팅 이해 확대를 위한 참여조직과 합천유통간 워크숍 추진	- 복무규정 등 제규정에 대한 개정(안) 마련 - 공판장 운영 매뉴얼을 통한 공판장 운영 효율화
신사업 추진	- 로컬푸드 직매장은 쿠팡 연계 및 전자상거래 확대 추진 - 공판장 개설에 대한 지역 내 홍보강화 및 참여농가 DB구축	-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 시범사업 추진 - (가칭)원예농산물생산유통종합계획 수립 논의
비전 및 전략수립	- 연합사업 중심 합천관내 농산물 유통의 컨트롤 타워 강화 - 합천유통(주), 연합사업단, RPC를 포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농업회사법인의 한계 극복 위해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안 검토

합천유통(주)은 2015년 말 극적인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6억여 원이었던 전년도 적자를 극복하고 4억 원의 흑자를 냈다. 매출액은 전년대비 23.7% 성장했고 조직화 취급률도 70%를 달성해 향후 통합마케팅 전망을 밝게 했다. 합천유통(주)의 경영이 성공적으로 변화할 수 있었던 배경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 리더의 과감한 농업경영 매뉴얼 도입
 - 농업경영 컨설팅에 따른 유통구조 개선
 - 직원들의 열정, 조합원들과의 소통 노력
- 합천유통(주) 장문철 대표의 말이다.
“내부적으로는 일정한 수수료로 법인 운영이 가능해야 하고, 대외적으로는 농산물의 공급을 확대해 선순환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합천유통(주)의 경영 컨설팅 성과 지표]

항목	컨설팅 전	컨설팅 후 목표	실제 성과
매출액 증가율	283억원	350억원	350억원 달성
당기순이익	적자	2000만원	4억원 달성
조직화 취급액	-	280억원	245억원 달성
조직화 취급율	-	80%	70%

경영컨설팅 우수사례 ⑥

황토랑영농조합법인

경영의 혁신 방향을 잡고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황토랑영농조합법인은
2010~2012년 사이
매출이 급증하며
조직이 확대되었다.
하지만 수익성이 정체돼
경영관리의 변화 필요성을
느꼈다. 2015년 농업경영
컨설팅을 통해 순이익이
25% 증가했고 온라인
마케팅 동력을 확보했다.
컨설팅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게 된 것도 큰
성과였다.



■ 취급품목 : 양파즙

양파 가공상품 유통

■ 조수익(총매출) :

2014년(컨설팅 전) 20억원 →

2015년(컨설팅 후) 25억원

■ 당기순이익 :

2014년(컨설팅 전) 5.8억원 →

2015년(컨설팅 후) 7억원



급성장한 법인을 혁신해 지속 성장 위한 토대 구축이 필요했다

황토랑영농조합법인은 전남 무안 지역의 양파
즙 전문기업이다. 2006년 9월 설립 이후
3년여 만에 TV홈쇼핑에서 히트를 쳐 전
국적 유명세를 갖게 되었다. TV홈쇼핑
최초로 양파즙 음료를 판매해
'대박'을 낸 뒤, 5대 홈쇼핑에 모
두 입점하며 급성장 가도를 달렸
다. 2010년부터 2012년 기간 동
안 황토랑영농조합법인의 매출은

2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매출 증대는 외형적
성장일 뿐 순익과 내실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신재준 대표는 2013년부터 경영 전반의 혁신 필
요성을 느꼈다. 외형적 성장을 내실로 연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다. 차일피일 미루다 2015년 초
농식품부의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을 접하
고 무안군청을 통해 컨설팅 지원 신청을 했다.
농업경영 컨설팅은 인증업체인 혁신전략컨설팅
(주)에서 맡았고 정해남 책임 컨설턴트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신재준 대표는 이때 받은 부문별 진
단과 각종 지표, 시장 분석 등이 미래 전략에 중
요한 단초를 주었다고 밝혔다.

“많은 사람들이 양파즙 시장규모를 한정적으로
보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제 초창기
수준이고 확장 여지가 많은 상품입니다. 그래서
더욱 장기적 전략이 필요했는데 그에 대한 답이
컨설팅을 통해 주어졌습니다.”

장기전을 위한 경영의 주춧돌을 놓으려고 받은
컨설팅이었는데 의외로 효과가 빨리 나타났다.
우선, 월별 스케줄에 따라 현장지도가 진행되면



신재준 대표와 황토랑 양파즙 상품



서 시스템 개선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직원
들의 업무 전문성 수준이 높아지고 집중력이 강
화된 것이다. 마케팅과 고객관리 등의 업무개선이
특히 눈에 띄게 발전했다. 홈페이지와 쇼핑몰
에서 제기되는 회원들의 요구는 어떤 업무보다
우선처리하게 되었고 반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유를 기록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온
라인 판매와 회계관리 연동 솔루션은 컨설팅 과
정에서 즉각적으로 적용했다. 당장 비용 절감 효
과가 나타났다.

“우리가 필요했던 것은 중장기 전략과 마케팅 솔
루션이었는데 비용절감 효과가 바로 나타나 늘
랐습니다. ERP 시스템을 구축한 뒤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도 좋아졌고요.”

이로 인해 컨설팅 당해년도 매출이 18%, 순수익
은 25% 증가했다. 신 대표는 “문제점이 발견되
면 바로바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즉각적
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성과”라고 회고
했다. 현장 개선이 곧 생산성 향상이고 기업 경
쟁력이라는 것이다.

재무안정성과 자본 회전을 양호, 수익성 제고 위한 도전

농업경영 컨설팅 당시 회사의 재무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다. 신 대표는 “재무 상태가 안 좋을 때 받았더라면 즉각 대응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회고했다. 시스템을 바꾸는 데 대한 부담이 적었고, 시스템 변화에 대한 직원들의 거부감도 없었다.

2015년 기준 총자본 증가율은 46%, 매출액 증가율은 47%였다. 성장성이 매우 높은 재무구조였다. 다만 재무관리가 비효율적이었던 게 사실이다.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 성장에 탄력이 붙을 것이 당연했다.

황토랑영농조합법인의 강점은 양파즙 생산 제조라인이다. 국제품질인증, 클린사업장,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지정 등 전문설비 운영의 인증을 두루 받았다. 이렇게 자동화의 선두주자가 되었지만 운영 방식은 효율적이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과학적 설비 시스템을 효율화할 수 있는 판매 마케팅의 보완도 필요했다.

신 대표는 농업경영 컨설팅에서 제기된 각종 제



양파즙 제조라인

안사항을 단계별로 적용해 제2단계 성장을 준비 중이다. 다음은 컨설팅 후 변화하고 강화된 경영 시스템이다.

첫째, 흡소핑 판매와 신규제품 런칭을 위해 온라인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쇼핑몰을 리뉴얼해 주력제품과 신규제품이 돋보이도록 유도했다.

둘째,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6차산업 인증을 획득했다.

셋째, 생산유통과정의 ERP 시스템을 구축하고 회계 연동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넷째, 생산 설비의 HACCP 인증을 추진했다. 지속적인 사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고 직원교

[경영 상태 진단 내용]

부문별	경영진단	대안
안정성	유동, 당좌비율 및 고정장기 적합률 향상으로 재무안정성 높아짐	재무안정성을 바탕으로 한 신전략 추진 필요성
활동성	총자산 회전율과 설비자산 회전율, 매출채권회전율 및 재고자산 회전율 매우 높음	재고자산 활용한 신사업 개발 및 마케팅 능력 제고로 역동성 요구
수익성	매출액 대비 총자본 영업이익률 및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낮은 수준	매출원가 절감으로 영업이익률 향상 또는 판관비 및 경비를 낮추는 로하이(Low & High) 전략 요망

육을 통해 관리를 강화했다.
다섯째, 위생관리를 위해 6가지 부문의 평가 항목을 설정하고 27개 세부사항 점검을 일상화하고 있다.

양파즙 전문기업의 특징 강화하면 5년 내 100억 매출 가능할 듯

황토랑영농조합법인의 제품은 크게 세 가지다. 대표상품은 '원액양파즙'이다. 양파를 통째로 100% 달인 순수 양파즙 상품이 황토랑의 매출을 꾸준히 견인하고 있다. 이후 출시된 '자색양파즙'은 말 그대로 자색 양파를 사용한 즙 상품이다. 일반 양파보다 안토시아닌 함유량이 2~3배 높은 게 장점이다. 이후 개발된 '팻튼양파즙'은 기존 양파즙에 자몽추출물과 벌꿀을 첨가해 제조한 다이어트용 상품이다.

그 밖에도 다양한 양파즙 제품을 개발 중이다. 최근에는 기능성식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국내 판매의 한계성을 넘어 해외시장을 개척하려는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 중이다. 미국, 일본,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산학연관 협력네트워크를 구축

해 운영하고 있다. 점차 사업영역을 확장해 5년 내 연매출 100억을 달성하는 식품회사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세웠다. 농업경영 컨설팅에서 얻은 전략을 십분 활용하면 양파 전문기업의 100억대 매출 신화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해남 컨설턴트는 “황토랑영농조합법인의 음료 상품 판매가 홈쇼핑에 집중돼 있으며 유행을 타는 한계를 극복해야 했다”며 “농업경영 컨설팅을 통해 보완 개선한 뒤 안정적으로 성장 중”이라고 밝혔다.

[황토랑영농조합법인 경영 컨설팅 성과]

항목	컨설팅 전	컨설팅 후
매출액	20.6억원	25억원
순이익	5800만원	7000만원
재무제표 분석	-	1건
6차산업 사업계획서	-	인증 완료
홈피, 쇼핑몰 리뉴얼	유	1식(주력제품 노출강화)
모바일 앱 제작	-	1식(신규 쇼핑몰형)
회계관리 프로그램	-	1식(ERP연동형)

[최종 결과]

부문별		수행 효과
정량적	경영전반	- KPI 지표향상 및 매출 21%, 소득 25% 증가
정성적	경영계획, 경영관리	- 6차산업 인증으로 지속적인 성장기반과 경영관리 능력 향상 - 성장단계별 경영핵심사항의 지도 및 개선으로 마인드향상
	홈페이지, 쇼핑몰 리뉴얼	- 홈페이지, 쇼핑몰의 리뉴얼 및 모바일 앱 제작 - 온라인 홍보기반 구축 및 활용으로 매출 향상
	마케팅 및 회계 관리 기반구축	- 온라인 주문 판매를 위한 인터넷 SNS 홍보 솔루션 개발 - 인터넷주문, 전화주문 송금관리- 매출 회계관리 솔루션 개발



별첨

농업법인 설립과 운영을 위해 알아야 할 기타 주요 정보

1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정관(예)

2

농업법인 설립등기 신청 서식 및 작성요령 안내

3

농업법인 설립·변경사실 지자체 통보 서식 안내

4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서식 안내

5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단 비교표

7

기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및 사이트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정관(예)

<p>영농조합법인 정관(예) 고시 ■ 개정 2015. 10. 1,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41호</p>	<p>정관 작성시 유의사항</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장 총 칙</p> <p>제1조(명칭) 본 조합법인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서 <u>그 명칭은 ○○영농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u></p> <p>제2조(목적) <u>본 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등을 통하여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조합법인의 사무소는 ○○(시·도) ○○(시·군·구) ○○(읍·면) ○○(도로명)에 둔다. (비고) 별도의 (분)사무소를 두는 조합법인은「본 조합법인의 사무소는」을 「본 조합법인의 주된 (주)사무소는」으로 고치고 제1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본 조합법인의 분사무소는 ○○(시·도) ○○(시·군·구) ○○(읍·면) ○○(도로명)에 둔다.</p>	<p>☛ 명칭 중에는 반드시 「영농조합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합니다.</p> <p>☛ 조합법인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부합해야 합니다.</p>

제4조(사업) 본 조합법인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협업적 농업의 경영과 ○○사업을 주사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한다.

1. 집단재배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2. 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농기계 및 시설의 대여사업
4. 농작업의 대행
5. 농산물의 출하·가공 및 수출
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비고)

1. 각 사업별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농업의 경영 : 조합법인이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여 생산지에서 판매하기까지의 전과정을 포함함.
 - 나. 집단재배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 조합법인의 농업경영에 부수하여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외의 자의 농작업을 협력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제활동을 말함
 - 다. 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조합법인이 공동경영을 위하여 농사·창고·축사·퇴비사 등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부수적으로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여 사용료 등을 받는 경제활동을 말함.
 - 라. 농기계 및 시설의 대여사업 : 조합법인이 농기계·농기구·건조시설 등을 보유하여 이용하면서 부수적으로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대여·사용하게 하고 사용료 및 임대료를 받는 경제활동을 말함.
 - 마. 농작업의 대행 : 조합법인이 조합원이외의 자로부터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제활동을 말함.
 - 바. 농산물의 출하·가공 및 수출 : 조합법인의 조합원(혹은 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 또는 지역 농가로부터 구매한 농산물을 조합법인을 통하여 판매하거나, 가공 또는 수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함.
2. 제1호 내지 제6호에 열거한 사업이외의 사업도 제2조의 목적과 부합되는 것은 적절히 열거할 수 있으며 부대사업을 명기할 수 있다.

예) 6. 관광농원

제5조(협동조합에의 가입) 본 조합법인은 □□○○협동조합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한다.

제6조(공고방법)

- ① 본 조합법인의 공고는 본 조합법인의 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조합원과 준조합원에게 통지하거나 일간신문 등에 게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7조(규정의 제정) 이 정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업무의 집행, 회계, 직원의 채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 2 장 조합원 및 준조합원

제8조(조합원의 자격)

① 본 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또는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2. 만○○세 이상의 성년으로서 본 조합법인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
- 3. ○○만원 이상의 현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농지, 농기계, 가축, 기타의 현물을 출자한 자

② 본 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는 ○○협동조합, ○○○법인으로 한다.

● 가입하는 협동조합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조에서 규정된 협동조합 중에서 사업실시와 관련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조합을 선택하여 정합니다.

● 조합법인의 실정에 따라 그 요건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만19세 이상으로 하되 조합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조합법인이 출자를 허용하고자 하는 것만을 기재합니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농산물 생산자단체를 말합니다.

제9조(준조합원의 자격) 본 조합법인의 준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본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을 제공하는 자
2. 본조합법인에 농지를 임대하거나 농지의 경영을 위탁하는 자
3. 본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구입·유통·가공 또는 수출하는 자
4. 그 밖에 농업인이 아닌자로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에 출자를 하는 자

제10조(가입)

① 본 조합법인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혹은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가입신청서를 본 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생산자단체의 경우는 제3호 및 사업자등록증(혹은 법인등기부 등본)을 제출한다.

1. 주소, 성명, 생년월일
2. 납입 혹은 인수하고자 하는 출자좌수 및 출자의 목적인 재산 <중전의 제3호에서 이동>
3. 경영규모(경지면적, 농산물의 연간판매액) 및 연중 농업종사일 수 <중전의 제4호에서 이동>

② 본 조합법인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 및 제9조에 의한 준조합원의 자격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자 등록이 된 자(법인포함)는 제1항제1호 대신 사업자등록증(혹은 법인등기부 등본)을 제출한다.

③ 조합법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가입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그 가입여부를 결정하고, 가입을 승인한 때에는 가입신청자에게 통지하여 출자의 불입(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하고 등기·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게 한 후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 명부에 기재한다.

④ 가입신청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불입함으로써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자격을 갖는다. ⑤ 출자좌수를 늘리려는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에 대해서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준조합원의 자격은 제1호 내지 제3호 중에서 조합실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습니다.

☞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 가입허용 여부를 이 조에서 특별히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내용을 적절히 수정 기입할 수 있습니다.

제11조(권리)

- ① 본 조합법인의 조합원의 권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조합법인의 공동작업에 종사하여 노동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을 권리
 - 2. 지분 환불에 대한 청구권
 - 3. 조합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분배청구권
 - 4. 조합법인의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 5. 조합법인의 제반회의에 참석하여 의결할 권리
 - 6. 조합법인의 운영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권리
 - 7. 조합법인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및 감사의 권리
- ② 제1항 제1호의 조합원의 노동과 대가에 대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③ 조합원은 출자의 다소에 관계없이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 ④ 본 조합법인의 준조합원은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6호의 권리를 갖는다.

제12조(의무) ① 본 조합법인의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할 의무
 - 2. 조합법인에 대한 출자의무
 - 3. 조합법인의 제반 노동에 참가하고 노동규정을 준수할 의무
 - 4. 총회에 출석할 의무와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 5. 조합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
- ② 본조합법인의 준조합원의 의무는 제1항의 제1호, 제2호 및 제5호와 같으며 제4호중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도 있다.

☛ 조합원의 의결권을 출자의 비율에 따라 가지도록 정하고자 하는 조합법인은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③ 조합원은 출자지분에 따라 그 비례대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 조합법인의 사업, 규모 등에 따라 의무사항을 적절히 추가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제13조(탈퇴)

- ①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은 60일전에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본 조합법인에 예고하여 탈퇴하며 그에 따른 모든 정산은 당해 회계년도 말에 한다.
- ②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연탈퇴 된다.
 1. 제8조에 의한 조합원 및 제9조에 의한 준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2. 사망
 3. 파산(법인의 경우 파산 또는 해산)
 4. 금치산 선고
 5. 제명
 6. 지분을 전부 양도하였을 경우
- ③ 제2항제1호의 자격상실은 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 ④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법인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제14조(제명) ①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1. 제12조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조합을 빙자하여 부당이익을 취한 경우
- ② 조합법인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제명대상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에게 총회 개최 10일전에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제명을 결정한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명의 사유를 추가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제4호부터 추가하여 열거합니다.

제 3 장 출자와 적립금 및 지분

제15조(출자)

- ① 본 조합법인에의 출자는 농지·농기계·현금·기타 현물로 할 수 있다.
- ② 농지·농기계 등 현물의 출자액 산출은 이사회(설립시는 창립총회)에서 정하는 평가율에 의하여 환가한다.
- ③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 ④ 조합원 1명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은 〇〇만원으로 한다.
- ⑤ 조합원은 〇〇좌이상의 출자를 불입하여야 하며, 준조합원은 〇〇좌이상의 출자를 불입하여야 한다. <중전의 제4항에서 이동>
-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조합법인에 농지를 출자하는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성명, 출자대상 농지 및 그 평가액과 농지출자 좌수를 별표와 같이 한다. <중전의 제5항에서 이동>
- ⑦ 현물로 출자한 농지는 해당 농지를 출자한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중전의 제6항에서 이동>

제16조(출자증서의 발행)

- ① 조합법인은 출자를 불입한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게 지체없이 출자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② 출자증서는 대표이사 명의로 발급하고 출자좌수, 출자액, 출자재산의 표시(토지의 경우 지번, 지목, 면적을 말한다)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조합법인이 토지 등을 취득하여 조합원과 준조합원에게 증좌 배분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출자의 균등화) 조합원의 출자를 균등화할 목적으로 소액 출자자에게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총회의 의결로써 회계년도말에 증좌를 허용할 수 있다.

㉠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조합법인은 제1항중「기타의 현물」을 가축(축종명시), 초지, 축산, 축산기계 등으로 적절히 규정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조합법인도 「기타의 현물」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출자증서의 발행은 출자지분의 상속공제 등 세금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출자재산 특히 토지의 경우는 지번, 지목, 면적 등이 기재된 출자증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제18조(법정적립금) 본 조합법인은 출자총액과 같은 금액이 될 때까지 매회계년도 이익금의 100분의 10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한다.

제19조(사업준비금) 본 조합법인은 장기적인 사업확장 및 다음년도의 사업운동을 위하여 매회계년도 이익금의 100분의 〇〇을 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다.

제20조(자본적립금) 본 조합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생기는 금액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한다.

1. 재산 재평가 차이
2. 합병에 의한 차이
3. 인수재산 차이
4. 외부로부터 증여된 현물 및 현금
5. 국고 보조금 등
6. 감자에 의한 차이
7. 고정자산에 대한 보험차익

제21조(적립금등의 사용 및 처분)

- 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적립금(이하“법정 적립금”이라 한다)과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립금(이하“자본적립금”이라 한다)은 조합법인의 결손을 보전하는데 사용한다.
- ② 법정적립금과 자본적립금은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탈퇴나 제명시 지분으로 환불할 수 없다.
- ③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준비금(이하“사업준비금”이라 한다)은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가입한 날부터 5년이내에 탈퇴하거나 제명되는 경우에는 환불할 수 없다.

㉠ 법정적립금으로 출자총액의 2배를 적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자총액과 같은 금액이 될 때까지」를 「출자총액의 2배에 달할 때까지」로 수정합니다.

㉡ 〇〇은 10이상 50이내에서 정합니다.

제22조(지분의 계산) 본 조합법인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지분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

1. 납입출자금에 대하여는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매회계년도마다 이를 계산한다. 다만, 그 재산이 납입출자액의 총액보다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각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출자액에 따라 감액하여 계산한다.
2. 사업준비금은 매회계년도마다 전조합원과 준조합원에게 분할하여 가산하되 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지분의 상속)

- ①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상속인으로서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분환불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자가 즉시 조합법인에 가입을 신청하고 조합법인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지분을 승계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의 가입신청과 조합법인의 가입승인은 제10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조합의 지분취득금지) 본 조합법인은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수입하지 못한다.

제25조(지분의 양도, 양수 및 공유금지) 조합원 및 준조합원은 총회의 승인의결 없이는 그 지분을 양도·양수 할 수 없으며 공유할 수 없다.

● 사업준비금 배분을 출자지분에 비례해야 할 경우에는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2. 사업준비금은 매회계년도마다 전조합원과 준조합원에게 분할하여 가산하되 조합원의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제26조(탈퇴시의 지분환불)

- ①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의 지분을 현금 또는 현물로 환불한다.
- ② 환불재산 가운데 토지나 건물 등이 조합법인의 공동경영조직을 깨뜨릴 염려가 있어 환불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토지 및 현금으로 지분할 수 있다.
- ③ 탈퇴 조합원 및 준조합원이 출자한 토지가 공동경영의 결과로 인하여 지력이 증대되었거나, 노력과 자본의 투자로 인하여 가치가 상승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토지를 환불받는 자로부터 징수한다.
- ④ 탈퇴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조합법인에 대하여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환불해야 될 지분에서 상계할 수 있다.
- ⑤ 지분의 환불은 당해 회계년도말에 한다.

제27조(출자액의 일부 환불)

- ①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법인에 대하여 출자액의 일부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불요구를 받은 조합법인은 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회계년도말에 환불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년도중에 환불하고, 회계년도말에 정산한다.

제 4 장 회 계

제28조(회계년도) 본 조합법인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29조(자금관리) 본 조합법인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 1.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은행, 신용금고에의 예치
- 2. 국채, 지방채, 정부보증채권 등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의 취득

▶ 조합법인의 사업성격에 따라 회계년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매년 4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3월 31일에 종료한다」 등

▶ 제1호의 경우 주로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30조(경리공개) 본 조합법인의 모든 장부는 사무소에 비치하여 항상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게 공개하며 주요계정에 대한 내역은 정기적으로 게시한다.

(비고)

제31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본 조합법인은 조합법인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수
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
으로 정할 수 있다.

(비고)

제32조(선급금제) 조합법인은 조합원에게 지불할 노임을 회계년도 말 결산전에 선급금으로 지불할 수 있다.

제33조(차입금) 조합법인은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34조(수익배분순위) 본 조합법인의 총수익은 다음 각호의 순서로 배분한다.

1. 제세공과금
2. 생산자재비, 임차료, 고용노임 및 생산부대비용(제잡비를 말한다)
3.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4. 조합원노임
5. 자산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6. 이월결손금 보전

㉠ 주요계정에 대한 내역의 정기적 게시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기적으로」를 「매월」 「분기마다」등으로 정합니다.

㉡ 조합법인의 사업에서 조합원이 아닌자가 부수적으로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조합법인이 농작업을 수탁하여 대행한 경우와 농기계 및 시설의 공공이용 등에 대하여 사용료 및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조합법인은 반드시 규정하여야 합니다.

제35조(이익금의 처분)

- ① 조합법인의 결산결과 발생한 매회계년도의 이익금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적립금,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준비금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조합원과 준조합원에게 배당한다.
- ② 제1항의 배당은 배당할 이익금의 총액을 전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당한다.

제36조(손실금의 처리) 조합법인의 결산결과 손실이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준비금으로 보전하고 사업준비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법정적립금 및 자본적립금이 순서로 보전하며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차년도에 이월한다.

제 5 장 임 원

제37조(임원의 수) 본 조합법인은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 1인
2. 이사 0인
3. 감사 0인
4. 총무 0인
5. 부장 0인

① 제2항의 배당을 달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② 제1항의 배당은 배당할 이익금의 100분의 30은 전조합원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100분의 70은 전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당한다.

① 조합법인의 조합원수, 사업규모 등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정수를 정합니다.

② 제5호의 부장은 조합법인의 사업에 따라 영농부장, 축산부장, 구매부장, 판매부장, 가공부장 등으로 명기합니다.

제38조(임원의 선출) 임원은 총회의 의결로 조합원중에서 선출한다.

제39조(이사회)

-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 이사 및 총무로 구성하며 대표이사가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이사 2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

제40조(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재적이사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부의할 안건
- 2. 업무를 운영하는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 3.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 4.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의결
- 5. 기타 조합법인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41조(이사회 의사록)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총무가 기록하여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한 후 보관한다.

제42조(임원의 임무)

- ① 대표이사는 본 조합법인을 대표하고 조합법인의 각종회의의 의장이 되며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고 조합법인의 경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 ② 감사는 회계년도마다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1회이상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서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조합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하고 결위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총무는 이사중에서 선임하며 조합법인의 일반사무와 회계사무를 담당한다.
- ⑤ 각 부장은 조합장과 총무를 보좌하며 각 부의 업무를 관장·집행한다.

☛ 조합법인의 형편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추가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제5항의 경우 각부의 업무관장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43조(임원의 책임)

- ① 본 조합법인의 임원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기관의 처분과 정관·규정·사업지침 및 총회와 이사회에 의결사항을 준수하여 본 조합법인을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태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법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단독 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 ③ 이사회가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법인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에 관련된 이사회에 출석한 구성원은 그 손해에 대하여 조합법인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그 회의에서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한 구성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제2항내지 제3항의 구상권의 행사는 이사회에 대하여는 대표이사, 대표이사와 이사에 대하여는 감사가, 임원 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의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 대표가 이를 행한다.

제44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 ③ 보궐선거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비고)

제45조(임원의 해임) 조합원이 임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어 총회에 해임을 요구하고 총회의 의결로써 해임한다.

제46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여비 등 필요한 경비는 별도 규정에 의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47조(서류비치의 의무)

-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조합법인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4항의 경우 조합법인의 형편에 따라「조합원의 3분의 1이상」을 적절히 정할 수 있습니다.

▶ 임원의 임기는 조정할 수 있으나, 감사와 감사이외의 임원 임기는 다르게 하여야 합니다.

1. 정관 및 규정
 2. 조합원과 준조합원 명부 및 지분대장
 3. 총회의사록
 4. 기타 필요한 서류
- ② 대표이사는 정기총회 1주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를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6 장 회의의 운영

제48조(총회)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49조(총회의 소집)

- ① 정기총회는 회계년도마다 1회 0월에 대표이사가 소집하며 대표이사는 총회소집 5일전까지 회의내용과 회의자료를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임시총회는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1. 대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가 없을 때
 2. 제2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대표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2주일 이내에 총회소집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때
 3. 감사가 조합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사업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사실을 발견하여 이를 신속히 총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을 때

제50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해산·합병 또는 분할
4.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가입·탈퇴 및 제명
5.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승인·책정과 변경
6. 사업보고서, 결산서, 이익금 처분 및 결손금 처리
7. 출자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선출
9. 임기중 임원의 해임

☛ 조합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추가로 열거합니다.

제 7 장 해 산

제55조(해산) 본 조합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된다.

1. 총회에서 해산 및 합병을 의결한 경우
2. 파산한 경우 및 법원의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3. 조합원이 5인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인 이상이 되지 아니한 경우

제56조(청산인) 본 조합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은 대표이사가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7조(청산인의 직무)

- ① 청산인은 취임후 지체없이 재산상황을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청산사무가 종결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청산인은 그 취임후 3주일이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를登記하여야 한다.

제58조(청산재산의 처리) 해산의 경우 조합법인의 재산은 채무를 완제하고 잔여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합원과 준조합원에게 분배한다.

1. 출자금액은 출자조합원과 출자준조합원에게 환급하되 출자총액에 미달시는 출자액의 비례로 분배한다.
2. 자본적립금, 법정적립금, 사업준비금은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본 정관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 조합법인의 해산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호부터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 조합법인이 해산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해산등기를 해야 합니다.

<h1 style="text-align: center;">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정관(예)</h1> <p style="text-align: center;">■ 개정 2015. 10. 1,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39호</p>	유의사항
<h2 style="text-align: center;">제 1 장 총 칙</h2> <p><u>제1조(상호) 본 회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그 명칭은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라 칭한다.</u></p> <p><u>제2조(목적) 본 회사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생산된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제3조(주주의 자격) 본 회사의 주주는 농업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로 하되 제10조에서 정한 출자한도 내에서 출자한 농업인이나 농업관련 생산자단체가 아닌자(이하 “비농업인”이라 한다)도 주주가 될 수 있다.</u></p>	<p>① 상호는 반드시「농업회사법인」과「주식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밖의 제한은 없지만 동일한 시·군내에서 동종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나 어느 회사의 지점이나 출장소 등과 같이 회사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 일부임을 표시하는 듯한 상호로는 등기할 수 없음을 유의합니다.</p> <p>② 농업관련 생산자단체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생산자단체를 말합니다.</p>

제4조(사업)

- ① 본 회사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과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한다.
- ② 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한다.
 - 1.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 2.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 대행
 - 3.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 4. 영농에 필요한 종묘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 5. 농산물의 매취·비축사업
 - 6. 농업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수리·보관사업
 - 7.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
 - 8.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제5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의 설치)

- ① 본 회사의 본점은 ○○(시·도) ○○(시·군·구) ○○(읍·면) ○○(도로명)에 둔다.
- ② 본 회사는 필요한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지점, 영업소,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6조(광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사항은 ○○시도에서 발간되는 ○○신문에 게재한다.

㉠ 제2조의 목적과 부합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부대사업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이면 수개의 사업을 목적으로 해도 무방하나 그 영업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물품도매업” 등과 같이 추상적으로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 그 소재장소의 지번까지 확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 행정구역까지만 정해도 무방합니다.

㉢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이의 기재여부는 회사의 임의에 속합니다.

㉣ 공고는 관보나 시사에 관한 일간신문에 게재해야 하므로 주간지나 스포츠신문 등에는 게재할 수 없고 수개의 신문지에 동시에 공고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또한 공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한다고 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상법 시행령 제6조의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제7조(준립기간) 본 회사의 준립기간은 회사성립일로부터 만 〇〇년으로 한다.

제 2 장 주식과 주권

제8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〇〇만주로서 보통주식으로 한다.

제9조(우선주식의 내용) 우선주식의 이익배당률은 연 1할로서 당해결산기의 이익배당률이 그에 미달할 때에는 다음 결산기에 그를 우선하여 배당받는다.

제10조(후배주식의 내용) 후배주식은 보통주식에 대하여 연 〇분의 이익배당을 하고 잉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의결권 없는 주식) 우선주식의 주주는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12조(상환주식) 상환주식은 주식발행후 〇년이내에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서 상환할 수 있다. 이때 상환가액은 1주당 금 〇〇원으로 한다.

제13조(1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〇〇원으로 한다.

제14조(비농업인의 출자한도) 비농업인이 출자하는 출자액의 합계는 본 회사의 총출자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회사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〇만주로 한다.

제16조(주권) 본 회사의 주식은 기명주식으로서 주권은 1주권, 10주권, 100주권 3종으로 한다.

이 사항은 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며 이를 정한 경우에 한하여 정관에 기재한다.

주식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서 균일해야 합니다.

단, 총 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 출자액에서 8억을 제외한 금액까지 출자할 수 있다고 정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주권의 명의개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본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상속, 유증 기타 계약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본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 및 취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유례] 명의개서대리인을 두기로 한 때
제○조 본 회사는 주주명부의 기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다. 명의개서대리인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선정한다.

제14조(주식의 양도제한)

- ① 본 회사의 주식은 이사회 승인이 없으면 양도할 수 없다.
- ② 전항과 관련 비농업인인 주주에게 양도하여 비농업인의 총출자액이 제10조에서 규정한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는 효력이 없다.
- ③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하여 비농업인의 총출자액이 제10조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지분을 지체없이 농업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15조(주권의 재발행)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때에는 본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 1. 주권을 상실한 때에는 확정된 제권판결정본
- 2. 주권을 훼손한 때에는 그 주권, 다만 훼손으로 인하여 그 진위를 판별할 수 없는 때에는 전항에 준한다.

제16조(주주의 주소신고 등) 주주나 등록질권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성명주소 및 인감을 신고해야 한다. 그 변경이 있는 때에도 역시 같다.

제17조(주주명부의 폐쇄) 본 회사는 매 결산기 종료일 익일부터 그 결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종료일까지 주주명부기재의 변경을 정지한다.

제 3 장 주주총회

제18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정기주주총회는 매 결산기 종료후 1월 내에 이를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19조(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대표이사가 유고인 때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다른 이사가, 다른 이사 전원이 유고인 때에는 출석한 주주중에서 선임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결의사항) 주주총회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2. 주식의 분할
3.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제21조(결의)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그 의결권을 과반수로 한다.

제22조(의결권의 대리행사) 주주는 본 회사의 주주중에서 정한 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총회 개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제 4 장 이사와 감사

제23조(이사과 감사의 수) 본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

제24조(선임)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되 이사의 3분의 1 이상은 농업인으로 한다.

☛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으며, 감사의 경우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25조(업무집행과 회사대표) 본 회사의 업무집행과 회사대표는 이 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한 대표이사가 행한다.

제26조(임기) 이사와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결산시까지로 한다. 다만 재임중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이전에 그 임기가 만료될 때에는 그 총회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보선) 이사와 감사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임시주주총회에서 그를 보선한다. 다만 그 법 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보선된 이어나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8조(보수)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정한다.

제 5 장 이사회

제29조(이사회) 본 회사의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정기이사회는 매월 최초의 월요일에,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를 소집한다.

제30조(지배인의 임면)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영업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고 보조하기 위한 지배인(혹은 지점장, 영업부장)을 둘 수 있다.

제31조(소집권자와 의장)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대표이사의 유고중에는 제19조의 순서에 따라 다른 이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사항을 반드시 정관에 기재해야 합니다.

●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제39조(해산의 통지)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외에는 대
표이사는 지체없이 주주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한다.

제40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의결)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
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8 장 청 산

제41조(청산방법) 본 회사가 해산한 경우, 회사재산의 처분은 주주
총회의 동의로써 정한 방법에 의한다.

제42조(청산인의 임면)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은 주주총회의 결의
에 의한다.

제43조(잔여재산의 분배)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한다.

[유례]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제○조(현물출자) 본 회사의 설립당시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
출자목적인 재산, 그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는 다음과 같다.

1. 출자자 발기인 ○ ○ ○ () 주민등록번호 : -
2. 출자재산 ○○(시·도) ○○(시·군·구) ○○(읍·면) ○○(도로명)
대 ○○m² 위 지상 철근 콘크리트 3층 사무소 1층 ○○m² 2층 ○
○m² 3층 ○○m²
3. 출자재산의 평가액 : 금○○○원
4. 이에 부여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위 성명 다음의 () 내는 농업인인 경우 '농업인', 생산자단체
인 경우 생산자단체명, '비농업인'인 경우 '비농업인'을 기재하
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제44조(적용범위)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어업 경영체 육
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상법 및 기타 법령에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45조(세부내규)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회사 세부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46조(최초의 영업년도) 본 회사의 제1기 영업년도는 본 회사 설립일로부터 서기 년월일까지로 한다.

제47조(최초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 본 회사의 최초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그 취임후 최초의 정기주주총회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48조(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본 회사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는 이 정관 말미의 기재와 같다.

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사원전원이 이에 기명 날인한다.

서기 년 월 일

발기인 ○ ○ ○ (인)

○○(시·도) ○○(시·군·구) ○○(읍·면) ○○(도로명)

발기인 ○ ○ ○ (인)

○○(시·도) ○○(시·군·구) ○○(읍·면) ○○(도로명)

발기인 ○ ○ ○ (인)

○○(시·도) ○○(시·군·구) ○○(읍·면) ○○(도로명)

(발기인 전원 연기명 날인한다.)

● 주식회사의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 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농업회사법인 합병회사 정관(예)

■ 개정 2015. 10. 1.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38호

정관 작성시 유의사항

제1장 총칙

제1조(상호) 본 회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그 명칭은 농업회사법인○○합병회사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사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생산된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의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① 본 회사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과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한다.

② 본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한다.

1.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2.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대행
3.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4. 영농에 필요한 종묘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5. 농산물의 매취·비축사업
6. 농업기계 기타장비의 임대·수리·보관사업
7.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
8.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 상호는 반드시 「농업회사법인」과 「합병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제2조의 목적과 부합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의 부대사업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이면 수개의 사업을 목적으로 해도 무방하나, 그 영업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막연히 “물품 도매업” 등과 같이 추상적으로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제1항의 ○○ 내에는 농업경영 외의 사업으로서 회사가 역점을 두는 사업을 기재합니다.

제4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의 설치)

- ① 본 회사의 본점은 ○○(시·도) ○○(시·군·구) ○○(읍·면) ○○(도로명)에 둔다.
- ② 본 회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총사원의 결의로 지점, 영업소,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5조(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사항은 ○○시·도에서 발간되는 ○○신문에 게재한다.

제2장 사원과 출자

제6조(사원의 자격) 본 회사의 사원은 농업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로 하되 제7조에서 정한 출자한도 내에서 출자한 농업인이나 농업관련 생산자단체가 아닌 자(이하 비농업인이라 한다)도 사원이 될 수 있다.

제7조(비농업인의 출자한도) 비농업인이 출자하는 출자액의 합계는 본 회사의 총출자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 소재지번까지 기재하지 않고 최소행정구역까지만 기재해도 무방하며 지점의 소재지는 그를 설치할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 단, 총 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 출자액에서 8억을 제외한 금액까지 출자할 수 있다고 정할 수 있습니다.

제8조(사원의 성명, 주소 및 출자) 사원의 성명과 주소, 그 출자의 목적, 가격 또는 평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금○○○원 성명 ○ ○ ○ () 주민등록번호 :
○○(시·도) ○○(시·군·구) ○○(읍·면) ○○(도로명)
1. ○○(시·도) ○○(시·군·구) ○○(읍·면) ○○(도로명)
대 ○○○○㎡
위 지상 목조 기와지붕 2층 사무실
건평 1층 ○○㎡
2층 ○○㎡
가격 금 ○○○○○원
성명 ○ ○ ○ () 주민등록번호 : -
○○(시·도) ○○(시·군·구) ○○(읍·면) ○○(도로명)
1. 채권 금 ○○○○○원 단, ○○○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약속
어음 금 가격 금 ○○○○○원
성명 ○ ○ ○ () 주민등록번호 : -
○○(시·도) ○○(시·군·구) ○○(읍·면) ○○(도로명)
1. 노무 단, 회사를 위하여 ○○○을 하는 것
가격표준 1년 금 ○○○원
성명 ○ ○ ○ () 주민등록번호 : -
○○(시·도) ○○(시·군·구) ○○(읍·면) ○○(도로명)
1. 신용 평가표준 1년 금 ○○○원
성명 ○ ○ ○ () 주민등록번호 : -
○○(시·도) ○○(시·군·구) ○○(읍·면) ○○(도로명)
※ 위 성명 다음의 () 내는 농업인인 경우 '농업인', 생산자단체인 경우 생산자단체명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생산자단체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 사원의 성명, 주소 그 출자목적과 가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등기의 경우와는 달리 출자의 이행부분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출자목적이란 출자의 대상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금액에 한하지는 않고 동산, 부동산, 채권, 유가증권 등 기타 재산상의 출자는 물론 노무나 신용 등 비재산상의 출자도 무방합니다. 재산상의 출자인 경우에는 그 금액이나 가액도 기재해야 하나 노무나 신용 등 비재산상의 출자인 경우에는 그를 기재할 필요 없습니다.

제9조(지분양도)

- ① 사원은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에 의하여 그 지분의 전부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경우 비농업인인 사원에게 양도하여 비농업인의 총출자액이 제7조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그 양도는 효력이 없다.
- ③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하여 비농업인의 총출자액이 제7조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지분을 지체없이 농업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10조(경업금지)

- ①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될 수 없다.

제11조(자기거래) 사원은 다른 사원 과반수의 승낙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없다.

제 3 장 업무집행과 회사대표

제12조(업무집행과 대표사원) 본 회사는 사원 ○○○을(를) 업무집행사원 겸 대표사원으로 한다.

[유례] 1. 수인이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경우 본 회사는 사원 ○○○과(와) 사원○○○이 공동하여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한다.

[유례] 2. 수인이 업무를 집행하고 그중 1인이 회사를 대표하는 경우 본 회사는 사원 ○○○, 사원 ○○○을(를) 업무집행사원으로 하고 사원 ○○○을(를)대표사원으로 한다.

제13조(선임과 임기) 업무집행사원과 대표사원은 총사원의 동의로 선임하고 임기는 각 3년으로 한다.

제14조(통지의무)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다른 사원의 청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그 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합명회사의 각 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상법 제200조). 즉 각 사원은 별도로 선임행위를 거치지 않고 당연히 업무집행기관을 구하고, 정관에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다른 사원의 업무집행권한은 박탈됩니다(상법 제201조제1항). 또한 정관으로 모든 사원 또는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만 업무를 집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02조).

● 업무집행사원과 대표사원의 임기는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15조(지배인의 임면) ① 회사의 영업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고 보조하기 위한 지배인(혹은 지점장, 영업부장)을 둘 수 있다.
②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은 사원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한다.

제16조(권한상실)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에게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원은 과반수의 결의로써 법원에 그 권한상실신고를 청구할 수 있다.

1. 업무집행 또는 회사대표에 현저히 부적임한 때
2. 기타 중대한 의무위반이 있는 때

제 4 장 사원의 입사와 퇴사

제17조(입사) 총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새로운 사원으로 입사할 수 없다.

제18조(퇴사) 각 사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영업년도 말에 한하여 퇴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6개월 전에 이를 예고 하여야 한다.

제19조(퇴사사유) 사원은 지분압류가 있는 경우 외에 다음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다.

1. 총사원의 동의
2. 사망
3. 파산
4. 금치산
5. 제명

제20조(상속) 재산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피상속인의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될 수 있다.

[유례] ① 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내에 그 승계여부를 회사에 통지해야 하고 위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계하지 않는 뜻으로 본다.

제21조(제명) 사원에게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원은 과반수의 결의로 법원에 그 사원의 제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1. 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사원의 경업금지의무에 위반한 때
3. 회사의 업무집행과 회사대표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거나 권한없이 업무를 집행 하거나 회사를 대표한 때
4. 기타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

제22조(지분의 환급)

- ① 퇴사한 사원은 퇴사당시 회사재산에서 그 출자비율에 따라 그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노무 또는 신용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사원과 제명선고로 인하여 퇴사한 사원은 그 지분을 환급 받지 못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농지를 출자한 비농업인 사원이 퇴사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에 상당하는 현금 등으로 그 지분을 환급할 수 있다.

🔍 정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때에는 상법 제222조에 따라 노무 또는 신용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도 그 지분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5장 계산

제23조(영업연도) 본 회사의 영업연도는 매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로 한다.

제24조(계산서류의 승인) 업무집행사원은 매 영업연도말에 각 사원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재산목록 및 사원별 출자내역
2. 대차대조표
3. 영업보고서
4. 손익계산서
5. 이익배당에 관한 의안

제25조(이익배당)

- ① 본 회사는 순익금으로 결손금을 채운 후가 아니면 어떠한 명목으로도 사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없다.
- ② 각 사원의 이익배당비율은 그 출자액의 비율에 의한다.

제6장 해산

제26조(존립기간) 본 회사의 존립기간은 설립등기일로부터 만 ○○년간으로 한다.

제27조(해산사유) 본 회사는 다음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제26조에서 정한 존립기간의 만료
2. 총사원의 동의
3.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4. 합병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제28조(회사계속)

- ① 제27조 제1호와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써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아니한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본다.
- ② 제27조 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원을 가입시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29조(합병) 본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9조(합병) 본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정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때에는 상법 제222조에 따라 노무 또는 신용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도 그 지분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며,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사원은 영업년도말에 한하여 퇴사할 수 있습니다.

제7장 청산

제30조(청산방법) 본 회사가 해산한 경우, 회사재산의 처분은 총사원의 동의로써 정한 방법에 의한다.

제31조(청산인의 임면)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은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제32조(잔여재산분배) 잔여재산은 각 사원의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되 농지는 농업인 사원에게 분배한다.

제33조(적용범위)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상법 및 기타 법령에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34조(세부내규)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총사원의 결의로써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회사 세부내규를 정할 수 있다.

위 농업회사법인 ○○합명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각 사원이 이에 기명 날인한다.

서기 년 월 일

농업회사법인 ○○합명회사

사원 ○ ○ ○ (인)

(이하 사원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제00조(○○○○)

●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정관과는 달리 공증인의 인증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농업회사법인 합자회사 정관(예)

■ 개정 2015. 10. 1.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40호

정관 작성시 유의사항

제1장 총칙

제1조(상호) 본 회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그 명칭은 농업회사법인○○합자회사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사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생산된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제3조(사업)

① 본 회사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과 ○○사업을 주사업으로 한다.

② 본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한다.

1.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2.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대행
3.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4. 영농에 필요한 종묘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5. 농림수산물의 매취·비축사업
6. 농업기계 기타장비의 임대·수리·보관사업
7.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
8.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 상호는 반드시「농업회사법인」과「합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제2조의 목적과 부합하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의 부대사업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이면 수개의 사업을 목적으로 해도 무방하나, 그 영업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막연히 “물품 도매업” 등과 같이 추상적으로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제1항의 ○○ 내에는 농업경영 외의 사업으로서 회사가 역점을 두는 사업을 기재합니다.

제4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의 설치)

- ① 본 회사의 본점은 ○○(시·도) ○○(시·군·구) ○○(읍·면) ○○(도로명)에 둔다.
- ② 본 회사는 필요한 경우는 총사원의 결의로 지점, 영업소,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5조(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사항은 ○○시도에서 발간되는 ○○신문에 게재한다.

제 2 장 사원과 출자

제6조(사원의 자격) 본 회사의 사원은 농업인, 농산물의 생산자 단체로 하되 제7조에서 정한 출자한도 내에서 출자한 비농업인도 사원이 될 수 있다. 단, 농산물의 생산자 단체 및 비농업인은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

제7조(비농업인의 출자한도) 농업인, 농산물의 생산자 단체가 아닌 자가 출자하는 출자액의 합계는 본 회사의 총출자액의 10분의 9을 초과할 수 없다.

⦿ 소재지번까지 기재하지 않고 최소행정구역까지만 기재해도 무방하며 지점의 소재지는 그를 설치할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생산자 단체를 말합니다.

제8조(사원의 성명·주소 및 출자) 사원의 성명과 주소 및 책임과 그 출자의 목적, 가격 또는 그 평가의 표준은 다음과 같다.

1. 금 〇〇〇원 무한책임사원 〇 〇 〇 () 주민등록번호 : 〇〇(시·도) 〇〇(시·군·구) 〇〇(읍·면) 〇〇(도로명)
 1. 〇〇(시·도) 〇〇(시·군·구) 〇〇(읍·면) 〇〇(도로명) 대 〇〇〇〇㎡ 위 지상 목조 기와지붕 이층 사무실 건평 1층 〇〇㎡ 2층 〇〇㎡ 가격 금 〇〇〇〇〇원 무한책임사원 〇 〇 〇 () 주민등록번호 : - 〇〇(시·도) 〇〇(시·군·구) 〇〇(읍·면) 〇〇(도로명)
 1. 채권 금 〇〇〇〇〇원 단, 〇〇〇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약속어음 금 가격 금 〇〇〇〇〇원 유한책임사원 〇 〇 〇 () 주민등록번호 : - 〇〇(시·도) 〇〇(시·군·구) 〇〇(읍·면) 〇〇(도로명)
 1. 노무 단, 회사를 위하여 〇〇〇을 하는 것 가격표준 1년 금 〇〇 〇원 무한책임사원 〇 〇 〇 () 주민등록번호 : - 〇〇(시·도) 〇〇(시·군·구) 〇〇(읍·면) 〇〇(도로명)
 1. 신용 평가표준 1년 금 〇〇〇원 무한책임사원 〇 〇 〇 () 주민등록번호 : - 〇〇(시·도) 〇〇(시·군·구) 〇〇(읍·면) 〇〇(도로명)
- ※ 위 성명 다음의 () 내는 농업인인 경우 '농업인', 생산자단체인 경우 생산자단체명, '비농업인'인 경우 '비농업인'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제9조(지분양도)

- ① 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경우 비농업인인 사원에게 양도하여 비농업인의 총출자액이 제7조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그 양도는 효력이 없다.
- ③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하여 비농업인의 총출자액이 제7조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지분을 지체없이 농업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10조(유한책임사원의 경업의 자유) 유한책임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있고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 사원 또는 이사가 될 수 있다.

제11조(자기거래) 사원은 다른 사원 과반수의 승낙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없다.

● 사원의 성명, 주소 그 출자목적과 가격 및 유한·무한 책임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등기의 경우와는 달리 출자의 이행부분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출자목적이란 출자의 대상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금액에 한하지는 않고 동산, 부동산, 채권, 유가증권 등 기타 재산상의 출자는 물론 노무나 신용 등 비재산상의 출자도 무방합니다. 다만, 유한책임사원은 비재산상의 출자는 할 수 없습니다.

재산상의 출자인 경우에는 그 금액이나 가액도 기재해야 하나 노무나 신용 등 비재산상의 출자인 경우에는 그를 기재하지 아니해도 무방합니다.

제 3 장 업무집행과 회사대표

제12조(업무집행사원과 대표사원) 본 회사는 무한책임사원 ○○
○을(를) 업무집행사원 겸 대표사원으로 한다.

[유례] 1. <수인이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경우> 본 회
사는 무한책임사원 ○○○과(와) 동 ○○○이 공동하여 업무를 집
행하고 회사를 대표한다.

[유례] 2. <수인이 업무를 집행하고 그중 1인이 회사를 대표하는
경우> 본 회사는 무한책임사원 ○○○과 동 ○○○을(를) 업무집행
사원으로 하고 동 ○○○을(를) 대표사원으로 한다.

제13조(선임과 임기) 업무집행사원과 대표사원은 총사원의 동의
로 선임하고 임기는 각 2년으로 한다.

제14조(통지의무)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다른
사원의 청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그 사
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5조(지배인의 임면)

- ① 회사의 영업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고 보조하기 위
한 지배인(혹은 지점장, 영업부장)을 둘 수 있다.
- ②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은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
한다.

제16조(권한상실)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에게 다
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원은 과반수의 결의로서 법원에 그
권한상실신고를 청구할 수 있다. 1. 업무집행 또는 회사대표에 현
저히 부적임한 때 2. 기타 중대한 의무위반이 있는 때

➡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 업무집행사원과 대표사
원의 임기는 정관에서 달
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사원의 입사와 퇴사

제17조(입사) 총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새로운 사원으로 입사할 수 없다.

제18조(퇴사) 각 사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영업년도말에 한하여 퇴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6개월 전에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제19조(퇴사사유) 사원은 지분압류가 있는 경우 외에 다음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다.

1. 총사원의 동의
2. 사망
3. 파산 또는 해산
4. 금치산
5. 제명

제20조(상속) 재산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피상속인의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될 수 있다.

[유례]

- ① 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될 수 있다.
- ②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내에 그 승계여부를 회사에 통지해야 하고 위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계하지 않는 뜻으로 본다.

제21조(제명) 사원에게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원은 과반수의 결의로 법원에 그 사원의 제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1.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사원의 경업금지의무에 위반한 때
3. 회사의 업무집행과 회사대표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거나 권한없이 업무를 집행하거나 회사를 대표한 때
4. 기타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때

제22조(지분의 환급)

- ① 퇴사한 사원은 퇴사당시 회사재산에서 그 출자비율에 따라 그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노무 또는 신용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사원과 제명선고로 인하여 퇴사한 사원은 그 지분을 환급 받지 못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농지를 출자한 비농업인 사원이 퇴사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에 상당하는 현금 등으로 그 지분을 환급할 수 있다.

제5장 계산

제23조(영업연도) 본 회사의 영업연도는 매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로 한다.

제24조(계산서류의 승인) 업무집행사원은 매 영업년도말에 각 사원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재산목록 및 사원별 출자내역
2. 대차대조표
3. 영업보고서
4. 손익계산서
5. 이익배당에 관한 의안

제25조(이익배당)

- ① 본 회사는 순익금으로 결손금을 채운 후가 아니면 어떠한 명목으로도 사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없다.
- ② 각 사원은 이익배당비율은 그 출자액의 비율에 의한다.

제 6 장 해 산

제26조(존립기간) 본 회사의 존립기간은 설립등기일로부터 만 ○○년으로 한다.

제27조(해산사유) 본 회사는 다음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제26조 소정 존립기간의 만료
2. 총사원의 동의
3.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 전원의 퇴사
4. 합병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제28조(회사계속) ① 제27조 제1호와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써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아니한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본다.

② 제27조 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원을 가입시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29조(합병) 본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기간은 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제 7 장 청 산

제30조(청산방법) 본 회사가 해산한 경우, 회사재산의 처분은 총사원의 동의로써 정한 방법에 의한다.

제31조(청산인의 임면) 청산인이 선임 및 해임은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제32조(잔여재산분배) 잔여재산은 각 사원의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되 농지는 농업인 사원에게 분배한다.

제33조(적용범위)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상법 및 기타 법령에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34조(세부내규)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총사원의 결의로써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회사 세부내규를 정할 수 있다.

위 농업회사법인 ○○합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각 사원이 이에 기명 날인한다.

서기 년 월 일

농업회사법인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 ○ ○ ○ (인)

(이하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정관과는 달리 공증인의 인 증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정관(예)

■ 개정 2015. 10. 1,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40호

정관 작성시 유의사항

제1장 총칙

제1조(상호) 본 회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그 명칭은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사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생산된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의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 ① 본 회사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과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한다.
- ② 본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한다.
 1.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2.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 대행
 3.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4. 영농에 필요한 종묘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5. 농산물의 매취·비축사업
 6. 농업기계, 기타장비의 임대·수리·보관사업
 7.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
 8.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 상호는 반드시「농업회사법인」과「유한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제2조의 목적과 부합하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의 부대사업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이면 수개의 사업을 목적으로 해도 무방하나, 그 영업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막연히“물품 도매업”등과 같이 추상적으로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제1항의 ○○ 내에는 농업경영 외의 사업으로서 회사가 역점을 두는 사업을 기재합니다.

제4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의 설치)

- ① 본 회사의 본점은 ○○(시·도) ○○(시·군·구) ○○(읍·면) ○○(도로명)에 둔다.
- ② 본 회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총사원의 결의로 지점, 영업소,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5조(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사항은 ○○시도에서 발간되는 ○○신문에 게재한다.

제6조(자본의 총액) 본 회사의 자본의 총액은 금○○만원으로 한다.

제7조(준립기간) 본 회사의 준립기간은 회사 성립일로부터 만 ○○년으로 한다.

제2장 사원과 출자

제8조(사원의 자격) 본 회사의 사원은 농업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로 하되, 제9조에서 정한 출자한도 내에서 출자한 농업인이나 농업관련 생산자단체가 아닌자(이하 비농업인이라 한다)도 사원이 될 수 있다.

제9조(비농업인의 출자한도) 비농업인이 출자하는 출자액의 합계는 본 회사의 총출자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 소재지번까지 기재하지 않고 최소행정구역까지만 기재해도 무방하며 지점의 소재지는 그를 설치할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소재지번까지 기재하지 않고 최소행정구역까지만 기재해도 무방하며 지점의 소재지는 그를 설치할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 자본의 총액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 기간은 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며 이를 정한 경우에 한하여 정관에 기재합니다.

● 농업관련 생산자 단체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생산자 단체를 말하며, 총 출자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 출자액에서 8억을 제외한 금액까지 출자할 수 있다고 정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출자의 좌수 및 1좌의 금액) 본 회사의 자본은 이를 0000좌로 나누고, 1좌의 금액은 00000원으로 한다.

제11조(사원의 성명, 주소 및 출자좌수) 사원의 성명, 주소 및 그 출자좌수는 다음과 같다.

2,000좌 성명 000() 주민등록번호 : -
00(시·도) 00(시·군·구) 00(읍·면) 00(도로명)

2,000좌 성명 000() 주민등록번호 : -
00(시·도) 00(시·군·구) 00(읍·면) 00(도로명)

1,000좌 성명 000() 주민등록번호 : -
00(시·도) 00(시·군·구) 00(읍·면) 00(도로명)

[유례] 사원의 성명, 주소 및 그 출자좌수는 말미 기재와 같다.

※ 위 성명 다음의 () 내는 농업인인 경우 '농업인', 생산자단체인 경우 생산자단체명, '비농업인'인 경우 '비농업인'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제12조(지분의 양도제한)

- ① 사원은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② 전항과 관련, 지분을 비농업인 사원에게 양도하여 비농업인의 총출자액이 제9조에서 규정한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는 효력이 없다.
- ③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하여 비농업인의 총출자액이 제9조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지분을 지체없이 농업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3장 사원총회

제13조(사원총회) 본 회사의 사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3월과 9월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총회의 소집) 사원총회는 대표이사가 회의일자 5일전까지 회의 일자와 회의 목적·사항 등을 각 사원에게 통지하여 이를 소집한다.

① 1좌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서 균일해야 한다.

제15조(결의방법) 사원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지는 사원이 출석하고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제16조(의결권) 각 사원은 출자 1좌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17조(의장) 사원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되고 대표이사가 유고인 때에는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 장 임 원

제18조(임원) 본 회사는 이사 3인과 감사 1인을 두되 이사 중 2인 이상은 농업인이어야 한다.

제19조(선임) 이사와 감사는 사원인 자 중에서 사원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제20조(임기)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21조(대표이사) 본 회사는 대표이사 1인을 둔다. 단, 대표이사는 사원총회에서 선임한다.

제22조(업무집행과 회사대표) 본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 과반수로서 결정하고 회사의 대표는 대표이사가 행한다.

제23조(지배인의 임면) ① 회사의 영업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고 보조하기 위한 지배인(혹은 지점장, 영업부장)을 둘 수 있다.
②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은 사원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한다.

☞ 의결권의 수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이사는 1인 이상 반드시 두어야 하나 감사는 두지 아니할 수도 있으며, 이사 중 농업인의 수는 이사 총수의 3분의1 이상의 정수로 정합니다.

☞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대표이사는 수인으로 정할 수도 있는 바, 그 경우 특히 수인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한 때에는 정관에 기재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 산

제24조(영업연도) 본 회사의 영업연도는 매년 ○월 ○일로부터 ○월 ○일까지로 한다.

제25조(이익배당) 본 회사의 이익배당금은 매 결산기 말일 현재의 사원에게 그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배당한다.

제26조(장부의 열람) 본 회사의 사원은 언제든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서 회계에 관한 장부 및 기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 6 장 해 산

제27조(해산사유) 본 회사는 다음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의 만료
2. 사원총회의 결의
3.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4. 합병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제28조(청산인) 본 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당시의 대표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제29조(잔여재산분배) 잔여재산은 각 사원의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되 농지는 농업인 사원에게 분배한다.

☉ 해산사유는 상법 제227조 및 제609조 제1항의 사유로서 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며 정관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기재합니다.

제30조(재산인수) 회사성립 후 양수할 것을 약정한 계산, 그 가격 및 양도인의 성명은 다음과 같다.

1. 양도인의 성명 ○ ○ ○ () 주민등록번호 - ○○(시·도) ○○(시·군·구) ○○(읍·면) ○○(도로명)
2. 재산의 종류 및 수량 ○○○○
3. 가격 금 ○○○원 ※ 위 성명 다음의 () 내는 농업인인 경우 '농업인', 생산자단체인 경우 생산자단체명, '비농업인'인 경우 '비농업인'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제31조(현물출자) 본 회사의 설립당시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 재산의 종류·수량·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출자좌수는 다음과 같다.

1. 현물출자자의 성명 사원 ○ ○ ○ () 주민등록번호 : -
2. 출자목적인 재산의 종류 및 수량 ○○○○○○
3. 출자자산의 가격 금○○○원
4.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출자좌수 ○좌

※ 위 성명 다음의 () 내는 농업인인 경우 '농업인', 생산자단체인 경우 생산자단체명, '비농업인'인 경우 '비농업인'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제32조(적용범위)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어업 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상법 및 기타 법령에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33조(세부내규) 회사는 필요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로써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회사 세부내부를 정할 수 있다. 위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사원전원이 이에 기명 날인한다.

서기 년 월 일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
 사원 ○ ○ ○ (인)
 (이하 사원전원이 기명날인)

➡ 이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 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농업법인 설립등기 신청서식 및 작성요령 안내

영농조합법인 설립등기 신청서

접 수	0000년 00월 00일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통지등
	제 호					

신청인 0000한우 영농조합법인

위 대리인 법무사 0 0 0
 충청북도 00시 00구 00동 000
 전 화 :
 팩 스 :

00지방법원 등기과 귀중

영농조합법인 설립등기 신청서

1. 명 칭 : 0000한우 영농조합법인
1. 주사무소 : 충청북도 00시 00구 00동 000
1. 등기목적 : 영농조합법인 설립등기.
1. 등기사유 :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2000. 00. 00. 정관을 작성하고, 2000.00. 00. 창립총회 결의를 거쳐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절차를 종료 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 사항
 - (1) 명 칭 : 0000한우 영농조합법인
 - (2) 주사무소 : 충청북도 00시 00구 00동 000
 - (3) 사업과 목적 : 본 조합법인은 생산성향상을 위한 협업적 농업의 경영과 00사업을 주사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한다.
 1.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2. 집단재배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3. 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농기계 및 시설의 대여사업
 5. 농작업의 대행
 6. 농산물의 공동출하, 가공 및 수출
 7. 기타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4) 법인의 해산사유 : 본조합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된다.
 1. 총회에서 해산 및 합병을 의결한 경우.
 2. 파산한 경우.
 3. 조합원이 5인 미만이 된 후 1년이내에 5인 이상이 되지 아니한 경우.

- (5) 출자 1좌의 금액 : 금5,000원
- (6) 출자액의 납입방법 : 농지, 현금 기타현물(농기계, 가축, 창고, 차량등)을 창립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납입일자에 일시 납입한다.
- (7) 출자액의 산정방법 : 현물출자재산의 평가액 산정은 창립총회, 조합원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평가율에 의하여 환가한다.
- (8) 조합원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최고한도 : 총출자좌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9) 출자의 총좌수와 납입출자액의 총액 : 50,000좌, 금250,000,000원
- (10) 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
- 이 사 0 0 0 (000000 - 0000000)
- 이 사 0 0 0 (000000 - 0000000)
- 이 사 0 0 0 (000000 - 0000000)
- 이 사 0 0 0 (000000 - 0000000)
- (11) 법인을 대표할 대표이사의 성명 및 주소 :
- 대표이사 0 0 0
- 충청북도 00시 00구 00동 000
- (12)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
- 감 사 0 0 0 (000000 - 0000000)
1. 등록세 :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에 의하여 면제
1. 농어촌 특별세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에 의하여 면제
1. 국민주택채권 : 상법에 의한 법인이 아니므로 매입 면제
1. 등기신청수수료 증지 : 금30,000원

[양식 제65-1호] 주식회사설립등기(발기설립)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등기관 확인	각종 통지
	제 호			

등 기 의 목 적	주식회사 설립
등 기 의 사 유	
본/지점 신청구분	1. 본점신청 <input type="checkbox"/> 2. 지점신청 <input type="checkbox"/> 3. 본·지점 일괄신청 <input type="checkbox"/>
등 기 할 사 항	
상 호	
본 점	
공 고 방 법	
1 주 의 금 액	
발 행 할 주식의 총수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총액	

등 기 활 사 항	
목 적	
이사·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대표이사의 성명과주소	
종류주식의 내용	
지 점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	
기 타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 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와 본점소재지 등)	

신청등기소 및 등록면허세/수수료								
순번	신청등기소	구분	등록면허세		농어촌특별세	세액합계	등기신청수수료	
			지방교육세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합 계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번호								
과 세 표 준 액		금					원	
첨 부 서 면								
1. 정관(자본금금 10억 이상일 경우 공증받은 것) 통				1. 공증인의 변태설립사항보고서 통				
1.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통				1.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서 통				
1. 주식발행사항동의서 통				1. 감사인조사보고서등본 통				
1. 발기인회의사록(자본금금 10억 이상일 경우 공증받은 것) 통				1.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통				
1. 이사회 의사록(공증받은 것) 통				1.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서 통				
1.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또는 잔고증명서 통				1. 주민등록표등(초)본 통				
1. 재산인도증 통				1. 인감신고서 통				
1. 이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 통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1.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통				
				1.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통				
<기 타>								
						년 월 일		
신청인 상 호								
본 점								
대표이사 성 명		(인)		(전화 :)				
주 소								
대리인 성 명		(인)		(전화 :)				
주 소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								
1. 해당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1. 해당 등기신청과 관계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없음”으로 기재하거나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추가 기재합니다.								
1.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과 함께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 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하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봅니다.								

(용지규격 21cm × 29.7cm)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면 안내]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등기관 확인	각종 통지
	제 호			

① 등 기 의 목 적	주식회사 설립		
② 등 기 의 사 유	정관을 작성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의 경우 공증인의 인증 면제) 발기인이 회사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전부를 인수하고 2000년 0월0일 발기인회에서 상법 제298조의 절차를 종료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③ 본/지정 신청구분	1. 본점신청 <input type="checkbox"/>	2. 지정신청 <input type="checkbox"/>	3. 본·지정 일괄신청 <input type="checkbox"/>
등 기 할 사 항			
④ 상 호	00 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 00)		
⑤ 본 점	서울특별시 00구 00로 00		
⑥ 공 고 방 법	서울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00일보에 게재한다		
⑦ 1 주 의 금 액	10,000원		
⑧ 발 행 할 주 식 의 총 수	20,000주		
⑨ 발 행 주 식 의 총 수 와 그 종 류 및 각 각 의 수	발행주식의 총수	5,000주	
	보통주식	3,000주	
	제1종우선주식	2,000주	
⑩ 자 본 금 총 액	50,000,000원		

등 기 활 사 항

<p>⑪ 목 적</p>	<p>1. 주택건설업 1.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1. 토목공사업 1. 부동산 임대업 1.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p>
<p>⑫ 이사·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p>	<p>사내이사 ○ ○ ○ (-) 사내이사 ○ ○ ○ (-) 사외이사 ○ ○ ○ (-) 기타비상무이사 ○ ○ ○ (-) 감사 ○ ○ ○ (-)</p>
<p>⑬ 대표 이 사 의 성명 과 주 소</p>	<p>대표이사 ○ ○ ○ (-) 서울특별시 ○ ○ 구 ○ ○ 로 ○ ○</p>
<p>⑭ 종 류 주 식 의 내 용</p>	<p>제1종 우선주식 1.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200주 2. 발행하는 주식의 내용 1) 이익배당 등에 관한 사항 : 생략 2) 의결권에 관한 사항 : 생략 3) 상환권 또는 전환권에 관한 사항 : 생략 4) 기타</p>
<p>⑮ 지 점</p>	<p>경기도 ○ ○ 시 ○ ○ 구 ○ ○ 로 ○ ○ (○ ○ 지 점)</p>
<p>⑯ 존 립 기 간 또 는 해 산 사 유</p>	<p>없음(정관에 규정이 되어있으면 기재)</p>
<p>⑰ 기 타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 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와 본점소재지 등)</p>	<p>없음(정관에 규정이 되어있으면 기재)</p>

등기신청안내 -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 (발기설립)

● 주식회사설립등기(발기설립)란

주식회사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사단법인 중 주주가 인수한 주식금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에 책임을 지고 회사채권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사원만으로 구성된 회사를 의미하며, 주식회사를 발기설립절차에 의하여 설립하는 경우에는 회사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전부 인수하여야 합니다.

● 관할등기소 및 등기의 신청

설립등기는 회사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발기설립에 의한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사 감사의 조사보고가 종료한 날,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사절차 및 법원의 변경처분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17조 제1항). 다만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사람은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 대행을 업(業)으로 할 수 없습니다.

● 등기신청서 기재 요령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다만 상호와 외국인의 성명은 먼저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한 후, 로마자·한자·아라비아숫자 및 일정한 부호를 사용하여 영문 표기나 한자 표기를 병기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의 기재사항 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고 신청서와 별지 각 장 사이에 간인을 하여야 합니다.

① 등기의 목적

“주식회사 설립(발기설립)”으로 기재합니다.

② 등기의 사유

등기를 신청하는 이유를 기재하는 항목으로 일반적으로 “정관을 작성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의 경우 공증인의 인증 면제) 발기인이 회사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전부를 인수하고 2000년 0월0일 발기인회에서 상법 제298조의 절

차를 종료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으로 기재합니다.

③ 본/지점 신청 구분

본점에서의 등기신청, 지점에서의 등기신청, 또는 본점 및 지점에 관한 등기를 본점에서 일괄하여 신청하는지 여부를 표시하는 항목입니다. 회사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본점과 다른 관할)하여 본점관할 등기소에서 설립등기와 지점설치등기를 일괄하여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본·지점 일괄신청임을 표시하면 됩니다. 다만 지점에 지배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지배인에 관한 등기는 이를 일괄하여 신청할 수 없고 지점관할 등기소에서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④ 상호

정관에 기재된 상호를 기재하며, 상호 중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식회사” 라는 문자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등기부상 로마자 등의 표기를 병기하고 자 할 경우(대법원 등기예규 제1455호 참조)는 상호 오른쪽에 괄호를 사용하여 병기할 수 있으며, 병기되는 로마자 등의 표기는 반드시 정관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 : 주식회사 에이비씨건설 (ABC Constructions Co., Ltd))

⑤ 본점

이사회에서 결의한 본점소재지를 기재하며, 정관에는 본점소재지를 최소행정구역을 표시함으로써 족하지만 신청서에는 그 소재 지번까지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⑥ 공고방법

정관에 기재된 공고방법을 기재하며, 관보나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 이어야 합니다. 일간신문은 특정한 1개 또는 수 개의 신문을 기재하여야 하며 추상적, 선택적(A신문 또는 B신문)으로 기재하여서는 안 됩니다.

⑦ 1주의 금액

정관에 기재된 1주의 금액을 기재합니다(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무액면주식’이라고 기재합니다).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하며, 또한 균일하여야 합니다.

⑧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수의 한도로서 정관에 기재된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기재합니다.

⑨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정관에 규정된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를 기재합니다.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회사가 정관에 정한 종류주식의 명칭(예 : 제1종종류주식, 제2종종류주식 등)을 기재하고, 그 내용은 종류주식의 내용란에 기재합니다.

⑩ 자본금총액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액면총액이 자본금총액입니다.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총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의 총액이 자본금총액입니다.

⑪ 목적

정관에 규정된 목적을 기재하며, 영업의 목적은 영리사업으로 영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조업”, “도매업” 등과 같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하게 기재하여서는 안 됩니다.

⑫ 이사·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사내이사·사외이사·기타비상무이사와 감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의 성명은 국적과 원지음을 한글 등으로 기재한 후, 괄호를 사용하여 로마자 등의 표기를 병기할 수 있습니다(예 : 사내이사 미합중국인 존에프케네디(John. F. Kennedy)). 이사의 수는 3인 이상이어야 하나, 소규모회사(자본금의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 이하 소규모회사라 함)에서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으며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⑬ 대표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회사를 대표할 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집행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합니다.

⑭ 종류주식의 내용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합니다.

⑮ 지점

이사회에서 지점 설치를 결의하였을 때 기재하며, 본점과 동일하게 소재 지번까지 기재하여야 합니다. 설립등기시 본·지점 일괄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설립등기 후 2주 이내에 지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지점설치등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⑯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

정관으로 회사의 존립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하였을 때 기재하는 사항이며 정관의 상대적인 기재사항입니다.

⑰ 기타

상법 제317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등기사항 중 위 ①~⑮의 기재사항 이외에 등기를 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재를 하는 항목으로 정관에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와 본점소재지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⑱ 신청등기소 및 등록면허세·수수료

신청하는 등기소별로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액의 4/1000,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100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 내에서 설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율의 3배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하여 본·지점 일괄신청을 하는 경우, 지점등기 신청과 관련된 별도의 등록면허세·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별표1에 지정되어 있는 권역을 의미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⑲ 과세표준액

과세표준은 자본의 총액, 즉 회사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액입니다.

⑳ 첨부서면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면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㉑ 신청인 등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법인의 상호와 본점, 대표이사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며, 위임받은 대

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합니다. 대표이사는 등기신청과 동시에 제출하는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경우는 날인할 도장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1. 정관

정관이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규정한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말하며,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소규모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는 공증인의 인증이 없더라도 발기인들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정관의 기재사항 중에는 그 기재가 없거나 위법인 때에는 정관은 무효가 되고 나아가 회사설립이 무효가 되는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기재하지 않으면 그 사항이 회사와 주주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지 않는 상대적 기재사항,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기재하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가. 절대적 기재사항

- ▶ 목적 : 회사가 경영하려는 사업을 뜻하며 영리성이 있어야 합니다. 기재의 정도는 사회 통념상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므로 “제조업”, “도매업” 등과 같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하게 기재하여서는 안 됩니다.
- ▶ 상호 : 상호는 상인이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 상호에는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반드시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등기부상 상호란에 로마자 등의 표기를 병기하고자 할 경우 한글로 상호를 기재한 후 괄호 안에 로마자 등의 표기를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일 특별시·광역시·시·군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등기한 것과 동일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
-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한도로서 발행예정주식총수 또는 수권주식총수라 합니다.
- ▶ 1주의 금액 :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하며 또한 균일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 회사 설립시에 실제로 발행되어 인수되는 주식의 수를 의미하며 신청서 상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로 기재됩니다.

- ▶ 본점소재지 : 본점소재지란 회사의 주된 영업소로 회사의 주소가 되기 때문에 한 장소만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관에는 최소행정구역을 표시하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 ▶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월간지, 주간지, 지하철 역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료로 배포되는 신문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2개 이상의 신문을 정할 수도 있으나 선택적(A신문 또는 B신문)으로 기재하여서는 안 됩니다.
- ▶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발기인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발기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나. 상대적 기재사항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은 상법 여러 곳에 산재해 있으며 절대적 기재사항과는 달리 정관에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고 설사 기재가 없더라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기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는 변태설립사항, 회사의 존립기간, 해산사유,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주식양도제한규정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다. 임의적 기재사항

정관에 기재를 하지 않더라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임의적으로 정관에 기재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이에는 이사·감사의 원수, 정기주주총회의 소집시기, 회사의 영업연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라. 정관의 인증

정관은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소규모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는 공증인의 인증이 없더라도 발기인들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2.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발기인은 회사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 전부를 인수하여야 합니다. 인수의 방법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설립등기 신청시 이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주식인수증명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상호, 인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 1주의 금액, 인수가액, 주금납입기관, 발기인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3.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정관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의 그 수와 금액,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의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에 관하여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이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주식발행사항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발기인회의사록

주금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회의를 열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발기인들이 회의를 개최하여 의사결정을 한 경우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가. 사내이사·사외이사·기타비상무이사 및 감사의 선임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여야 하며 이사는 사내이사·사외이사·기타비상무이사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선출하여야 합니다.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하며, 사외이사·기타비상무이사는 필요에 따라 둘 수 있으나 사내이사는 반드시 1명 이상을 두어야 합니다. 다만 소규모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으며,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의사록 공증

발기인회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소규모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는 공증인의 인증이 면제됩니다.

5.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이사회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규모 회사의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경우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으며 이사회 권한을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 또는 주주총회에서 행사합니다(상법 제383조 제4항, 제5항, 제6항).

6.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주식을 인수한 발기인은 지체 없이 그 인수금액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하며, 발기인 또는 이사는 납입금을 보관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보관금액에 관하여 증명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규모 회사의 경우 주금납입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7. 이사·감사의 조사보고서

이사와 감사는 회사 설립에 관한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서나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서 등본

현물출자 등 변태설립사항이 있을 경우 검사인이 변태설립사항에 관하여 조사하여 작성한 조사보고서, 또는 이에 관련된 조사를 공증인이나 감정인이 하였을 때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서나 감정인의 감정서를 법원에 보고한 후 법원으로부터 송부 받은 부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이사, 대표이사, 감사는 회사의 임원으로서 취임함으로써 법적인 책임과 의무가 부과되므로, 취임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취임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취임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서면에 관공서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으며,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을 하였다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면이나 공증인의 공증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10. 주민등록표 등(초)본

취임하는 이사·감사는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는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사를 대표할 이사 이외의 임원은 주민등록증 사본,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으로도 가능합니다.

11. 인감신고서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법인의 대표자 등)은 미리(설립등기신청과 동시에)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감제출을 위한 인감신고서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을 날인하고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감신고서와 함께 인감대지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12.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본점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등록면허세납부서(자본금의 4/1000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와 그 등록면허세의 20/10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발부받아 납부한 후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 내에서의 설립등기 시에는 당해 세율의 3배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별표1에 지정되어 있는 권역을 의미합니다.

13. 위임장

등기신청권자 이외의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수입자, 위임자, 위임내용을 기재하고 등기소에 제출하는 인감을 날인합니다.

14. 기타

- ▶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명의개서 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서면
- ▶ 정관에 건설이자의 배당에 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에 관한 법원의 인가서 등본
- ▶ 관청의 허가서 : 관청의 허가(인가)를 필요로 하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관청의 허가서(인가서) 또는 그 인증 있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 번역문 : 등기신청 서류 중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이를 번역하여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하며, 번역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번역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 법인인감카드 발급 : 법인인감증명서는 법인인감카드 또는 전자증명서(HSM USB)로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등기 완료 후 법인인감도장을 지참하여 법인인감카드 또는 전자증명서(HSM USB)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등기신청서 편철순서

신청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정관,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주식인수증,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발기인회의사록, 조사보고서, 감사인의 조사보고서, 이사회회의사록,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주민등록표등(초)본.(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은 임원별로 편철), 인감신고서, 위임장 등의 순서로 편철하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

● 기타

1. 등기신청과 관련된 정관, 의사록 등 각종 서식에 관하여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자료센터), 법무부 홈페이지(법무지식),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자료마당), 사단법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홈페이지(법률정보)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2. 이상은 법인설립등기(발기설립) 신청시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일반적인 서식과 그 내용에 대한 안내인바, 정관에 상대적 기재사항인 변태설립사항을 둔 경우, 감사위원회를 둔 경우 등 회사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특히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회사(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에서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하는 경우, 동조 제6항에 의하여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 등 회사의 사정에 따라 등기방법 등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등기과·소의 민원담당자 또는 변호사, 법무사 등 등기와 관련된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서식 및 작성 Tip

서식 목록

구분	서식목록	참고 페이지
1	주식발행사항동의서	230
2	발기인 주식인수증	231
3	주주명부	232
4	주금납입 보관증명 발급의뢰서	233
5	발기인회의 의사록	234
6	검사인조사보고서	235
7	창립사항보고서	237
8	취입승낙서	239
9	이사·감사의 조사보고서	240
10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242
11	창립(발기인)총회의사록	244
12	이사회 의사록	247

1)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발행인 전원의 동의로서 회사 설립시 발행할 주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결정함.

다 음

1. 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5,000주
 2. 주식의 발행가액 : 1주의 금액 10,000원
 3. 주식의 총수와 주식금액 : 보통주식 5,000주, 금 50,000,000원
- 위 동의사항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발행인 전원이 다음에 기명날인하다.

2000년 0월 00일

농업회사법인 00주식회사
발기인 0 0 0 (-)
00군 00면 00리 00번지
발기인 0 0 0 (-)
00군 00면 00리 00번지
발기인 0 0 0 (-)
00군 00면 00리 00번지
발기인 0 0 0 (-)
00군 00면 00리 00번지

2) 발기인 주식인수증

주식인수증

1. 상 호 ○○주식회사
2. 인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 ○○주식 ○○주
3. 위 총액 금 ○○○원
4. 1주의 금액 금 ○○○원
5. 납입기관 및 장소 ○○은행 ○○지점
위의 주식을 발기인으로서 인수합니다.

20○○년 ○월 ○○일

발기인 ○ ○ ○ (인)
서울 00구 00동 111

○○ 주식회사 발기인 대표 귀하

3) 주주명부

주 주 명 부

주주명	주 소	인수주식수	1주의 금액	납입금액
○○○	○○ ○○구 ○○동 ○○	1000	10000	10000000
○○○	이하생략	1000	이하생략	이하생략
○○○		1000		
○○○		100		
○○○		이하생략		
	합 계	10000		100000000

위는 당 회사의 주주명부임이 틀림없음

20○○년 ○월 ○○일

주식회사 ○○

대표이사 ○ ○ ○ (날인)

[주] 이 주주명부는 법정 첨부서류는 아님.

5) 발기인회의 의사록

발기인회의 의사록

200 년 월 일 시 본 회사 본점사무실에서 다음 발기인전원의 동의로 상법 제390조제2항 소정의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다음 의안을 심의키 위하여 발기인회의를 개최하다

발기인총수 : 명 출석발기인수 : 명

1. 의안 대표이사 선임의 건

의장은 본 회사의 대표이사를 선임할 뜻을 전하고, 신중하게 협의한 결과 전원이 일치하여 다음 사람을 선임한다.

대표이사 :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피선거자는 즉석에서 취임을 승낙하다.

제2호 의안 : 본점설치장소 결정의 건

의장은 정관에 본점을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 둔다고만 정해져 있으므로 그 설치장소를 정해야 한다는 뜻을 전하고, 신중하게 협의한 결과 전원이 일치하여 다음 장소에 본점을 두기로 한다.

본점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번지

이상으로서 금일의 의안을 전부 심의 종료되었으므로 의장은 00시에 폐회를 선언하다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다음에 기명날인하다

200 . . .

주식회사

의장(대표이사) 김 ○ ○

이사 이 ○ ○

감사 이 ○ ○

6) 검사인조사보고서

검사인조사보고서

본인은 ○○지방법원 20○○파○○호 검사인선임신청사건에 있어서 ○○주식회사의 검사인으로 선임되어 상법 제290조 소정사항을 조사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보고함.

1. 조사방법과 그 경과

검사인은 이 사건 조사할 사항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선 이 사건 검사인 선임신청서와 그 부속서류의 내용을 검토한 후, 20○○년 ○월 ○○일 이 사건 회사의 설립사무소에 임하여 발기인 대표 ○○○로부터 회사설립의 경과를 청취하고 회사설립에 관계되는 각종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 회사설립과정에서 이 사건 목적재산의 가액을 평가한 바 있는 감정평가사 ○○○의 감정평가의 경위를 청취하였음.

2. 조사사항 및 조사결과

(1)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에 관한 사항

정관 제○조에 의하면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으로서 각 발기인은 그가 가지는 주식 1주에 대하여 연 ○○원에 달할 때까지 다른 주식에 우선하여 배당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으나, 이는 발기인의 발기행위에 대한 특별공로를 이유로 한 것으로서 동인 등이 공로 및 대외적 신용 등을 고려한다면 당해 정관의 규정은 정당하다고 사료됨.

(2)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현물출자를 한 자는 발기인 ○○○이고 그 출자재산은 어떠한 재산으로서 감정평가사 ○○○가 평가한 그 가격은 정관에 기재된 평가액보다 훨씬 높은 시가 금○○○원 이상이므로 정관에 기재된 그 평가액 및 그에 부여하는 주식수는 정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현물출자재산은 이미 회사에 확실히 인도되었음이 출자자 작성의 재산인도증에 의해 명확히 인정됨.

(3) 회사성립후 양수재산에 관한 사항

회사성립후 양수키로 약정한 재산은 발기인 ○○○소유의 어떠한 재산으로서 이는 회사의 영업상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가격도 적정하여 그에 관한 정관의 규정은 타당하다고 인정됨.

(4)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 및 발기인의 보수에 관한 사항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의 보수내역은 별첨계산서와 같은 바, 그 부담 및 지출은 필요 적정하다고 사료됨.

3. 부속서류

- | | |
|------------------|----|
| (1) 정관사본 | 1통 |
| (2) 현물출자재산인도증사본 | 1통 |
| (3) 설립비용 등 계산서사본 | 1통 |
| (4) 현물출자재산평가서사본 | 1통 |

위와 같이 보고함

20〇〇년 〇월 〇〇일

〇〇 주식회사
검사인 ○ ○ ○ (인)

7) 발기인의 창립사항보고서

출처: 법무부 제공 표준서식

창립사항보고서

본인 등은 본 회사의 발기인인 바 창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본인 등은 사업목적을

- 1)
- 2)
- 3)

4)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로 정하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주, 설립시에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주, 1주 금액은 금 원정, 자본금 원으로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기획하였음

2. 본인 등은 ...(성명)을 발기인 대표로 선임하고 회사 성립까지의 필요사항에 있어서 발기인을 대표하기로 하였음

3. 발기인 전원이 모여 년 월 일 정관을 작성하고, 공증인가...(공증사무소명)에서 동년 월 일 인증을 받았음

4. 본인 등은 년 월 일 전원일치로 1주의 발행가액을 원으로 정하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주 중 주만을 본인 등이 인수하고, 잔여주식 주에 대하여는 주식청약서를 마련하고 주주모집에 착수하였던 바, 년 월 일까지 잔여주식 전부에 대한 소정의 주식인수청약이 있어 주에 달하였음

5. 위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년 월 일 납입받을 은행인 은행 지점에 동년 월 일까지 주금을 납입할 것을 통지하였던 바, 동년 월 일 그 납입이 완료되어 그 납입금이 발기인 대표 명의로 별단예금으로 보관되어 있음이 위 은행에서 발행한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됨

6. 본 회사에 현물출자를 한 사람은 1명도 없고 기타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신청할 사유를 정관에 정한 바 없으므로 그에 관한 조사를 할 필요가 없었음

7. 이상과 같이 인수와 납입 등을 완료하였으므로 본인 등은 바로 회사를 설립하고자 주식인수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 법정기간을 단축하여 금일 창립총회를 개최함

위 사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주식회사...(회사명)
(주소)

발 기 인 :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발 기 인 :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유례] 상법 제290조 소정사항의 정함이 있는 경우

5. 정관 제○조에 의하면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으로서 각 발기인은 그가 가지는 주식 1주에 대하여 연 ○○원에 달할 때까지 다른 주식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으나 이는 발기인의 발기행위에 대한 특별공로를 이유로 한 것으로서 동인 등의 공로 및 대외적 신용 등을 고려한다면 당해 정관의 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6. 현물출자를 한 자는 발기인 ○○○이고, 출자목적재산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평방미터, 동 지상 ○○건평 ○○평방미터로서 그 가격은 시가 금○○○원 이상으로 보여 정관에 기재된 그 평가액 및 그에 부여하는 주식인수는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위 현물출자재산은 이미 회사에 확실히 인수되었음을 출자자 작성의 재산인도증에 의해 확인할 수 있었음.
7. 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은 발기인 ○○○소유의 어떠한 물건으로서 이는 회사의 일상 영업상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가격도 적정하여 그에 관한 정관의 규정은 타당하다 인정됨.
8.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내역은 별첨 계산서와 같은 바, 그 부담 및 지출은 모두 상당하다 인정됨.

* 상법 제290조 소정의 변태설립사항을 정한 경우에도 법원선임 검사인의 조사보고에 갈음하여 공증인의 조사보고 또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상법 299의2)

[유례] 5. 정관에서 정한 변태설립사항은 상법 제299조의2에 해당하여 공증인의 조사·보고 및 감정인의 감정으로 법원선임 검사인의 조사·보고에 갈음할 수 있어 별첨 공증인의 조사보고서와 감정인의 감정서로서 갈음하였는바, 그 사항은 타당함.

6.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은 별첨계산서와 같은 바, 그 부담 및 지출은 모두 상당하다 인정됨.

8) 취임승낙서

출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첨부서면 예시

<h3 style="margin: 0;">취 임 승 낙 서</h3>	
<p>본인은 20○○년 ○○월 ○○일 주주총회(또는 창립총회, 이사회)에서 귀 회사의 사내이사(또는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대표이사 등)로 선임되었는바, 그 취임을 승낙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년 ○○월 ○○일</p>	
<p>사내이사(또는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대표이사 등) 홍길동</p>	<p>인감</p>
<p>주식회사 ○○○ 귀중</p>	

- ※ 날인된 인감은 인영대조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등기관이 조사를 합니다. 따라서 인감을 날인할 때에는 **인영이 인감날인란의 선내를 벗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양식은 주식회사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법인에 관하여 적용됩니다. 주식회사 이외의 다른 법인은 양식의 해당 문구를 적절히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국인

내국인

내국인

내국인

9) 이사·감사의 조사보고서

출처: 법무부 제공 표준서식

조사보고서

년 월 일 창립총회에서 본인을 이사 및 감사로 선임하였으므로 상법 제313조 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조사 보고합니다.

1. 설립시에 발행한 주식 총수에 대한 인수의 정확 여부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주이며, 설립 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주(1주의 금액 금 원)인데 그 인수 내역은 다음과 같음.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 수

주식 주

년 월 일 인수 완료

주식청약인이 인수한 주식 수

주식 주

년 월 일 인수 완료

2. 인수주식에 대한 납입의 정확 여부

설립시에 발행한 주식 총수 중 주식청약인이 인수한 주식 주에 대한 주금 원의 납입이 년 월 일 완료되었는 바, 이를 그 납입을 맡은 00은행 00지점이 발행한 납입금보관증명서로 명확히 확인함.

3. 현물출자의 이행의 정확여부나 감사인 보고서의 정확여부 등은 현물출자를 한 자가 없고 정관에 상법 제290조 소정사항을 정하지 아니하여 감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었음. 그러므로 이에 대한 정확 여부를 조사할 여지가 없었음.

위와 같이 조사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주식회사 (회사명)
(주소)

이사 : (성명)
이사 : (성명)
감사 : (성명)

[유례] 정관에 변태설립사항(상법 290)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현물출자이행의 정확여부와 감사인보고서의 정확여부
이에 관한 사항은 감사인 ○○○작성의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의 기재내용을 검토한
바, 그의 정확함을 인정할 수 있었음(법원 선임 감사인 있는 경우).
4. 현물출자 이행의 정확여부와 공증인과 감정인의 감정의 정확여부
변태설립사항이 상법 제299조의2에 해당되어 공증인 ○○○작성의 조사보고서과
감정인 ○○○작성의 감정서과 그 부속서류의 기재내용을 검토한 바, 그의 정확함을
인정할 수 있었음(공증인이 감사인의 조사보고에 같음하는 경우).

10)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출처: 법무부 제공 표준서식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사 건 명 20○○파 호 모집설립조사

발 기 인 ○○○외 7

사건본인(설립중인회사) ○○주식회사

○○시 ○○구 ○○동 ○○번지

신 청 인 조사한 공증인 공증인가 법무법인 ○○

변호사 ○○○ ○○시 ○○구 ○○동 ○○번지

본 공증인은 설립중인 회사 ○○주식회사의 발기인들에 의하여,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을 정관에 기재함에 따라 모집변태설립을 하게 되어, 상법 제310조 및 동법 제29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에 대한 설립비용에 대하여 20○○년 ○월 ○○일자로 위 설립중인 회사에 대한 설립비용의 타당성 여부의 조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상법 제310조 및 동법 제299조의 2의 규정과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 처리요령(대법원 송무예규 제719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그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다 음

1. 조사를 위임한 발기인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주식회사

○○시 ○○구 ○○동 ○○번지

대표이사 ○ ○ ○

전화(-)

2. 조사의 목적

변태설립사항, 즉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을 정관에 규정함에 따라 상법 제310조 및 동법 제29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으로 하여금 그 타당성을 조사하게 하기 위함.

3. 조사사항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

4. 조사결과

가. 사건본인(설립중인 회사) ○○주식회사는 정관 제○조에서 이 회사의 목적사업인 ○○○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컨소시엄 구성, 각종광고, 사업계획서 작성, 각종 등록 및 인허가 등 회사설립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총액○○○원 한도내에서 회사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증인의 조사일인20○○년 ○월○○일 현재까지 발생한 비용이 ○○○원이며, 앞으로 지출예정인 비용이 금○○○원으로써 그 합계액이 ○○원 의 범위내인 ○○○원인바,

11) 창립총회 의사록

출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첨부서면 예시

창립총회 의사록

년 월 일 시(주소)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다.

주주총수 명, 이들의 인수주식총수 주
출석주주수 명, 이들의 인수주식수 주

발기인 대표 ...(성명)은 위와 같이 상법 제309조에 따른 소정 수의 주주가 출석하였으므로 본 총회는 유효하게 성립됨을 고하고, 의사를 진행하기 전에 의장을 선임할 것을 구한 바 만장 일치로 발기인 대표를 의장으로 선임, 동인은 그 취임을 승낙하고 의장석에 등단하여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 의안의 심의를 구하다.

제1호 의안 : 창립사항의 보고의 건

의장은 발기인을 대표하여 별지 창립총회보고서와 같이 본 창립총회까지의 경과를 소상히 설명하여 보고한 바 전원일치로 이를 승인하다.

제2호 의안 : 정관 승인의 건

의장은 정관을 낭독하고 축조설명을 한 후 그 승인 여부를 물은 바 전원일치로 원안대로 승인하다.

제3호 의안 : 이사 및 감사 선임의 건

의장은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방법을 주주일동에게 물은 바, 무기명비밀투표로 선출하기로 전원 일치되어 즉시 투표를 한즉 다음과 같이 선출되다. 단, 감사의 선임은 상법 제40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발행 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

사내이사 : 성명...(주민등록번호)
사내이사 : 성명...(주민등록번호)
감 사 : 성명...(주민등록번호)

위 피선거자들은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하다.

제4호 의안 : 본점 설치장소 결정의 건

의장은 본 회사의 본점을 다음 장소에 설치함이 적당하다는 뜻을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묻은 즉 만장일치로 승인하다.

본 점 : (주소)

제5호 의안 : 상법 제313조 소정사항 조사보고의 건

의장은 이사 및 감사로 하여금 상법 제313조 소정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하기 위하여 휴회한다고 선언한 다음 잠시 후 속회를 선언하다.

의장은 감사...(성명)으로 하여금 별첨 조사보고서와 같이 상법 제 313조 소정사항의 결과를 상세히 보고하게 한 즉, 전원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그를 승인 가결하다.

이상으로서 금일의 의안 전부를 종료하였으므로 의장은 폐회를 선언하다. (시간은 시)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다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다.

년 월 일

주식회사...(회사명)
(주소)

의장 대표이사 ○ ○ ○ (인)
사 내 이 사 ○ ○ ○ (인)
사 외 이 사 ○ ○ ○ (인)
기타비상무이사 ○ ○ ○ (인)

[유례] 창립 총회에서 정관 규정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

의장은 별지 정관안을 낭독하고 축조설명을 가한 후 승인 여부를 묻은 바, 주주 ○○○로부터 정관 제○조(상호)를 당회사는 주식회사 ○○해운이라 부른다고 변경하기로 하고, 제○조 다음에 제○조로서 어떠한 내용의 규정을 삽입한후 제○조 이하의 조문 표시를 1조씩 다음 조문으로 바꾸어 표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자는 취지의 발언이 있으므로 그의 찬부를 묻은 바, 다른 주주 전원이 그에 찬성하므로 그를 가결 확정하다.

[유례] 이사, 감사 전원이 발기인인 경우 등

의장은 상법 제313조 소정사항을 이사와 감사가 보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사, 감사가 모두 발기인이었던 관계로 그들이 상법 제313조 및 제298조에 해당하여 보고할 수 없으므로, 공증인으로 하여금 위 보고를 받기로 발기인 총회에서 결의하였으므로 선임된 공증인 ○○○으로 하여금 회사설립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보고케 하니, 공증인은 별첨 조사보고서와 같이 보고한 즉 ...중략 ... 그를 승인하다.

[유례]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를 결정하는 경우

20○○년도 임원보수지급한도액을 ○억원으로 할 것을 만장일치로 승인하고 집행은 이사회에 위임하다.

[주] 의장은 이사로 선출되지 아니한 때에도 기명날인한다.

회사등기시 유사상호가 있어서 설립등기를 못하는 경우에는 창립총회의사록의 정관승인의 건에서 정관을 일부변경하여 결의하면 되고, 이 때 의사록의 인증문을 변경하여야 한다.

12) 이사회 의사록

출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첨부서면 예시

이사회 의사록

년 월 일 오전 시 본 회사 본점 사무실에서 이사, 감사 전원 동의로 상법 제390조 제3항 소정의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다음 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개최하다.

이사 총수 명, 출석 이사 수 명

이사들의 호선에 의하여 이사...(성명)이 의장으로 선출되다.

제1호 의안 : 대표이사 선임의 건

의장은 본 회사의 대표이사를 선임할 뜻을 전하고, 신중하게 협의한 결과 전원이 일치하여 다음 사람을 선임한다.

대표이사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 선출된 대표이사는 즉석에서 취임을 승낙하다.

제2호 의안 : 본점설치장소 결정의 건

의장은 정관에 본점을...(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 둔다고만 정해져 있으므로 그 설치장소를 정해야 한다는 뜻을 전하고, 신중하게 협의한 결과 전원이 일치하여 다음 장소에 본점을 두기로 한다.

본점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번지

의장은 이상으로서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한다고 선언하다
(회의 종료시각 ○○시 ○○분).

위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다.

○○○○년 ○월 ○○일

주식회사 ○○○○

○○시 ○○구 ○○동 ○○번지

의장 대표이사 ○ ○ ○ (인)

사 내 이 사 ○ ○ ○ (인)

사 외 이 사 ○ ○ ○ (인)

기타비상무이사 ○ ○ ○ (인)

농업법인 설립·변경사실 지자체 통보 서식 안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15.7.7.>

영농조합법인 설립등기통지서

※ 신고인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관	
설립신고인 (대표조합원)	성명(생산자단체인 경우 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사업내용	사업유형	생산[] 유통[] 가공[] 농어촌관광휴양[] 서비스[] 기타[]		
		생산분야	식량[] 채소[] 과수[] 특용작물[] 축산[] 임업[] 기타[]		
		재배품목 및 축종			
	출자 규모	구분	출자자수(명)	출자금(원)	
조합원					
준조합원					
계					
법 인	영농조합법인명			전화번호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등기일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의 설립등기 사실을 위와 같이 알립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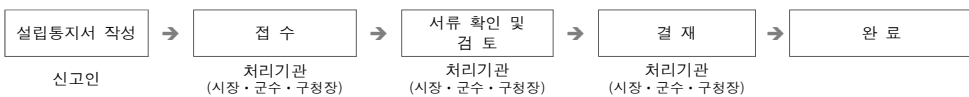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정관 1부 2.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 명부 1부 3. 창립총회의사록 1부 4.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법 제18조의2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영농조합법인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함)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작성방법

1. 생산분야와 재배품목 및 축종은 사업유형에 생산이 포함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조합원은 농업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015.7.7.>

영농조합법인 변경등기통지서

※ 신고인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고인 (대표조합원)	성명(생산자단체인 경우 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영농조합법인명	전화번호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등기일자
변경등기 사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 관련 명칭[] 목적[] 사업[] 사무소의 소재지[] 해산사유에 관한 사항[] 출자액의 납입방법·산정방법과 조합원 1명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 관련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 및 임원의 주소와 성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제3호 관련 조합법인의 공동대표와 관련한 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제4호 관련 출자 총액수와 납입한 총출자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기 하였음을 알립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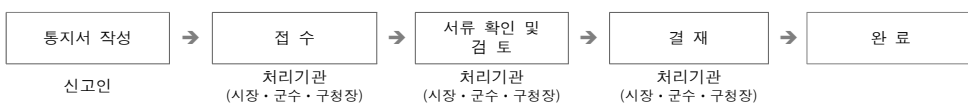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등기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1부 2.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종질지(80g/㎡)]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신설 2015.7.7.>

농업회사법인 합자[] 합명[] 유한[] 주식[] 회사 설립등기용지서

※ 신고인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설립신고인 (대표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사업내용	사업유형 생산[] 유통[] 가공[] 농어촌관광휴양[] 서비스[] 기타[]				
		생산분야 식량[] 채소[] 과수[] 특용작물[] 축산[] 임업[] 기타[]				
	재배품목 및 축종					
	출자규모	출자자수(명)			출자액(원)	
농업인 (생산자단체 포함)		비농업인 (법인 포함)	계	농업인 (생산자단체 포함)	비농업인 (법인 포함)	계
법 인	농업회사법인명			전화번호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등기일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 사실을 위와 같이 알립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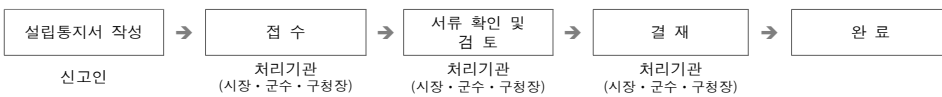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정관 1부 2. 임원 명부 1부 3. 창립총회의사록 1부 4.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농업회사법인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함) 1부 5. 조직변경을 의결한 총회의사록(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여 설립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농업회사법인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함)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작성방법

생산분야와 재배품목 및 축종은 사업유형에 생산이 포함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8호서식] <신설 2015.7.7.>

농업회사법인 합자[] 합명[] 유한[] 주식[] 회사 변경등기통지서

※ 신고인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하는 사항에 모두 √ 표기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고인 (대표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농업회사법인명	전화번호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등기일자
변경등기 사항	목적[] 상호[] 본점소재지[]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유한·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자본금의 총액(유한·주식회사의 경우 사원의 출자목적과 가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설립등기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여 변경등기 하였음을 알립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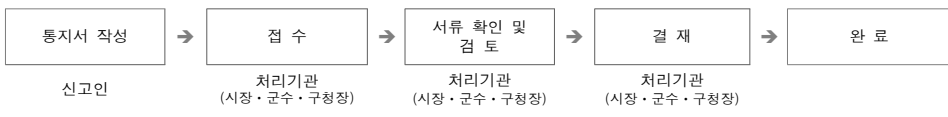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등기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사록(변경등기한 사항 중 정관 등 변경 시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만 제출) 1부 2.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서식 안내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3. 22.>

농업경영체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농업법인용)

※ 제7쪽 및 제8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10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다만, 직접지불금·보조금 신청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90일로 한다)	30일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배부기관	직접지불금·보조금 신청	[] 쌀지불금 [] 밭고정직불금 []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 조건불리보조금 [] 신청 없음	

1. 일반현황

형태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합명 [] 합자 [] 주식 [] 유한)			
① 법인현황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연도	전화번호	팩스	전자우편
	법인 소재지	본점	(마을명 :)	
		분점	(마을명 :)	
	주요 사업	[] 생산 [] 가공 [] 유통 [] 수출 [] 농업서비스 [] 관광·휴양 [] 기타 [] 마을법인		

② 대표자	성명	국적	국내	주민등록번호
			국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③ 구성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직책	농업인 여부	증빙서류	④ 출자규모	구분	출자자 수(명)	출자액(만원)
								농업인	
						비농업인			
						계			

※ 영농조합법인 : 대표자 포함 농업인 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 : 등기이사 및 농업인 출자자

⑤ 상용근로자 수	내국인	명	외국인	명
-----------	-----	---	-----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 농지 및 농작물재배 / 직불금·보조금 신청 ※ ⑦은 쌀직불금·밭고정직불금(농업소득직접지불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이 경우 ⑥-1 지목란을 함께 작성하여야 합니다.

대표자명(생년월일) : () (서명 또는 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연락처 :
 법인명 : 법인주소지(마을명) : ()
 보조금 등 수령계좌 : (은행) (계좌번호)

⑥ 농지일반				⑥-3 농지면적(m ²)				⑥-4 시설 현황		⑥-5 품목별 재배 면적			⑦ 직불금·보조금 신청					필지삼제 사유 -매매 -임대 -임차종료 -폐경 -기타()	농지 소유자
번호	농지소재지	⑥-1 지목		⑥-2 경영형태	공부 (A)	실제 경작 면적 (B)	미이용		시설 종류	시설 면적	재배 품목		⑦-1 신청 사업명	⑦-2 재배 품목	⑦-3 신청 면적 (m ²)	⑦-4 농지 이용현황 (○,×) <기준년도> 쌀: '98~'00 밭: '12~'14 조건: '03~'06	진흥 지역 여부 (○,×)		
		공부	실제				휴경 (C)	폐경 (D)			재배 품목	노지 (m ²)						시설 (m ²)	
				[] 자경 [] 공유 [] 임차 (...~...)									[] 쌀 [] 밭고정 [] 조건불리 [] 논이모작						
													[] 쌀 [] 밭고정 [] 조건불리 [] 논이모작						
													[] 쌀 [] 밭고정 [] 조건불리 [] 논이모작						
													[] 쌀 [] 밭고정 [] 조건불리 [] 논이모작						

※ ⑥-4 시설종류(번호기입) : ① 온실(유리) ② 온실(경질판) ③ 온실(비닐) ④ 육묘장(유리) ⑤ 육묘장(경질판) ⑥ 육묘장(비닐) ⑦ 재배사
 ※ ⑦번 직불금·보조금의 지급·신청은 쌀직불금·밭고정직불금(농업소득직접지불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근거 법령(「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및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첨부서류는 제9쪽 및 제10쪽 참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받거나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3조 또는 제40조의10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받은 경우 보조금 등을 환수하거나 향후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⑦-2 쌀직불금은 (벼/벼이외/휴경), 밭고정직불금은 (재배면적/휴경), 조건불리보조금은 (논/밭/과수원/초지), 논이모작보조금은 (실제 재배품목명)로 적습니다.

3. 가축·곤충 사육시설 및 사육규모 ※ 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축산·곤충사육 법인 아님

⑧ 사육시설 현황						⑧-3 사육정보			
⑧-1 번호	사육시설 소재지	소재지 공부 면적(m ²)	시설면적(m ²)		경영 형태		용도 (축사 또는 부대시설)	사육품목	사육규모(마릿수/군/m ²)
			공부	⑧-2 실제	자영	임차			

4. 농산물의 유통 및 가공(작성기준일 : 전년도 연간)

(단위: m³, kg, 마릿수, %, 만원)

⑨-1 주요 품목	⑨-2 재배면적 (사육규모)	⑨-3 생산량	⑨-4 판매량	⑨-5 판매금액	⑨-6 판매처별 비율					⑩ 가공 판매	품목	판매금액	
					정부공공비축	농협	민간도정 가공업체	직거래	기타				
⑨ 생산 유통	식량												
	채소												
	과수												
	특용 약용												
	축산												
	기타												

297mm×210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10쪽 중 제4쪽)

5. 추정 소득(전년도 연간) · 자산 · 부채(작성기준일 : 전년도 12월말)

(단위: 만원)

⑪ 농업소득	⑫ 농업 외 소득	⑬ 자산	⑭ 부채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의 ([]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9조제1항 및 제40조의5제1항에 따라 ([] 쌀직불금 [] 받고정직불금 [] 논이모작보조금(발농업보조금)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약정)을 신청합니다.
-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6제1항에 따라 ([] 쌀직불금 [] 받고정직불금 [] 논이모작보조금(발농업보조금) [] 조건불리보조금) 등록(약정)사항의 변경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확 인	읍장·면장·동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시스템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행정정보공공이용시스템
신청인의 농지 소재지 및 가족 사육시설 소재지의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차량등록원부 등 고정자산 정보	
소득금액증명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복지급여 수급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정보	교육인력포털시스템(agriedu)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후계농/우수후계 농업경영인시스템
농업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해당 개별사업관리시스템
축산업 등록제 · 허가제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정보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친환경농산물 인증 정보	친환경인증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업인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농업경영체 등록 담당 공무원이 농업경영체 등록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하며,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발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 담당 공무원이 해당 보조금 등의 지급 대상 자격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합니다.

- ※ 위 확인사항 중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 가능한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발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 지급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용자·보조금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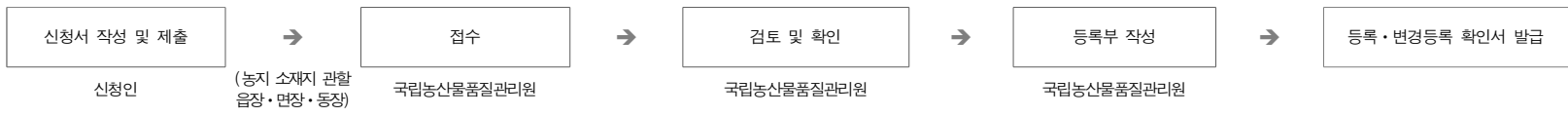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농촌 사회 안정망 지원, 융자·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농업경영정보의 등록·변경등록,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그 밖에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발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복지급여액, 면세유류 배정정보, 농기계·농자재 거래내역 등 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발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제공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개인정보 이용·제공·활용 동의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작성방법

※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만 적습니다.

1. 일반현황 : 농업법인과 관련한 사항을 등록합니다.

①란은 법인등기부상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설립연도, 연락처, 법인 소재지를 적습니다.

* 전화번호, 팩스 및 전자우편은 법인사무소에서 이용하는 것을 적되, 법인이 소유·이용하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대표가 사용하는 것을 적습니다.

* 주요사업은 정관으로 정한 법인의 주요사업에 해당하는 []칸에 √표시를 하되, 중복선택 가능합니다.

* 체험마을 등 마을단위로 농업법인을 만든 경우에는 마을법인에 √표시 합니다.

②란은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민등록지 주소를 적습니다.

③란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영농조합법인은 대표자 포함 농업인 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등기이사과 농업인 출자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직책, 농업인 여부, 농업인 증빙 제출자료(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농업인확인서·고용계약서)를 적습니다

④란의 출자규모는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농업인)과 준조합원(비농업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인과 비농업인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⑤란은 출자자가 아닌 일반인으로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의 수를 적습니다.

2. 농지 및 농작물재배 / 직불금·보조금 신청 : 해당 농업경영체가 경작하고 있는 모든 농지 정보를 작성합니다. 등록농지 중 직불금·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 ⑦란에 신청합니다.

* 직불금·보조금의 신청이 있는 경우 수령자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수령은행 및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⑥란은 필지별로 나누어 작성한 농지정보 순서대로 1번부터 적습니다. 필지 삭제 시 삭제일자과 삭제사유를 작성합니다.

* 사유구분 : 매매(중여, 상속 포함), 임대(자경농지 삭제), 임차종료(임차농지 삭제), 폐경, 기타(상세사유 기재)

⑥-1란은 해당 지번의 실제 이용형태에 따라 논, 밭, 과수원, 초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⑥-2란은 해당 지번의 경영 형태에 따라 자경, 공유, 임차(임차기간)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⑥-3란은 실제경작면적(=공부상 면적 - 휴경 - 폐경)을 적습니다.

- 휴경면적 :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 경지이지만,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농지면적
- 폐경면적 : 농지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농지형상이 변경된 면적(쌀고정직불금 지급대상 제외 농지 기준 적용)

⑥-4란은 해당 지번의 시설종류와 시설면적을 작성합니다.(번호기입)

- 시설종류 : ①온실(유리), ②온실(경질판), ③온실(비닐), ④육묘장(경질판), ⑤육묘장(비닐), ⑦재배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시설면적(㎡)은 해당 시설의 면적을 작성합니다.

⑥-5란은 해당 지번의 재배현황을 작성합니다.

- 재배품목 : 해당 지번의 농지에 연간 재배하는 모든 품목을 적습니다.
- 재배면적 : 노지인 경우 노지면적란, 시설인 경우 시설면적란에 적습니다. 쌀직불금(고정·변동), 밭고정직불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

⑦란은 보조금등 대상 농지에 대하여 쌀직불금(고정·변동), 밭고정직불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작성합니다.

⑦-1란의 신청사업명은 쌀, 밭, 조건불리, 논이모작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체크합니다.(다만, 쌀직불금과 논이모작보조금은 동시에 선택 가능합니다)

⑦-2란의 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재배품목을 반드시 적습니다.(재배품목에 따라 직불금·보조금 지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논이모작보조금 신청자는 겨울철 논에 사료·식량 작물을 재배한 품목을 적습니다.

⑦-3란은 아래 사항을 참고해서 직불·보조금 신청 면적을 작성합니다.

* 쌀직불금(고정·변동), 밭고정직불금, 밭농업보조금(논이모작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은 실제 경작면적과 휴경면적을 각각 해당란에 작성합니다.
* 논이모작은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또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논이모작과 기능을 갖춘 농지)에서 전년도 10월부터 금년도 6월까지 해당 농지의 논농업 휴경기간에 사료작물, 결בור,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등을 재배한 면적을 적습니다.

⑦-4란은 아래의 기준년도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O, 해당하지 않는 경우 X로 표시합니다.(신규필지만 표시하고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수정합니다.)

- * 쌀 : 1998. 1. 1. ~ 2000. 12. 31. 해당농지를 논 농업(벼, 미나리, 연근, 왕갈)에 이용하였을 경우
- * 밭 : 2012. 1. 1. ~ 2014. 12. 31. 해당 농지를 밭 농업에 이용하였을 경우
- * 논 이모작 :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또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논이모작과 기능을 갖춘 농지
- * 조건불리 : 2003. 1. 1. ~ 2005. 12. 31. 해당농지를 농업에 이용하거나 초지로 관리하였을 경우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증질지(80g/㎡)]

작성방법

3. 가축·곤충 사육시설 및 사육규모 : 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㉔란은 가축·곤충 사육시설의 소재지, 시설면적, 경영 형태 및 용도(축사 또는 부대시설)를 적습니다.(축산·곤충 등 사육농가가 아닐 경우 축산·곤충 등 사육농가 아님에 체크합니다)

㉕-1란은 필지별로 나누어 작성한 시설정보 순서대로 1번부터 적습니다. 1개의 시설이 여러 필지에 걸쳐 위치한 경우 동일한 시설번호를 적습니다.

㉕-2란은 실제 사육시설의 총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축산업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등록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사육시설 면적 또는 부화용알 생산시설 면적을 적습니다.

㉕-3란은 사육하고 있는 가축 또는 곤충의 품목(종) 및 신청일 현재의 사육규모(마릿수/군/㎡)를 적습니다(다만, 신청일 이전에 일시적으로 출하하여 가축이 없는 경우 연중 평균 마릿수를 기재하되, 부화업인 경우는 1회 평균 입란 개수를 기재합니다).

4. 농산물의 유통 및 가공(작성기준일 : 전년도 연간)

㉖란은 전년도에 유통·판매한 농산물의 실적입니다.

㉖-1란은 전년도 생산품목, 유통·판매 등 취급 농산물의 품목, 주요 서비스 종류를 적습니다.

㉖-2란은 ㉖-1란에 기재한 주요 품목의 전년도 총 재배면적을 적습니다. 재배 면적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란으로 둡니다.

㉖-3란은 ㉖-1란에 기재한 주요 품목의 전년도 총 생산량을 적습니다. 생산 실적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란으로 둡니다.

㉖-4란은 ㉖-1란에 기재한 주요 품목의 전년도 총 판매량을 적습니다.

㉖-5란은 ㉖-1란에 기재한 주요 품목의 총 판매금액을 만원단위로 적습니다.

㉖-6란은 ㉖-5란에 기재한 주요 품목의 총 판매금액 중 판매처별 점유비율을 백분율(%)로 적습니다.

㉖란은 전년도에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하여 판매한 품목의 명칭과 연간 판매금액을 만원 단위로 적습니다.

5. 추정 소득·자산·부채 : 전년도의 해당 소득금액을 적습니다.(작성기준일 준수)

⑪란은 전년도의 농업소득 총액을 적습니다.

⑫란은 아래의 농업 외 소득금액 총액을 적습니다.

- 어업, 농산물 가공업, 농업서비스, 제조업 등 기타 산업 종사를 통해 전년도에 얻은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 농업 외 산업 종사로 지급받은 임금 및 다른 농가에 고용되어 지급받은 소득을 적습니다.

- 임대수입(농지, 대지, 시설물, 대농구 등), 이자·배당수입, 유가증권 매매차익 등의 금액을 적습니다.

- 농업보조금, 실업수당, 산재보험금, 기초연금, 같이 살지 않는 가족 또는 친인척 등 다른 가구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은 용돈·생활비 등

- 경조수입(축의금, 조의금 등), 퇴직일시금, 사고보상금, 이주인 주거대책비 일시금, 세금 환급금, 사례금 등 비정기적으로 정부, 공공기관, 다른 가구 등으로부터 얻은 소득금액

⑬란은 아래의 자산 총액을 적습니다.

- 토지, 건물, 기계·기구 및 비품, 대(大)식물과 대(大)동물 등 고정자산의 금액

- 현금, 예금, 저축성 보험금, 껌돈, 빌려준 돈, 미수금, 선급금 등 금융자산의 금액

- 소(小)동물, 미처분 농축산물, 미사용 구입자재 등 재고자산의 금액

⑭란은 아래의 부채 총액을 적습니다.

- 생산성 자금 중 영농투자 확대(경작지, 건물, 기계, 비료, 농약, 동식물, 사료 구입 등)를 위하여 차입한 부채의 금액

- 가계운영을 위한 생산성 자금(주거용 건물), 문화용품비, 관혼상제비, 의료비, 교육비, 기타 생활비 등 가계운영을 위하여 차입한 부채의 금액

- 생산성 자금 중 검열활동(토지·건물·기계 구입, 그 밖의 검열활동을 위한 지출)을 위하여 차입한 부채의 금액

- 토지, 건물 등을 빌려주고 받은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재산증식을 위한 생산성 자금(검열 및 영농활동과 관계없이 재산증식을 위한 토지, 임야 등의 부동산 구입)을 위한 부채, 다른 사람의 채무 보증을 선 후 대신 갚게 된 부채 등의 금액

※ 등록신청서 아래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구매영수증(농산물판매영수증), 이사회(총회)회의록, 사업자등록증명서

- 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확인서, 고용계약서 중 택 1 : 영농조합법인은 대표자를 포함한 조합원 5명 이상이 농업인, 농업회사법인은 총 출자액의 10% 이상을 농업인이 출자

보조금등 신청 시 첨부서류

1. 쌀직불금(고정·변동) 신청: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면장·동장이 농지원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같은 항 제1호 단서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않은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 2)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농지인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규칙 제3조제3호 및 제4호나목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관내경작자: 1)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서류

- 1) 관내(관내 이외의 자 공통)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장·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장·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2) 쌀 등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판매분만 해당한다)
- 3) 농약·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한다)
- 4) 종자·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한다)
- 5) 벼 등의 계약재배를 증명하는 서류
- 6) 그 밖에 논농업에 종사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관내경작자 외의 자: 다음 1) 및 2)의 서류

1) 관내(관내 이외의 자 공통)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장·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장·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장·통장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가목2)부터 6)까지 중 2개 이상의 서류

보조금등 신청 시 첨부서류

4. 신청인이 쌀직불금(고정·변동)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업 외의 종합소득 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 다만,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 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해당 농지가 타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쌀소득등보 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직전 연도에 무단점유가 아닌 것으로 증명된 농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및 임대권·임차권의 변화가 없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II. 밭고정직불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신청 :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면장·동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같은 항 제1호 단서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않은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 2)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 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 이전 밭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로서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농지인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신청인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규칙 제3조제3호 및 제4호나목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는 농지를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으로 등록신청할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그 외 증명서류는 Ⅰ. 쌀직불금(고정·변동) 신청의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와 동일합니다.

III. 조건불리보조금 신청: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면장이 농지원부, 토지대장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인이 해당 농지의 경작자(초지를 관리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예시) 신청자 명의의 영농자재 구입 영수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 계약재배 계약서, 초지조성허가증 등

- * 다만, 약정신청서 첨부서류를 농업경영체등록정보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음

2. 임차/사용차 농업인/농업법인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등 무단으로 점유한 농지 또는 초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 읍·면장(임대차) 확인서

- * <사업시행지침서 별지 제7호 서식>는 개인간 임대차/사용대차가 가능한 농지 중 농지소유자의 해의 장기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만 사용

3. 논농업·밭농업·조건불리 농지(초지) 이용 사실확인서 <사업시행지침서 별지 제4호 서식>

- * 다만, 신청직전 연도 신청(등록) 농지의 경우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정당하게 직불금이 지급되었다면 생략 가능

- * 직접지불금 신청시 각종 증빙서류의 농지 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등록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료 한정

4. 그 외 증명서류는 Ⅰ. 쌀직불금(고정·변동) 신청의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와 동일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1. 등록번호		최초등록일자		최종수정일자												
2. 경영주 (법인명 및 대표자)		경영주 성명 (법인명 및 대표자)														
		공동경영주 성명 (법인등록번호)														
		변경이력 []표시, []미표시														
3. 경영주 외 농업인 성명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4. 주소(법인 주소)																
5. 농지 및 농작물 생산																
농지 번호	농지 소재지		지목		경영형태		농지면적(㎡)									
			공부	실제	자경	공유	임차	공부	실제 관리							
품목별 재배면적								미이용								
재배품목 (예정품목 포함)	노지	시설						휴경	폐경							
		온실 (유리)	온실 (경질판)	온실 (비닐)	육묘장 (유리)	육묘장 (경질판)	육묘장 (비닐)			재배사						
		변경이력 []표시, []미표시														
6. 가축·곤충 등 사육 시설 및 규모 ([]표시, []미표시)																
사육 시설					사육 정보											
사육시설 소재지		시설 면적(㎡)		자영·임차	용도	사육품목	사육 규모									
		공부	실제				마릿수/군/㎡									
7. 직불금 및 정부보조, 인증현황 ([]표시, []미표시)																
직불금(천원)																
연도	농지 번호	쌀고 정	쌀변 동	밭고 정	논이 모작	조건 보리	경관 보전	친환 경	경영 이양	정부보조·융자금				친환경 등 인증 정보		
										정책 사업명	면적 (㎡)	지원 금 합계	지원금	인증 종류	인증 품목	인증 면적 (㎡)
정부보조·융자금																
친환경 등 인증 정보																
8.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및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현황 ([]표시, []미표시)																
교육 이수 정보																
성명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종류	품목	선정 연도				
9. 농업용 면세유류 배정량 ([]표시, []미표시)																
유종별 배정량(ℓ)																
성명	합계		휘발유	경유	등유	윤활유	중유	가스	부생연료유(호)							
<p>위 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변경등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직인</p> <p>※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농업경영체 등록지에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된 정보는 관할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0000-0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000.00.00)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p> <p>※ 본 경영체 등록정보는 농업인(농업법인)이 자율적으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등록된 정보로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p> <p>■ 문의처: ☎ 000)0000-0000</p>																

농업경영체 증명서			
1.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최초등록일자		최종수정일자
2. 경영주 (대표자 및 법인명)	경영주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공동경영주 (법인명)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3. 경영주 외 농업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최초등록일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최초등록일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최초등록일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최초등록일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최초등록일자
4. 주소 (법인 주소)			
<p>「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align-items: center; margin-top: 20px;">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20px;"> <p>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p> </div>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color: red;"> <p>직인</p> </div> </div> <p style="margin-top: 20px;">※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농업경영체 등록지에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된 정보는 관할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0000-0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000.00.00)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p> <p>※ 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농업인(농업법인)이 자율적으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등록된 정보로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p>			
<p>■ 문의처: ☎ 000)0000-0000</p>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시행 2016.9.9]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85호, 2016.9.9,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과), 044-201-151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농업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농업인의 확인 신청, 확인 기준, 확인 절차 및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2. "농업인 확인"이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농업인임을 이 고시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장 및 사무소장(이하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이라 한다)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지"란 「농지법」 제2조제1호의 농지를 말한다.

제3조(농업인 확인 신청)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농업인 확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신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농업인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의 관할이 다를 경우 농지 소재지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을 경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4조(농업인 확인 기준) 이 고시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업인 확인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 나. 농지법 제50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별표 1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농지원부 등본을 교부받아 제출한 사람
 - 다. 농지법 제20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지정통지서를 제출한 사람
 - 라. 농지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 마. 나목과 다목, 나목과 라목, 나목·다목·라목 및 다목과 라목에 따른 각 농지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이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한 사람
 - 바. 기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
 - (1) 신청인의 주소지(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말한다)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이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농업인임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확인한 경우
2.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 가. 다음의 자와 연간 120만원 이상의 농산물(법 시행령 제5조의 농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농산물 출하·판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 등)를 제출한 사람
 -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매매참가인·산지유통인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2)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영업을 허가받거나 신고·승계한 자
 - (3) 「축산법」 제34조에 따라 개설된 가축시장을 통하여 가축을 구매하는 자
 - (4)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이 고시에서 생산자단체는 이를 말한다)
 - (5)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영업을 개시한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자
 - (6)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나.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 (1) 대추나무·호두나무 : 1천제곱미터 이상
 - (2) 밤나무 : 5천제곱미터 이상
 - (3) 잣나무 : 1만제곱미터 이상
 - (4) 연간 표고자목(표고자목) : 20세제곱미터 이상
 - (5)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자
 - (6) 분재소재를 생산하거나 산나물·야생버섯 등 산림부산물을 재배하는 자 : 3백제곱미터 이상의 포지(圃地)를 확보
 - (7) (1)에서 (6)까지 이외의 목본 및 초본식물 : 3만제곱미터 이상
- 다. 기타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사람
- (1)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의 시설을 설치하여 식량·채소·과실·화훼·특용·약용작물, 버섯, 양잠 및 종자·묘목(임업용은 제외한다)을 재배하는 사람
 - (2) 농지에 660제곱미터 면적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은 제외한다)을 재배하는 사람
 - (3)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별표 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나 별표 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면적에 별표 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 (4)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부화업이나 종축업을 등록한 사람
 - (5) 농지에 3천제곱미터 이상의 조정수를 식재 생산하는 사람
 - (6)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 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 (7) 기타 신청인의 주소지(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말한다)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이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농업인임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확인한 경우
3.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 가.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 (1) 제1호에서 제2호까지의 농업인 충족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농업인(이하 "농업경영주"라 한다)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된 사람(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를 달리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는 예외로 하고, 농업인과 혼인한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상의 체류지가 농업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동일한 사람)
 - (2) (1)의 농업경영주의 주소가 법 제3조제5호의 농촌이나 법 제61조의 준농촌에 위치하고 농업경영주와 가족원인 농업종사자가 실제 함께 거주하는 사람 또는 농업경영주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가족원으로서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영농사실을 확인받은 사람
 - (3) 「국민연금법」 제9조의 지역가입자이거나 제10조의 임의가입자(「국민연금법」 제13조제1항의 임의계속가입자 중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단, 18세 이상)이거나 제6조제3항의 지역가입자
- 나.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의 경우에는 농업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 다. 기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
- (1) 신청인의 주소지(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말한다)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이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농업인임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확인한 경우
4.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업 생산 및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고용된 사람이 1년 이상(계속 종사를 말한다)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의 농업 생산 및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활동에 고용된 사람이 1년 이상(계속 종사를 말한다)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다만, 법인의 대표와 등기이사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5조(농업인 확인 절차 등) ①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제3조의 농업인 확인 신청서 및 제4조·제11조의 관련 첨부 증빙자료를 검토(檢討)하여 농업인 확인서의 발급여부를 결정한다.

1. 제4조제1호가목에서 바목까지
2. 제4조제2호가목 및 다목(7)
3. 제4조제3호가목 및 다목

4. 제4조제4호
- ②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의 발급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농업인 사실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4조제2호나목 및 다목(1)에서 (6)까지
 2. 제4조제3호나목
- ③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의 발급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확인한다.
 1. 법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신청자의 농업경영정보 일치여부
 2. 농업경영주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생산요소 등의 선택·사용권과 생산 농산물의 판매·처분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농작물재배업·축산업·임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
 3.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주의 농작물재배, 가축사육, 조림·육림, 임업용 유실수재배 및 산림부산물 채취 등의 활동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제 고용되거나, 가족노동을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 가. 고용노동 : 최소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노동력 제공여부(여러 명의 농업경영주에게 수일간이나 하루 중 4시간이상 연속적으로 번갈아가며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나. 가족노동 : 최소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주민등록표에 농업경영주와 함께 가족원으로 등록된 상태에서 노동력 제공여부(다만 경영주의 배우자로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별지7호서식의 영농사실을 확인받은 가족원)
4. 신청자의 주소지(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말한다)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이장·통장이나 이웃주민의 의견(이웃주민은 2명 이상이어야 한다)
- ④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농업인 확인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문서(관련 증빙자료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생산자단체 등에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사실여부의 확인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생산자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속하고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농업인 확인서 발급) ①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제3조에 따라 농업인 확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4조의 농업인 확인 방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업인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한다.

- ②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제3조에 따른 농업인 확인 신청서가 제4조의 농업인 확인 방법 중 어느 하나에도 맞지 않을 때에는 농업인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내에 이 고시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통지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는 발급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유효하며, 이 기한이 지나면 다시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 ④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한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이유와 연장 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가능한 한 빨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및 사후관리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조에서 제6조까지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신청, 확인 기준, 확인 절차 및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의 사무를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다.

- ②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농업인의 확인 등과 관련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문서를 접수한 날과 발송한 날부터 5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등록대장에 대하여는 각 기관의 업무실정에 맞게 작성하여 관리하되 별지 제6호서식을 사용하고 각 등록대장의 보관·관리기간은 제2항 전단을 준용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관련 문서 및 등록대장 등의 보관·관리기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별도 지침으로 보관·관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④ 이 고시에 따라 농업인 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처리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얻게 된 신청인에 관한 정보 및 관련증빙자료 등은 이 고시에 따른 업무처리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신청인의 허위증빙 자료 등) 신청인이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작성한 기술내용 또는 해당기관에 제출하거나 첨부한 관련증빙자료 등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른 것으로 판명되는 때에는 이 고시에 따른 농업인 확인은 유효하지 않다.

제9조(개인정보조회 양식) 이 고시에 따라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생산자단체 등에 대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농업인 사실 확인 등과 관련하여 행하는 신청자에 관한 개인정보조회동의는 별지 제5호서식을 사용한다.

제10조(농업인 확인서를 요구하는 자 등의 준수사항) 법령이나 훈령·예규·고시·공고 등으로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농업인 기준을 적용하거나 확인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등(소속·관할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방식 또는 다음 각 호의 공적 확인방법으로 농업인 기준의 충족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에게 이 고시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 및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농지원부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토지등기부
4. 토지대장
5. 임야대장
6. 건물등기부
7. 건축물대장
8.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와 관련한 농업경영정보 등록부

제11조(농업인 확인 신청서의 첨부서류 등)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거나 기타 요건도 충족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호다목 : 해당농지의 농지원부등본·토지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 중 어느 하나를 첨부
2. 제4조제1호마목 : 각 목의 농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
3. 제4조제2호가목 : 해당토지의 농지원부등본·토지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임야대장등본 중 어느 하나를 첨부
4. 제4조제2호가목(3) : 가축시장의 개설·관리자인 축산업협동조합장의 확인서를 첨부(다만, 가축시장을 관할하는 축산업협동조합장이 직인으로 매매사실을 확인한 매매계약서를 첨부할 수 있다)
5. 제4조제2호나목 : 해당산지의 임야대장등본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제1항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다만, 임차의 경우에는 서면 계약서를 첨부한다)
6. 제4조제2호다목(4) :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산림조합장의 확인서를 첨부
7. 제4조제2호다목 : 해당토지의 농지원부등본·토지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임야대장등본 중 어느 하나 및 해당건축물의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등본 중 어느 하나를 첨부
8. 제4조제3호가목(1)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9. 제4조제3호가목(2)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당지역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
10. 제4조제3호가목(3) : 「국민연금법」 제8조의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의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는 확인서를 첨부(다만, 신청자가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의 가장 최근 납입고지서 또는 납입영수증·납입사실통보서 등을 제출하고 이를 통해 해당기관에서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전자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에 대한 확인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11. 제4조제3호나목 : 고용계약서
12. 제4조제4호 : 고용계약서

부칙 <제2016-85호, 2016.9.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단 비교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46호, 2017.3.21., 일부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309호, 2017.9.19., 일부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85호, 2017.9.2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어업의 공동경영을 활성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농어촌 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17.3.21>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7, 2015.1.6, 2015.6.22>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어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어업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어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6.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 7. “농어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8.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5.27, 2011.3.9, 2015.6.22, 2017.3.21〉*

1. 농업경영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축사·원에 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2. 어업경영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어선·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 절차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의 작성·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조(등록대상 농업경영정보 및 어업경영정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1.9.9, 2013.3.23, 2014.4.30, 2017.9.19〉*

1. 농업경영 관련 정보: 별표 1에 따른 정보
2. 어업경영 관련 정보: 어업인의 성명·주소, 어업법인의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어업 면허·허가·신고 현황, 어업시설 및 양식시설의 면적, 어선규모, 경영형태, 어종별·품목별 생산량 및 그 밖에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1.9.9, 2013.3.23, 2014.4.30〉*

1. 별표 1 제1호가목, 같은 표 제3호가목, 같은 표 제4호가목 또는 같은 표 제6호가목의 정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가 변경된 경우
2. 별표 1 제4호나목 또는 같은 표 제6호 다목의 정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3. 제1항제2호 중 어업인의 성명·주소, 어업법인의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어업 면허·허가·신고 현황 또는 어선규모가 변경된 경우
4. 제1항제2호 중 어업시설 및 양식시설의 면적 또는 어종별·품목별 생산량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제목개정 2017.9.19〕

제2조(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0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의 정보는 해당 정보주체가 등록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 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3.6.12, 2014.8.7, 2015.7.7〉*

1.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정보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정보
3. 농업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
4.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제39조에 따른 유기식품등 인증 및 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정보
5. 삭제 (2016.3.24)
6. 연간 농업 외 소득에 관한 정보: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농업 외 소득을 말하며, 농업인의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 외 소득과 세대원 중 농업인의 농업 외 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 농업 외 소득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강의 추정값을 등록할 수 있다.
7. 자산 및 부채(負債)에 관한 정보: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말하며, 농업인의 경우에는 자기의 자산 및 부채와 세대원 중 농업인의 자산 및 부채를 각각 합산한 것을 말한다.
8. 직접 생산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농업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에 관한 정보: 유통·가공 대상 품목, 품목별 연간 판매액, 품목별 판매처와 그 비율에 관한 정보
9.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② 영 제2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2.7.20, 2013.3.24, 2013.7.3〉*

1. 어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정보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어업인후계자 선정정보
3. 어업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
4.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p>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제39조에 따른 유기식품의 인증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정보</p> <p>제3조(농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를 등록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i>[개정 2016.3.24]</i></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별표 1 제5호 각 목에 따른 보조금 등의 신청(이하 "보조금등의 신청"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2. 보조금등의 신청을 하는 경우: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장·면장·동장"이라 한다)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p>② 읍장·면장·동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등록신청서를 제5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p> <p>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등록신청서의 내용 중 보조금등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5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읍장·면장·동장에게 알려야 한다.</p> <p>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농업경영정보 등록부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주어야 한다.</p> <p>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가 신청하면 별지 제2호의3서식의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p> <p>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된 농업경영정보를 분석·가공할 수 있다.</p> <p><i>[전문개정 2014.8.7]</i></p>
--	--	--

		<p>제3조의2(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어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이하 "어업경영정보"라 한다)를 등록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i><개정 2015.7.7></i></p> <p>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어업경영정보 등록부를 작성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주어야 한다. <i><개정 2015.7.7></i> <i>[본조신설 2014.8.7]</i></p> <p>제3조의3(변경 등록대상 정보) 영 제2조제2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i><개정 2016.3.24></i></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별표 1 제3호나목의 정보 중 농업법인의 소재지 정보 2. 영 별표 1 제3호다목·라목의 정보 2의2. 영 별표 1 제5호의 정보 3. 영 별표 1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 4. 제2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정보 <p><i>[본조신설 2014.8.7]</i></p> <p>제4조(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p> <p>① 농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를 읍장·면장·동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읍장·면장·동장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변경등록신청서 처리업무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i><개정 2016.3.24></i></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조금등의 신청을 하면서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 2. 영 별표 1 제5호의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은</p>
--	--	---

		<p>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p> <p>④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받은 농업경영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p> <p>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받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받으면 농업경영정보 등록부를 변경하고, 해당 농업경영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변경등록 확인서를 발급해주거나 전화로 변경등록된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p> <p><i>[전문개정 2014.8.7]</i></p> <p>제4조의2(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p> <p>① 어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면 어업경영정보가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받은 어업경영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p> <p>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받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받으면 어업경영정보 등록부를 변경하고, 해당 어업경영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등록 확인서를 발급해주거나 전화로 변경등록된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p> <p><i><개정 2015.7.7></i> <i>[본조신설 2014.8.7]</i></p> <p>제6조(조사원의 활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부의 작성·관리 및 현지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을 보조하는 조사원을 둘 수 있다.</p> <p><i><개정 2011.9.9, 2013.3.24, 2014.8.7></i> <i>[제목개정 2011.9.9]</i></p>
--	--	--

<p>제5조(등록정보의 확인 등)</p> <p>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의 등록을 원활히 하고, 같은 조에 따라 등록된 농업경영정보(변경등록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등록정보"라 한다)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i>〈개정 2013.3.23, 2017.3.21〉</i></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i>〈개정 2013.3.23〉</i></p> <p>③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농장·양식장 등을 출입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제3조(자료의 제공방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자료를 기관 간 정보시스템의 연계 등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i>〈개정 2013.3.23〉</i></p>	<p>제5조(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부의 작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i>〈개정 2013.3.24〉</i></p> <p>제6조(조사원의 활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부의 작성·관리 및 현지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을 보조하는 조사원을 둘 수 있다. <i>〈개정 2011.9.9, 2013.3.24, 2014.8.7〉</i> <i>[제목개정 2011.9.9]</i></p> <p>제7조(증표)</p> <p>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p> <p>② 제6조에 따른 조사원의 증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i>〈개정 2011.9.9〉</i></p>
<p>제6조(등록정보의 수정등 요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등록정보를 확인한 결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이하 이 조에서 "수정등"이라 한다)이 필요하면 농어업경영체에 등록정보의 수정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i>〈개정 2013.3.23, 2017.3.21〉</i></p> <p>② 제1항에 따른 수정등의 요청을 받은 농어업경영체는 요청 내용을 반영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정보가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4조(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① 농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를 읍장·면장·동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읍장·면장·동장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변경등록신청서 처리업무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i>〈개정 2016.3.24〉</i></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조금등의 신청을 하면서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 2. 영 별표 1 제5호의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p> <p>④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받은 농업경영체는 요청받</p>

		<p>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p> <p>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받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받으면 농업경영정보 등록부를 변경하고, 해당 농업경영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변경등록 확인서를 발급해주거나 전화로 변경등록된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p> <p><i>[전문개정 2014.8.7]</i></p> <p>제4조의2(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p> <p>① 어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면 어업경영정보가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받은 어업경영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p> <p>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받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받으면 어업경영정보 등록부를 변경하고, 해당 어업경영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등록 확인서를 발급해주거나 전화로 변경등록된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i><개정 2015.7.7></i></p> <p><i>[본조신설 2014.8.7]</i></p>
--	--	--

<p>제6조의2(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p> <p>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어업경영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하는 경우에는 정정 또는 말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농어업경영체에 알려야 한다. 다만,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에 관한 통지 및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i>[본조신설 2017.3.21]</i></p>		<p>제4조의3(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공고)</p> <p>① 법 제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대한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 사실 통지는 별지 제6호의3서식에 따른다.</p> <p>② 법 제6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대한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 사실 공고는 별지 제6호의4서식에 따른다.</p> <p>③ 제2항에 따른 공고는 해당 농업경영체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 또는 사무소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p> <p><i>[본조신설 2017.9.20]</i></p>
<p>제6조의3(이의신청)</p> <p>①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가 정정 또는 말소된 농어업경영체는 그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사절차 등 이의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i>[본조신설 2017.3.21]</i></p>		<p>제4조의4(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p> <p>① 농업경영체는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의신청의 심사·결정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③ 이의신청을 한 농업경영체는 심의회에 출석하여 이의신청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p> <p>④ 제2항에 따른 심의회 구성 및 운영의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다.</p> <p>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의신청의 심사·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6서식의 이의신청 심사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i>[본조신설 2017.9.20]</i></p>

<p>제7조(농어업경영정보의 보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7조의2(부기등기 등)</p> <p>① 농어업경영체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이라는 사항 2. 보조금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耐用年數)를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p>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p> <p>③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설정한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제33조 및 제3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전부를 국가에 반환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확인 받은 경우 2. 보조금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p>[본조신설 2015.1.6]</p>		<p>제7조의2(부기등기 관련 제출 서식)</p> <p>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2.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p>②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5.7.7]</p>

<p>제8조(자금 지원 등의 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는 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소득 안정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i>〈개정 2013.3.23, 2015.1.6〉</i></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한 농어업경영체 2.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농어업경영체 3.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을 제7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한 농어업경영체 		
--	--	--

제3장 후계농어업인력의 양성과 경영 규모화

<p>제9조(학교 등 농어업교육 지원)</p>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 농어업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농업 및 수산업 계열학교 또는 전문교육기관이 실시하는 농어업 관련 실습교육 또는 농어업창업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농어업경영체와 협력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려는 자의 농어업현장연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p> <p>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의 영농 또는 영어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 또는 후계어업경영인(後繼漁業經營人)(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i>〈개정 2011.11.22, 2015.1.6〉</i></p> <p>② 후계농어업경영인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i>〈신설 2010.1.25, 2013.3.23, 2015.6.22〉</i></p>		<p>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기준 등)</p> <p>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선정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i>〈개정 2013.3.24, 2016.8.29〉</i></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령: 신청일 현재 만 50세 미만일 것 2. 영농·영어경력: 영농·영어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 3. 교육이수 실적: 대학의 농수산 관련 학과나 농수산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농어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p>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선정 인원의 5분의 1 이상을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i>〈신설 2016.8.29〉</i></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i>〈개정 2013.3.24, 2016.8.29〉</i></p> <p><i>[제목개정 2016.8.29]</i></p>
--	--	--

<p>1.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p> <p>2. 용자금의 사용 및 사업추진현황 등에 관한 사항</p> <p>3. 그 밖에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③ 심사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0.1.25〉</p> <p>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정된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발전단계별로 자금, 컨설팅 또는 농업기술·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25〉</p> <p>⑤ 시·도지사는 매년 9월 30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후계농어업경영인 또는 후계농어업경영인 현황 등의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p> <p>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5, 2013.3.23, 2015.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연령, 영농·영여 경력 및 교육이수 실적, 그 밖에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 2.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3. 제3항에 따른 현지조사의 방법·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제5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후계농어업경영인 또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세부내용 <p>⑦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시행일:2012.7.1] 제10조제1항 중 특별자치시에 관한 부분</p>		<p>제8조의2(후계농어업경영인의 현황 자료)</p> <p>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현황 2.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취소현황 3.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지원자금 회수현황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후계농어업경영인 대상 정책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본조신설 2015.7.7]</p>
---	--	---

농업경영인 관련 규정
 농업경영인 업무
 농업경영인 경영
 농업경영인 우수

<p>제11조(농어업경영의 규모화)</p>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경영규모 확대 및 농어업의 공동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경영체의 경영규모 확대 촉진을 위하여 농지, 양식장, 어선 또는 농어업용 시설의 매매 등을 우선 지원하거나 알선·중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제4장 삭제 (2017.3.21)</p>		
<p>제12조 삭제 (2017.3.21.) 제13조 삭제 (2017.3.21.) 제14조 삭제 (2017.3.21.) 제15조 삭제 (2017.3.21)</p>	<p>제4조 삭제 (2017.9.19.) 제5조 삭제 (2017.9.19.) 제6조 삭제 (2017.9.19.) 제7조 삭제 (2017.9.19.) 제8조 삭제 (2014.8.6)</p>	<p>제9조 삭제 (2017.9.20) 제10조 삭제 (2017.9.20)</p>
<p>제5장 농어업법인의 설립 및 지원 등</p>		
<p>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p> <p>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5.1.6, 2015.6.22></p> <p>②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5.1.6, 2015.6.22></p> <p>③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p> <p>④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p> <p>⑤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제3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거나 제4항에 따라</p>	<p>제9조(조합법인의 설립등기)</p> <p>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이 신청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13호의 사항 2.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 및 임원(이사와 감사를 두는 조합법인만 해당한다)의 주소와 성명 3. 2명 이상의 조합원이 공동으로 조합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4.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출자액 <p>③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5.12.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창립총회 의사록 2. 정관 3.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4.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영농조합법인의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농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영어조합법인의 경우에는 5인 이상의 	<p>「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p> <p>「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 제3조(보조금 교부대상 사업 및 우선순위의 결정)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수산업법」 제8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라 한다)의 대상사업 및 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2015.11.4></p> <p>제11조(영농조합법인의 설립등지 등)</p> <p>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등기 사실을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설립등기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 2.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한다) 명부 3. 창립총회의사록 4.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법 제18조의2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p>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의 경우 특별자치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명부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p> <p>⑥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출자, 사업범위, 정관 기재 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6〉</p> <p>⑦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업등기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0, 2015.1.6, 2017.3.21〉</p> <p>⑧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6〉</p>	<p>조합원이 어업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p> <p>제9조의2(조합법인의 변경등기)</p> <p>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법인을 대표하는 조합원이 신청인이 된다.</p> <p>②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변경등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8조의2제5항에 따라 공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18조의2제6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p>[본조신설 2015.7.6]</p>	<p>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영농조합법인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영농조합법인 변경등기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등기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2.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3.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p>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의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영농조합법인 명부에 이를 기재하고 영농조합법인의 육성·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5.7.7] [중전 제11조는 제15조로 이동 (2015.7.7)]</p> <p>제12조(영어조합법인의 설립통지 등)</p> <p>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영어조합법인 설립등기 사실을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설립등기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 2.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한다) 명부 3. 창립총회의사록 4.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법 제18조의2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영어조합법인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p>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영어조합법인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영어조합법인 변경등기통지서</p>
--	---	--

		<p>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등기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2.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p>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영어조합법인 명부에 이를 기재하고 영어조합법인의 육성·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p> <p><i>[본조신설 2015.7.7]</i> <i>[충전 제12조는 제16조로 이동 (2015.7.7)]</i></p>
	<p>제10조(조합법인에 대한 출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현금 및 그 밖의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②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장, 현금 및 그 밖의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p>제11조(조합법인의 사업범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i><개정 2015.7.6></i>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2.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3. 농산물의 공동 출하·유통·가공 및 수출 4. 농작업의 대행 5.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6.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② 영어조합법인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i><개정 2015.7.6></i>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2. 어업과 관련된 공동시설의 설치·운영 3. 수산물의 공동 출하·유통·가공 및 수출 4.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5. 그 밖에 영어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p><i>[제목개정 2015.7.6.]</i></p> <p>제12조(정관의 기재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조합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1. 명칭 2. 목적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격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除名)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탈퇴 및 제명의 경우 지분의 계산에 관한 사항 8. 출자액의 납입방법·산정방법과 조합원 1명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9.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0. 적립금의 비율과 그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1.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2. 총회나 그 밖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3.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 그 사유에 관한 사항</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법인의 효율적 설립을 위하여 조합법인의 정관례를 정하고 이를 정관 작성의 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p> <p>〈개정 2013.3.23.〉</p> <p>제13조(조합법인의 해산) 조합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개정 2015.7.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 2. 조합법인이 합병된 경우 3. 조합법인이 파산한 경우 4.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176조에 따른 법원의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5. 조합원이 5명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명 이상이 되지 아니한 경우(협동양식어업면허를 취득한 영어조합법인은 제외한다) 6.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조합법인의 해산)

<p>17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등)</p> <p>①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p> <p>②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조합법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p> <p>③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15.1.6〉</p> <p>④ 영농조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5.1.6〉</p> <p>⑤ 영어조합법인은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다만, 「수산업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협동양식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의 자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6〉</p> <p>⑥ 어업인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영어조합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어조합법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5.1.6〉</p> <p>⑦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15.1.6〉</p>	<p>제14조(준조합원의 자격)</p> <p>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농조합법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을 제공하는 자 2. 영농조합법에 농지를 임대하거나 농지의 경영을 위탁하는 자 3. 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구입·유통·가공 또는 수출하는 자 4. 그 밖에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에 출자를 하는 자 <p>②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영어조합법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어조합법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 및 자본을 제공하는 자 2. 영어조합법인이 생산한 수산물의 대량실수요자·유통업자 및 가공업자 <p>제15조(영농조합법인의 생산자단체 가입)</p> <p>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농업생산자단체는 농업협동조합·산림조합 및 연연초생산협동조합으로 한다. 〈개정 2015.7.6〉</p> <p>제16조(협동양식어업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자격 등) 「수산업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협동양식어업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협동양식어업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을 구역으로 하는 어촌계의 계원 2. 제1호에 따른 어촌계 구역에 주소를 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	---	--

<p>제18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직변경)</p> <p>①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총 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형태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i>〈개정 2015.1.6〉</i></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3. 유한회사 4. 주식회사 <p>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일부를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야 한다. <i>〈개정 2015.1.6〉</i></p> <p>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전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여야 한다. <i>〈신설 2015.1.6〉</i></p> <p>④ 제1항제4호에 따라 조직을 변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조합법인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순재산액이 자본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결의 당시의 조합원이 연대하여 그 부족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i>〈신설 2015.1.6〉</i></p> <p>⑤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제1항에 따라 조직변경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 내에, 조합 채권자에 대하여 조직변경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상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 따로 공고 내용을 알려야 한다. <i>〈개정 2015.1.6〉</i></p> <p>⑥ 채권자가 제5항에 따른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조직변경의 결의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i>〈개정 2015.1.6〉</i></p> <p>⑦ 채권자가 제5항의 기간 내에 조직변경의 결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직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i>〈개정 2015.1.6〉</i></p> <p>⑧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제1항의 조직변경을 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해산등기를,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은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i>〈개정 2015.1.6〉</i></p> <p>⑨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p>		
---	--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

법률
 제18조

<p>에 따라 유한책임사원 또는 주주가 된 자는 제8항에 따른 분점 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등기 후 2년이 될 때까지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서 책임을 진다. <i>(개정 2015.1.6)</i></p>		
<p>제18조의2(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합병·분할)</p> <p>①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p> <p>②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합병 또는 분할할 경우 그에 따른 합병신고, 설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p> <p>③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p> <p>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조직변경에 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p> <p>⑤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제1항에 따라 합병·분할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 내에, 조합채권자에 대하여 조직변경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상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 따로 공고 내용을 알려야 한다.</p> <p>⑥ 채권자가 제5항에 따른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합병·분할의 결의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p> <p>⑦ 채권자가 제5항의 기간 내에 합병·분할의 결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병·분할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p> <p>⑧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합병을 한 때에는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그에 따른 변경등기, 해산등기 또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p> <p><i>[본조신설 2015.1.6]</i></p>		

<p>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p> <p>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 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5.1.6〉</p> <p>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1.11.22〉</p> <p>③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5.1.6〉</p> <p>④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로 하되, 어업인이나 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1.11.22〉</p> <p>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은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명부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p> <p>⑥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출자, 부대사업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6〉</p> <p>⑦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을 준용하고 어업회사법인의 어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과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1.6〉</p> <p>⑧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7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p> <p>①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는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3. 주식회사 4. 유한회사 <p>② 어업인 및 어업생산자단체는 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3. 주식회사 4. 유한회사 <p>③ 법 제19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8.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8조제1항에 따른 출자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각 주식인수인의 성명, 주소, 인수한 주식의 수 및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해당 여부를 표시한 서류와 해당 주식인수인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주식회사 외의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인 사원의 명단 및 해당 사원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p>④ 법 제19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어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8.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항에 따라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가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출자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각 주식인수인의 성명, 주소, 인수한 	<p>제13조(농업회사법인의 설립등지 등)</p> <p>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이 설립등기 사실을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농업회사법인 설립등기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 2. 임원 명부 3. 창립총회의사록 4.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농업회사법인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5. 조직변경을 의결한 총회의사록(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농업회사법인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p>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적 2. 상호 3. 본점 소재지 4.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유한·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자본금의 총액 <p>④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이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농업회사법인 변경등기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등기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2.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p>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p>
---	--	--

농업법인·어업법인 관련 규정인기
농업법인·어업법인
농업법인경영 우수사례

장문

	<p>주식의 수 및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 단체 해당 여부를 표시한 서류와 해당 주식인수인이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p> <p>나. 주식회사 외의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인 사원의 명단 및 해당 사원이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p> <p>제18조(농어업인 등이 아닌 자의 출자한도)</p> <p>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총출자액의 100분의 90 2.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 <p>②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총출자액의 100분의 90 2. 어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 <p>[전문개정 2012.5.22.]</p> <p>제19조(부대사업의 범위) ①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개정 2015.7.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2.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 사업 3.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4.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5. 소규모 관개시설(灌溉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p>② 어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6, 2016.6.2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어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2. 영어에 필요한 수산종자생산업 3. 수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4. 수산장비 등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p>[제목개정 2015.7.6]</p>	<p>19호서식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명부에 이를 기재하고 농업회사법인의 육성·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5.7.7] [중전 제13조는 제17조로 이동 <2015.7.7>]</p> <p>제14조(어업회사법인의 설립통지 등)</p> <p>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어업회사법인이 설립등기 사실을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어업회사법인 설립등기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 2. 임원 명부 3. 창립총회의사록 4.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어업회사법인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5. 조직변경을 의결한 총회의사록(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영어조합법인이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어업회사법인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p>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어업회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적 2. 상호 3. 본점 소재지 4.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유한·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자본금의 총액 <p>④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어업회사법인이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어업회사법인 변경등기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등기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2.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p>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p>
--	--	--

		<p>다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어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어업회사법인 명부에 이를 기재하고 어업회사법인의 육성·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p> <p><i>[본조신설 2015.7.7]</i> <i>[중전 제14조는 제18조로 이동 (2015.7.7)]</i></p>
<p>제20조(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기술개발, 경영규모의 확대 또는 농업기계화 및 시설장비 현대화, 경영정보화, 전문인력의 확보 및 인습합병 등을 위하여 자금 및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i>[전문개정 2015.1.6]</i></p>	<p>제20조(정관례의 작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효율적 설립을 위하여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정관례를 정하고 이를 정관 작성의 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i><개정 2013.3.23></i></p>	
<p>제20조의2(실태조사)</p> <p>① 주된 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3년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한다)의 인적 사항, 주소 및 출자 현황 2. 사업범위와 관련된 사항 3. 소유한 농지의 규모 및 경작유무 등 현황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2. 등기소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복사 또는 그 등본·초본의 발급을 요청하는 행위. 이 경우 열람·복사 또는 그 등본·초본의 발급은 무료로 한다. 3.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하는 행위 <p>③ 제2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제20조의2(시정기간)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의 경우 특별자치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0조의2제5항 각 호에 대하여 6개월 이내에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i><개정 2017.9.19></i></p> <p><i>[본조신설 2015.7.6]</i></p>	

<p>④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합원 5명 미만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 2. 비농업인 또는 비어업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이 제19조제2항 또는 제4항에서 정한 출자한도를 초과한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p>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실태조사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i>[본조신설 2015.1.6]</i></p>		
<p>제20조의3(해산명령)</p> <p>①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는 「상법」 제176조에 따른 회사의 해산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회사”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으로 본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합원이 5명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명 이상이 되지 아니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 2. 총 출자액 중 비농업인 또는 비어업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이 제19조제2항 또는 제4항에서 정한 출자한도를 초과한 후 1년 이상 경과한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3. 제16조제6항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 4. 제19조제6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5.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17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6. 제20조의2제5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정명령에 3회 이상 불응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p><i>[본조신설 2015.1.6]</i></p>		

제6장 농어업경영혁신 기반 구축

제21조(농어업경영체의 회계)

- ① 농어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계를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농어업경영의 성과와 재무상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농어업회계기준을 정하여 이를 활용하도록 농어업경영체에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농어업경영 효율화를 위한 지원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농어업회계기준을 활용하는 농어업경영체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2조(농어업교육 계획의 수립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의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에 맞는 경영·기술 교육 또는 전문컨설팅 등의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전문적인 농어업경영·기술 교육 또는 컨설팅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 중에서 전문농어업경영인과 전문농어업법인(이하 "전문농어업경영체"라 한다)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전문농어업경영체의 효율적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문농어업경영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농어업경영체로 지정받은 경우
 2. 전문농어업경영체의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전문 농어업경영·기술 교육, 컨설팅 등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더 이상 전문농어업경영체로 활동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합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⑤ 제2항에 따른 전문농어업경영체 지정대상,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1.6)*

제15조(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문농어업경영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15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기술수준이 있다고 인정되는 농어업인 중에서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개정 2013.3.24)*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9조로 이동 (2015.7.7)]*

	<p>제2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i>〈개정 2013.3.23, 2014.4.30〉</i></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용자·보조금 등의 지원 대상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등록·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 등록부의 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확인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무 4. 삭제 (2017.9.19) 5.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의 경영·기술 교육 또는 전문컨설팅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p><i>[본조신설 2012.1.6]</i></p>	
<p>제23조(농어업인단체 등의 교육운영 지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체에 대한 교육을 하는 농업인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체에 대한 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농어업교육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i>〈개정 2013.3.23〉</i>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체에 대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업교육전문가의 양성, 교육과정의 개발, 교육장소의 제공 또는 농업교육전문가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p>제16조(지역농어업교육계획 수립·시행의 지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역농어업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려는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으면 교육의 내용, 기간, 대상 등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 <p><i>[제12조에서 이동 (2015.7.7)]</i></p>

<p>제24조(교육기관 평가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문농어업경영체 및 제23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농어업인단체 등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전문농어업경영체 또는 농어업인단체 등을 지원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i>(개정 2013.3.23, 2015.1.6)</i></p>		<p>제17조(전문농어업교육인 등의 평가)</p> <p>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i>(개정 2013.3.24)</i></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가의 기본방향 2. 평가의 대상 및 방법 3. 평가결과의 공개 및 활용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전문성·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i>(개정 2013.3.24)</i></p> <p>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세부적인 기준, 항목, 및 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관련 전문기관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i>(개정 2013.3.24)</i> <i>[제13조에서 이동 (2015.7.7)]</i></p>
<p>제25조(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p> <p>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교육기관 또는 단체의 교육정보를 농어업경영체에 제공하고 농어업경영체의 교육이수 실적정보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 또는 통합어업교육정보시스템을 각각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다. <i>(개정 2013.3.23, 2015.1.6)</i></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 또는 통합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체를 교육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교육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교육정보와 농어업경영체의 교육이수 실적정보 등 필요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i>(개정 2013.3.23, 2015.1.6)</i></p> <p>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교육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i>(개정 2015.1.6)</i></p> <p>④ 제2항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교육기관 또는 단체별 입력 또는 제출 대상 정보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i>(신설 2015.1.6)</i></p> <p>⑤ 제1항에 따른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 또는 통합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i>(신설 2015.1.6)</i></p>	<p>제20조의3(대상 정보의 범위)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 또는 통합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입력 또는 제출 대상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과정명, 교육대상, 교육목적 및 필요성, 교육내용, 교육장소, 교육시기 2. 교육에 참여한 강사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강의분야 3. 교육에 참여한 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재배품목 4.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농어업경영정보 5.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경영·기술 교육 또는 전문컨설팅 등의 지원에 관한 정보 6.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문농어업경영인과 전문농어업법인 관련 정보 7. 그 밖에 농어업경영체의 교육에 필요한 관련 정보 <p><i>[본조신설 2015.7.6]</i></p>	<p>제18조(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p> <p>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 제20조의3 각 호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i>(개정 2015.7.7)</i></p> <p>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i>(개정 2013.3.24)</i> <i>[제14조에서 이동 (2015.7.7)]</i></p>

<p>제26조(선도적 농어업경영모델의 확산)</p>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농어업 기술과 지식, 경영 역량을 갖춘 농어업경영체를 선도적 농어업경영모델로 선정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농어업경영체 간 상호교류활동 및 농어업인 교육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27조(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 등)</p> <p>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 관련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교육 및 전문컨설팅 등의 수행·연구·평가·사업관리 등을 담당할 전문기관(이하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p>④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1조(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등)</p> <p>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27조제1항의 역할을 담당할 조직 및 인력 등의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농어업인 교육에 대한 사업관리 등의 실적이 있을 것 <p>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고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교육 및 전문컨설팅 등의 수행·연구·평가·사업관리 등에 관한 운영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제27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9, 2017.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조에 따른 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의 범위: 2017년 1월 1일 제15조에 따른 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요건 등: 2017년 1월 1일 <p>[본조신설 2015.1.6] [제19조에서 이동 <2017.9.20>]</p>

<p>제27조의2(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 등)</p> <p>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은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의 기획, 관리, 평가 및 규제개선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및 조사·연구능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항에 따라 지정 받은 전담기관의 업무실적 등이 현저히 부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이 전담기관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전담기관의 업무, 지정요건 및 절차와 전담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p><i>[본조신설 2015.1.6]</i></p>	<p>제21조의2(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업무 등)</p> <p>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의 기획, 관리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축적·분석 2.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추진실태의 점검 3.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추진성과의 평가 4.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추진체계 개편, 제도개선 및 규제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이 정하는 사항 <p>②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은 별표 2와 같다.</p> <p>③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2.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업무수행 계획서 3. 전문인력 및 시설의 보유 현황 4. 관련 업무 수행실적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은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p> <p><i>[본조신설 2015.7.6]</i></p>	<p>제20조(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지정신청) 영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p> <p><i>[본조신설 2015.7.7]</i></p>
--	---	--

제6장의2 공동농업경영 활성화 <신설 2017.3.21>

제27조의3(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 등)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직화·규모화를 통하여 농업 생산비용 절감과 품질 제고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공동농업경영체 운영계획(농지의 공동 이용계획을 포함한다)이 있을 것
 2. 공동경영 내부규약(공동경영에 따른 비용 및 이익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이 있을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경영 면적 및 참여 농업경영체 수를 갖출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농업경영체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것
 - ③ 제1항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공동농업경영체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할 수 있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하여 공동경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7.3.21]*

제21조의3(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요건)

- ① 법 제27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가 갖추어야 하는 공동경영 면적 및 참여 농업경영체 수는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경영 면적: 50헥타르 이상
 2. 참여 농업경영체 수: 농업인 25명 이상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농업경영체가 경영하려는 농산물 품목의 특성과 공동농업경영체의 지리적 여건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7.9.19]*

제21조의4(공동농업경영체 지정을 위한 교육)

- ① 법 제27조의3제2항제4호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 운영에 필요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공동농업경영체 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동농업경영체의 경영·기술 교육 또는 공동농업경영체의 조직화·규모화에 대한 교육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실시하는 공동농업경영체의 조직화·규모화와 관련된 교육
 - ② 공동농업경영체 교육은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의 대표 또는 단체의 장이 받아야 한다. 다만, 공동농업경영체 교육을 받아야 하는 법인의 대표 또는 단체의 장이 농업인이 아닌 경우에는 공동농업경영체를 관리하는 다른 농업인이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③ 공동농업경영체 교육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 [본조신설 2017.9.19]*

제21조의5(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절차)

- ①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의3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총

제21조(공동농업경영체 지정 신청 등)

- ① 영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 ② 영 제21조의5제2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 [본조신설 2017.9.20]*

제22조(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등록)

- ① 법 제27조의3제4항에 따라 지정된 공동농업경영체(이하 "공동농업경영체"라 한다)는 법 제2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농업경영정보 등록부를 작성하고, 별지 제27호서식의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등록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주어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동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된 농업경영정보를 분석·가공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7.9.20]*

	<p>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p> <p>2. 법 제27조의3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서</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7조의3제4항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를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i>[본조신설 2017.9.19]</i></p> <p>제2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i><개정 2017.9.19></i></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및 현지조사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수정·보완 요청 <p>3의2. 법 제6조의2에 따른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p> <p>3의3. 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심사·결정 및 결과의 통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법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법 제27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 지정 신청의 접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i><신설 2017.9.19></i></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 또는 통합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i><개정 2015.12.22, 2017.9.19></i></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p><i>[전문개정 2015.7.6]</i></p>	
--	--	--

<p>제27조의4(공동농업경영체의 정보등록 등)</p> <p>① 제27조의3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그 공동농업경영체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명칭과 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이하 이 조에서 "수정등"이라 한다)이 필요하면 공동농업경영체에 등록정보의 수정등을 요청할 수 있고, 수정등의 요청을 받은 공동농업경영체는 요청 내용을 반영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등록정보를 정정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 절차와 농업경영정보 등록부의 작성·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 단서에 따른 등록정보의 정정 및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제6조의2제2항·제3항 및 제6조의3을 준용한다.</p> <p>[본조신설 2017.3.21]</p>	<p>제21조의6(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및 변경등록 대상 농업경영정보)</p> <p>① 법 제2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는 별표 2의2와 같다.</p> <p>② 법 제27조의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동농업경영체의 명칭 2. 공동농업경영체의 대표자 3. 공동농업경영체의 참여 농업인 4. 공동농업경영체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5. 공동농업경영체의 연락처 6. 법 제2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 운영계획 7. 법 제2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경영 내부규약 8. 공동농업경영체의 공동경영 농지 면적 <p>[본조신설 2017.9.19]</p>	<p>제23조(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의 변경 등)</p> <p>① 공동농업경영체는 법 제27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27조의4제2항 본문에 따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받은 공동농업경영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농업경영정보 등록부를 변경하고, 별지 제27호서식의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 확인서를 발급해주거나 변경등록된 사실을 통지해주어야 한다.</p> <p>[본조신설 2017.9.20]</p> <p>제24조(공동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공고)</p> <p>① 법 제27조의4제3항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한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 사실 통지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p> <p>② 법 제27조의4제3항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한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 사실 공고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p> <p>③ 제2항에 따른 공고는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p> <p>[본조신설 2017.9.20]</p> <p>제25조(공동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p> <p>① 공동농업경영체는 법 제27조의4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의신청의 심사·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이의신청 심사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7.9.20]</p>
---	--	--

<p>제27조의5(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취소 등)</p> <p>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7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동농업경영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 운영계획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된 농업경영정보를 말소하여야 한다.</p> <p><i>[본조신설 2017.3.21]</i></p>		
<p>제27조의6(공동농업경영체의 사후관리)</p> <p>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7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동농업경영체의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의 횟수, 방법 및 점검사항 등 세부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i>[본조신설 2017.3.21]</i></p>		<p>제26조(사후관리)</p> <p>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 2. 법 제2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 운영계획의 이행 여부 3. 법 제27조의4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의 정확성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매년 10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i>[본조신설 2017.9.20]</i></p>
제7장 보칙		
<p>제28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i><개정 2013.3.23, 2015.1.6, 2017.3.21></i></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2조제4항에 따른 전문농어업경영체의 지정 취소 2. 제27조제3항에 따른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3.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4.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취소 		

<p>제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p> <p>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i><개정 2013.3.23., 2015.1.6.></i></p> <p>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 중 제25조에 따른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 또는 통합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각각 위탁할 수 있다. <i><신설 2015.1.6.></i></p> <p><i>[제목개정 2015.1.6]</i></p>	<p>제2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p> <p>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i><개정 2017.9.19></i></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및 현지 조사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수정·보완 요청 <p>3의2. 법 제6조의2에 따른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p> <p>3의3. 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심사·결정 및 결과의 통보</p> <p>4. 법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법 제27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 지정 신청의 접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i><신설 2017.9.19></i></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 또는 통합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i><개정 2015.12.22, 2017.9.19></i></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p><i>[전문개정 2015.7.6]</i></p>	
<p>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이 아니면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또는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p>		

제8장 벌칙

<p>제31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33조(과태료)</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2. 제5조제2항의 현지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3. 제30조를 위반하여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이 아니면서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제16조제5항 및 제19조제5항에 따라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후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2. 제20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2회 이상 불응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1.11.22, 2013.3.23, 2015.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2. 제1항제3호·제4호 및 제2항제1호·제2호의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p>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4.30, 2015.7.6〉</p>	

농업법인이란 무엇인가
 농업법인의 종류
 농업법인의 경영
 농업법인의 인수·합병

장문

<p>부칙 <i>(제9620호, 2009.4.1.)</i></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후계농어업경영인에 대한 경과조치)</p> <p>① 이 법 시행 당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는 이 법 제10조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p> <p>② 이 법 시행 당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라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자는 이 법 제10조에 따라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p> <p>제3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영농조합법인은 이 법 제16조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으로 설립된 것으로 본다.</p> <p>② 이 법 시행 당시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영어조합법인은 이 법 제16조에 따라 영어조합법인으로 설립된 것으로 본다.</p> <p>제4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농업회사법인은 이 법 제19조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으로 설립된 것으로 본다.</p> <p>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 “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수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p> <p>②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8호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p> <p>제2조제9호 중 “「수산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p>	<p>부칙 <i>(제21774호, 2009.10.8.)</i></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2항제5호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수산업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②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2호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p> <p>③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8조제2항제3호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④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3조제2호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p> <p>제15조제1호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제1항”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p> <p>제67조제4호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수산업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4호 중 “법 제28조제1항”을 “「농어</p>	<p>부칙 <i>(제100호, 2009.12.9.)</i></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p> <p>제35조제1항제1호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전업농업인,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전업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p> <p>②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조제2항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법 제28조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p> <p>부칙 <i>(제205호, 2011.9.9.)</i></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보조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의 보조원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사원으로 본다.</p> <p>부칙 <i>(제296호, 2012.7.20.)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i></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p> <p>③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2항제4호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의3”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0조”로 한다.</p> <p>④부터 ⑥까지 생략</p> <p>제6조 생략</p> <p>부칙 <i>(제9호, 2013.3.24.)</i></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i>(제35호, 2013.6.12.)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i></p>
---	--	---

<p>으로 한다.</p> <p>③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를 삭제한다.</p> <p>제5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p> <p>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p> <p>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p> <p>④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2호 중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과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으로 한다.</p> <p>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3호 중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p> <p>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25조(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미래의 농업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후계농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28조(영농조합법인 등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협업적 또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수행하는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제29조를 삭제한다.</p> <p>⑥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9조제2항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로 한다.</p> <p>⑦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29조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p>	<p>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법 제29조 제1항”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으로 한다.</p> <p>제17조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p> <p>제37조 중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과 법 제26조”를 “법 제26조”로 한다.</p> <p>⑥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조의3제1항제3호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제1항”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으로 한다.</p> <p>⑦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1조제6호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전업농업인”으로 한다.</p> <p>별표 1 제5호 설치자의 범위란 및 별표 2 제23호 감면대상란 중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을 각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농회사법인”으로, “수산업법” 제9조의2”를 각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p> <p>⑧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항제2호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제2호 중 “수산업법” 제10조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p> <p>제14조제1호나목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나목 중 “수산업법” 제10조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p> <p>⑨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조제1항제12호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를 “「농어</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p> <p>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p> <p>③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4.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제39조에 따른 유기식품등 인증 및 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 정보</p> <p>④ 생략</p> <p>제11조 생략</p> <p>부칙 (제32호, 2013.7.3.)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p> <p>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4.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제39조에 따른 유기식품의 인증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정보</p> <p>제6조 생략</p> <p>부칙 (제98호, 2014.8.7.)</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29호, 2015.1.6.)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부칙 (제149호, 2015.7.7.)</p> <p>이 규칙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03호, 2016.3.24.)</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20호, 2016.8.29.)</p> <p>이 규칙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37호, 2017.1.2.) (일몰도래 규제</p>
---	--	---

<p>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로 한다.</p> <p>㉔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4호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p> <p>제3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후계자"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어업인후계자"로 한다.</p> <p>㉕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p> <p>㉖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p> <p>제2조제6호 중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으로 한다.</p> <p>㉗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제67조제1항 중 "수산업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제68조제1항 중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㉘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8조제3항 중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제26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항에서 "농업법인"이라 한</p>	<p>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로 한다.</p> <p>㉙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1호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㉚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또는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p> <p>㉛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1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p> <p>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7호 본문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으로 한다.</p> <p>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이하 이 항에서 "농업법인"이라 한</p>	<p>장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부칙 (제256호, 2017.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85호, 2017.9.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농업경영체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한 사후관리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p>
--	---	---

<p>다)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항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으로 한다.</p> <p>제266조제7항제2호 및 제3호 중 “농업법인,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을 각각 “농업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으로 한다.</p> <p>㉓ 법률 제9588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5조의2의 제목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제4항”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으로 한다.</p> <p>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각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p> <p>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인용한 경우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을 인용한 경우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부칙 (제9717호, 2009.5.27.)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p> <p>제106조제3항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 “「수산업법」 제10조”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p> <p>㉕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12 제3호마목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p> <p>부칙 (제23131호, 2011.9.9.)</p> <p>이 영은 201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3488호, 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생략</p> <p>부칙 (제23795호, 2012.5.22.)</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6조제3항제8호 중 “어업인후계자”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한다.</p> <p>②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7조제1항 중 “어업인후계자”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한다.</p> <p>제81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어업인후계자</p>	
--	--	--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p> <p>⑥ 법률 제9620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호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으로 한다.</p> <p>제2조제4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1호”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으로 한다.</p> <p>제4조제1항 전단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1조”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로 한다.</p> <p>제16조제1항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로 한다.</p> <p>⑦ 부터 ⑩ 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부칙 〈제9956호, 2010.1.2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0448호, 2011.3.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1093호, 2011.1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중 특별자치시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후계농어업경영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어업인후계자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으로 본다.</p> <p>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어업인후계자(이하 “후계농·어업인”이라 한다)”를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한다)”으로 한다.</p>	<p>(漁業人後繼者)”를 “후계어업경영인(後繼漁業經營人)”으로, “어업인후계자(이하 “후계농·어업인”이라 한다)로서”를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인”이라 한다)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어업인후계자는”을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한다.</p> <p>제8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어업인후계자”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어업인후계자”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및 다목 중 “어업인후계자”를 각각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한다.</p> <p>③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3조제4호 중 “어업인후계자(이하 “어업인후계자”라 한다)”를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어업경영인”이라 한다)”으로 한다.</p> <p>제73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어업인후계자”를 각각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한다.</p> <p>④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3조제3항제2호 중 “어업인후계자”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한다.</p> <p>⑤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7조제3호 중 “어업인후계자를”을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한다.</p> <p>부칙 〈제24455호,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p> <p>⑪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p> <p>제2조제2항제2호 및 제7조제1항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p> <p>제2조제2항제4호,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8조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p> <p>제3조,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p>	
---	--	--

<p>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후계농·어업인”을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어업인후계자”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한다.</p> <p>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후계농·어업인”을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농·어업인후계자”를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한다.</p> <p>②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항제5호다목 중 “어업인후계자”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한다.</p> <p>③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0조제1항제1호다목 중 “어업인 후계자”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한다.</p> <p>제107조제1항제1호다목 중 “어업인 후계자”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한다.</p> <p>④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제1항 중 “어업인후계자”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한다.</p> <p>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어업인후계자를 인용한 경우 종전의 어업인후계자를 갈음하여 이 법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부칙 <i>(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i></p> <p>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 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1)까지 생략</p> <p>〈28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2항,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22조제5항, 제23조제2항, 제24조 및 제25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p> <p>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제3항, 제22조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제24조, 제25조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제2항, 같</p>	<p>호나목 후단, 같은 항 제2호나목 후단,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12조제2항, 제20조 및 제21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p> <p>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으로 한다.</p> <p>②부터 (76)까지 생략</p> <p>부칙 <i>(제25341호, 2014.4.30.)</i></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농업경영체의 등록대상 정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는 2014년 7월 31일까지 제2조제1항제호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다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p> <p>부칙 <i>(제25538호, 2014.8.6.)</i></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i>(제25840호, 2014.1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i></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p> <p>부칙 <i>(제26376호, 2015.7.6.)</i></p> <p>이 영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i>(제26754호, 2015.12.2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i></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p> <p>④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제3항제5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로 한다.</p>	
--	---	--

<p>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및 제33조제2항 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28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p> <p>부칙 <제11694호, 2013.3.23.>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어업·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③ 및 ④ 생략</p> <p>부칙 <제12592호, 2014.5.20.> (상업등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 중 “「상업등기법」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9조까지, 제56조 및 제58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상업등기법」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제5조 생략</p> <p>부칙 <제12961호, 201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기등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유권을 등기하는 재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책임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채무부터 적용한다.</p>	<p>제22조제2항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⑥부터 <42>까지 생략 제3조 생략</p> <p>부칙 <제27045호, 2016.3.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7245호, 2016.6.21.> (수산종자 산업육성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양식(종묘생산을 포함한다)”을 “양식(수산종자생산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2호 중 “종묘생산사업”을 “수산종자생산사업”으로 한다. ⑤부터 ⑥까지 생략 제4조 생략</p> <p>부칙 <제28309호, 2017.9.19.>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p>	
---	---	--

<p>제4조(농어업법인 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실시하는 실태조사는 2016년에 실시한다.</p> <p>제5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합병·분할에 따른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접수된 합병·설립·해산 신고에 관하여는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p> <p>부칙 <i>(제13383호, 2015.6.2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i></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p> <p>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p> <p>제2조제4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로 한다.</p> <p>제4조제1항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p> <p>제4조제1항제2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로 한다.</p> <p>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어업·어촌정책심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로 한다.</p> <p>제16조제1항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로 한다.</p> <p>⑩부터 <63>까지 생략</p> <p>부칙 <i>(제13931호, 2016.1.2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i></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	--	--

<p>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p> <p>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p> <p>③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조의2제3항제1호 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또는 제33조의2”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제33조 및 제33조의3”으로 한다.</p> <p>④ 생략</p> <p>제12조 생략</p> <p>부칙 <i>〈제14208호, 2016.5.29.〉</i></p> <p>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i>〈제14646호, 2017.3.21.〉</i></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공동농업경영체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들녘경영체로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는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동농업경영체로 본다. 다만, 해당 법인 또는 단체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7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	--	--

MEMO

기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및 사이트

참고할 만한 주요 사이트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 www.iro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www.law.go.kr/법령/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www.law.go.kr/법령/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기업공감 원스톱지원센터 www.sos1379.go.kr

SBC 중소기업진흥공단 hp.sbc.or.kr

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 www.kmcca.net

e나라도움 www.gosims.go.kr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그릭스) www.agrix.go.kr

농림축산식품부 www.mafra.go.kr

농촌진흥청 www.rda.go.kr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hrd.rda.go.kr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www.naqs.go.kr

산림청 www.forest.go.kr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www.epis.or.kr

농업인력포털 www.agriedu.net

농식품일자리포털 www.agrijob.kr

aT 농식품유통교육원 edu.at.or.kr

농업인교류센터 www.kafcc.or.kr

참고문헌 및 내용 출처

1. 법인설립절차 표준서식(법무부 국가법령정보센터)
2. 농업경영기록(농촌진흥청)
3. 농업인이 알아야 할 농장회계 길라잡이(농림축산식품부)
4. 아름다운협동조합운영하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5. 중소기업성공 길잡이 비즈니즈지원단 상담사례집(중소벤처기업부)

도움주신 분들 및 기관

1. 농업인교류센터 이강일 법무사 5361-lki@hanmail.net
2. 대유이안노무법인 유상지 노무사 nicecpla@hanmail.net
3. 농업기술실용화 재단 정형민 세무사 hmjung@efact.or.kr
4.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 www.iros.go.kr

찾아보기

제1부 농업법인이란 무엇인가

제1장_ 농업법인 이해하기	8
1) 법인의 의의	8
가. 법인의 정의	8
나. 법인의 필요성과 장·단점	8
2) 농업법인의 의의	10
가. 영농조합법인	10
나. 농업회사법인	10
Tip. 농업과 농업인의 정의	11
Tip. 생산자단체의 정의	11
Tip. 생산자단체의 범위	12
3)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장·단점	13
가. 영농조합법인의 장점	14
나. 영농조합법인의 단점	14
다. 주식회사형 농업회사법인의 장점	14
라. 주식회사형 농업회사법인의 단점	14
4) 농업회사법인의 특징과 종류	15
가. 회사의 정의	15
나. 회사의 4가지 종류	15
Tip. 책임사원의 구분	19
Tip.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19
제2장_ 농업법인 지원정책 살펴보기	24
1) 재정사업지원	24

가. 지원 조건을 받기 위한 준비	24
Tip. 우수지원요건과 후순위 대상	25
나. 지원을 받은 이후	25
Tip. 신청·증빙 시 주의사항	26
2) 세제지원	31
가. 설립 및 출자 시	31
나. 운영 시	33
다. 배당 시	34
Tip. 세제지원 주의사항	36
Tip.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농기자재품목	37
Tip.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기자재품목	39
3) 농업법인 실태조사	42
가. 실태조사 의미	42
나. 실태조사 항목	42
다. 실태조사 후속조치	42
Tip. 실태조사와 통계조사의 차이	42

제2부 농업법인 업무안내

제1장_농업법인 설립과 등록	48
1. 농업법인 설립절차 안내	48
1) 영농조합법인 설립 절차	49
2) 농업회사법인 설립 절차	50
2. 농업법인 설립과 등록 자세히 보기	51

1) 법인의 형태와 상호 결정	51
가. 형태 결정 방법	51
나. 상호 결정 방법	51
다. 자본금의 범위	52
2) 정관 작성과 서명·공증	52
가. 정관의 정의	52
나. 절대적 기재 내용	52
다. 상대적 기재사항과 변태 설립사항	53
라. 정관의 서명과 공증	53
3) 설립신고를 위한 사전 준비	54
가.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	54
나. 정관 승인과 창립총회	54
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구성 절차	55
Tip. 정관이란?	56
4) 자본금 출자	56
가. 출자의 유형 및 범위	56
나. 출자의 불입 및 출자증서의 발행	57
5) 설립 등기 신청	57
가. 영농조합법인 설립 등기	57
나.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	57
6) 지자체 통보 및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	58
가. 영농조합법인	58
나. 농업회사법인	58
3.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	60
1) 농업경영체 등록 이해하기	60

가. 목적	60
나. 법적 근거	60
다. 등록대상	60
라. 등록절차	61
2) 농업경영체 등록 절차	61
가. 신규 등록	61
나. 변경 등록	62
Tip. 농업법인 필수 제출서류	6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주소록	64
제2장_ 농업법인의 분야별 운영	74
1. 회계 분야	74
1) 농업경영기록의 목적과 필요성	74
가. 농업경영기록의 목적	74
나. 농업경영기록의 필요성	74
2) 농업경영기록 방법	76
가. 경영기록과정	76
나. 재무상태표(구. 대차대조표)와 손익계	76
Tip. 손익계산서·재무상태표·합계시산표	85
2. 인사·노무 분야	90
1) 근로계약서 작성	90
2) 외국인 근로자 고용 안내	91
가. 일반 고용허가제와 일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절차	91
나. 특례 고용허가제(외국국적 동포) 안내	92
첨부. 표준근로계약서	93

첨부.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표준근로계약서	94
첨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95
첨부. 표준근로계약서(외국인)	96
3) 임금·최저임금	98
가. 임금 지급의 방법	98
나. 최저임금의 준수	98
4) 퇴직급여제도	99
가. 퇴직급여제도 안내	99
나. 퇴직연금제도 안내	99
5) 근로시간·휴게·휴일	100
가. 전체 근로자에 대한 적용 기준	100
나. 연장근로가산수당 기준	102
6) 4대 보험	103
가. 산재보험	103
Tip. 보험(연금) 미가입시 불이익	104
나. 고용보험	104
다. 건강보험	105
라. 국민연금	106
3. 법무 분야	112
1) 법인 경영자가 꼭 알아야 할 법무 정보	112
1. 영농조합법인	112
가. 영농조합법인의 재산관리	112
나. 영농조합법인의 출자	113
다.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채무	113
Tip. 재산의 소유 형태 정의	114

2. 농업회사법인	115
가. 농업회사법인의 경영관리	115
나. 농업회사법인의 출자와 사업	115
다. 농업회사법인의 채권·채무	115
2) 농업법인의 조직 변경·합병·분할	116
1. 영농조합법인의 조직변경	116
2. 영농조합법인의 합병	117
3. 영농조합법인의 분할	117
4. 농업회사법인의 조직변경 및 분할, 합병	118
Tip.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118
제3장_ 농업법인의 해산과 청산	122
1. 영농조합법인	122
1) 농업법인의 해산절차	122
2) 청산의 법적요건	123
2. 농업회사법인	124
1) 해산 요건	124
2) 해산 및 청산 절차	124
3) 구비 서류	125
Tip. 주식회사 청산 절차 참고	126
3. 폐업 신고	127
1) 폐업 시의 세무종결 절차	127
2)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절차	127
3)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신청	128
Tip. 농업 분야 법인세 감면 기준	129

첨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133
첨부. 납부기한 연장 승인 신청서	134
첨부.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신청서	135

제3부 농업법인 경영 컨설팅 우수사례

1. 백석올미영농조합법인	138
2. 영농조합법인금계식품	142
3. (주)네이처농업회사법인	146
4. 농업회사법인합천유통(주)	150
5. 황토랑영농조합법인	154

[별첨] 농업법인 설립과 운영을 위해 알아야 할 기타 주요 정보

1.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형태별 정관 사례	160
영농조합법인 정관(예) 고시	160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관(예)	177
농업회사법인 합명회사 정관(예)	186
농업회사법인 합자회사 정관(예)	196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정관(예)	204
2. 농업법인 설립등기 신청서식 및 작성요령 안내	210
영농조합법인 설립등기 신청서	211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213
등기신청 안내-주식회사 설립등기(발기설립)	219

주요 서식 및 작성 Tip	229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230
주식인수증	231
주주명부	232
주금납입 보관증명 발급 의뢰서	233
발기인회의 의사록	234
검사인조사보고서	235
발기인의 창립사항보고서.....	237
취임승낙서	239
이사·감사의 조사보고서.....	240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242
창립총회 의사록	244
이사회 의사록	247
3. 농업법인 설립·변경사실 지자체 통보 서식 안내	249
영농조합법인 설립등기 통지서	249
영농조합법인 변경등기 통지서	250
농업회사법인 설립등기 통지서	252
농업회사법인 변경등기 통지서	253
4.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서식 안내	255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255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265
농업경영체 증명서	266
5.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267
6.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단 비교표	271
7. 기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및 사이트	314

농업법인 업무안내서

발행일 : 2017. 9

발행처 : 농림축산식품부

관련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농업법인 담당
(044-201-1537, 044-201-1534)

기획·편집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정부가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농산업 청년인턴제)

우수 농업법인에 인턴으로 일하며, 돈도 벌고 현장경험도 쌓으세요!

사업 혜택 → 인건비 50% 지원으로 인건비 절감

1. 1인당 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2. 인턴은 연간 최소 3개월~6개월까지
3. 법인당 1~3명까지 지원

농산업분야에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만18세~40세 미만 청년이면

모두!!



영농, 경영, 창업분야 실무경험의 기회 습득

>> 법인 요건

[농업경영체]

직전 2년이상 운영법인은 3가지 요건 중 1가지 만족

- 직전 2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 상시종사자수 10인 이상
- 전업농 경영규모 기준 이상

[사업기본규정]

출자금 1억원 이상인 농업경영체 등록 법인

※ 자본 잠식 법인 불가

>> 우선 선정 요건

1. 청년농업인이 대표인 농업법인
2. 스마트팜 시설을 보유한 농업법인
3. 동 사업을 통해 채용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 있는 농업법인
4. 매출액이 높은 농업법인

>> 신청은 이렇게 하세요!



www.agriedu.net (농업인력포털)

농업법인 취업지원 신청 메뉴를 활용하세요.



더 자세한 사항은 ☎ 044-861-8727, 8826(농정원)으로 문의하세요.



농업법인 업무안내서

농업법인 경영컨설팅 우수사례집

